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6. 3.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발 간 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 공공투자사업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발, 공공투자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월 KDI 조직으로 출범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1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2014년에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이후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약 950여 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에 시작한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50여 건을 수행하였고, 공공투자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연구도 약 160여 건을 수행하여 2015년 현재 약 159조원의 재정 절감 및 총 103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공적 조사과정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고, 그 조사 방법론과 규율을 공공기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장시켜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 추진된 주요 업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적격성조사, 실시협약, 국제협력,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업무실적과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당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문장(Gatekeeper)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세금의 값어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데 진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의 개발과 확립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똑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 강 수

목 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 I 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1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1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2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4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8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8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12
3. 수행절차	14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8
1. 총사업비 관리제도	18
2. 타당성재조사 제도	22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7
1. 도입배경	27
2. 조세지출의 개요	28
3. 법적근거	29
4. 수행실적	33
5. 추진체계	34
6.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35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3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37
1. 1999~2015년 수행 실적	37
2. 2015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44
제2절 타당성재조사	51
1. 2002~2015년 타당성재조사	51
2. 2015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55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60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61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61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64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70
4. 세부 추진절차	71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80
1.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및 타당성분석	80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81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81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82
5.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83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83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84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85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85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5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7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8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3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6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00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0
2. 타당성분석 검토(BTO)	100
3. 타당성분석 검토(BTL)	101
4. 수요예측재조사	101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02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102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102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103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03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03
1. 실시협약(안) 검토(BTO)	103
2. 실시협약(안) 검토(BTL)	104
제7절 2015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105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06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106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07
제VI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08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08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08
2. 추진 근거	110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11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111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12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12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113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14
1. 조사의 수행절차	114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15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16
1. 2011~2015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16
2. 2015년도 수행 실적	120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22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22
1. 지침 연구	123
2. 일반 연구	127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131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32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132
2. 국제협력 업무	132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134

제2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 I 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41
< 예비타당성조사 >	
1. 대구도시철도1호선 국가산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141
2.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2
3. 대구광역권(구미~경산)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3
4.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4
5.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5
6. 충청권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6

7. 성남~장호원 6 국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7
8. 평택·당진항 서부두 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예비타당성조사	148
9.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9
10. 서계동 복합 문화관광시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50
11.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51
12. 중부권 광역 우편집중국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2
13.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3
14. 의료기술훈련원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4
15.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5
16.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6
17.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157
18.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8
19.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9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0
2.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61
3. 불갑저수지 치수능력증대사업	162
4.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장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3
5. 복합민원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4
6. 제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5
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6
8.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7
9.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68

제2절 타당성재조사	169
------------------	-----

< 타당성재조사 >

1. 동김해IC~식만I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69
2.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70
3. 아트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71
4.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72

5. 국도28호선(우보~고노) 개량사업 타당성재조사	173
6. 국도2, 77호선(신장~복용)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74
7. 국도19호선(장수변암우회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75
8.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76
9. 국지도82호선(갈천~가수)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177
10. 국지도78호선(용마~광탄)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78
11.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79
12.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80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대덕담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1
2.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2
3. 국도21호선(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83
4.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4
5.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5
6. 대구 교도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6
7. 속초 교도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7
8. 부산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8
9.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9
10.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90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91
2.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92
3.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93
4.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94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	195
--------------------------------	-----

제Ⅱ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BTO (타당성분석 검토)>

1.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99
2. 인천광역시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200
3. 인천광역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제안서 검토 201
4. 인천광역시 송도환경센터 3호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202

<BTO (타당성분석 검토)>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03
2.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4

<BTL (타당성 분석 검토)>

1.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5
2. 한국폴리텍대학교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6
3. 부산시 중앙·초량·범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7
4. 육군 파주·연천·동두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8
5. 육군 연천·철원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09
6. 육군 양구·인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0
7. 육군 원주·홍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1
8. 인천대학교 외 1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2
9. 전남대학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3
10. 육군 홍천·양구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4
11. 공주대학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15

<수요예측재조사>

1.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6
2.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7
3.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18

제III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221
2. BOO사업에 대한 연구	223
3. 2014년 공공투자 관련 법률쟁점 연구	225
4. 서비스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28
5. 최근 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원인 및 시사점 연구	231
6.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33
7. 산업단지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236
8. 예비타당성조사 사후 타당성 검증 연구(교통량 예측 오차를 중심으로)	238
9. 문화·관광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40

제IV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1. 방글라데시 공무원 교육	245
2.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샵	247
3.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공무원 교육	248
4. 브루나이 재정투자사업평가 현지워크샵	249
5.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방원회의	250
6. 몽골 국회의원 대상 PPP 연수	250
7.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방원회의	251
8. 인도네시아 IIGF 사절단 PPP 교육	251
9.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 대상 PPP 교육	252
10. 몽골 공무원 방원회의	252

참고문헌	253
------	-----

표 목 차

<표 I -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
<표 I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5
<표 I -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6
<표 II-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7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11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7
<표 II-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20
<표 II-5> 조세지출현황	27
<표 II-6>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9
<표 II-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30
<표 II-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34
<표 II-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35
<표 II-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35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38
<표 III-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38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39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0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41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42
<표 III-7>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3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44
<표 III-9>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44
<표 III-10>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46
<표 III-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6
<표 III-12>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47

<표 III-13>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47
<표 III-14>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	48
<표 III-15>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48
<표 III-16>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49
<표 III-17>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49
<표 III-18>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50
<표 III-1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51
<표 III-2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52
<표 III-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53
<표 III-22>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53
<표 III-23>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53
<표 III-24>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54
<표 III-2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55
<표 III-26>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55
<표 III-27>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6
<표 III-28>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56
<표 III-29>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57
<표 III-30>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7
<표 III-31>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57
<표 III-32>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 ·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58
<표 III-33>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58
<표 III-34>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59
<표 III-35> 2015년도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59
<표 IV-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60
<표 IV-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63
<표 IV-3> 사회기반시설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	64
<표 IV-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66
<표 IV-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67
<표 IV-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68
<표 IV-7>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69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6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6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7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88
<표 V-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0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1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2
<표 V-8>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3
<표 V-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4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5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6
<표 V-12>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7
<표 V-1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98
<표 V-15>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9
<표 V-16>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99
<표 V-17> 2015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00
<표 V-18> 2015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	100
<표 V-19> 2015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101
<표 V-20> 2015년도 수요예측재조사	101
<표 V-21>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02
<표 V-22> 2015년도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02
<표 V-23> 2015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 수행 실적	103
<표 V-24>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03
<표 V-25> 2015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4
<표 V-26>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04
<표 V-27> 2015년도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05
<표 V-28> 2015년도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수행 실적	105
<표 V-29> 2015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수행 실적	106
<표 V-30> 2015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106
<표 V-31> 2015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07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09
<표 VI-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113
<표 VI-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115
<표 IV-4>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및 선정 현황	117
<표 IV-5>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17
<표 IV-6>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118
<표 IV-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18
<표 V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 연도별 수행 사업 수	119
<표 VI-9> 2011~2015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19
<표 VI-10> 2011~2015년 부문별 · 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20
<표 VI-11> 2011~2015년 부문별 · 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120
<표 VI-12> 2015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21
<표 VI-13> 2015년도 공공기관 사업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현황	121
<표 VII-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22
<표 VII-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23
<표 VII-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25
<표 VII-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26
<표 VII-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26
<표 VII-6>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27
<표 VII-7>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28
<표 VI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30
<표 VII-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31
<표 VII-10> 2015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131
<표 VII-11>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수행 실적	132
<표 VII-12> 2015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133
<표 VII-13>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134
<표 VII-14> 시스템 관리내역	135
<표 VII-15>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	135

그림 목차

[그림 I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5
[그림 II -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14
[그림 II -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16
[그림 II -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26
[그림 II -4]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36
[그림 IV -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68
[그림 IV -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70
[그림 IV -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71
[그림 IV -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75
[그림 IV -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76
[그림 IV -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77
[그림 IV -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78
[그림 IV -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79
[그림 V -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89
[그림 V -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89
[그림 VI -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114

제 1 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 I 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 I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 I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 V 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 VI 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 VII 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 1 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등)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관리하고 관련 제도 및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공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및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사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자금제조달 검토, 협상지원 및 분쟁조정 검토 등 주무부처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 사업추진의 세부요령 및 정책개발 연구 등을 통하여 사업 주무부처와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1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1) 본 절은 한국개발연구원(2015), 『KDI 2014 연차보고서』 중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내용을 참조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조사 방법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제도 및 정책관련 포럼과 대내외 홍보·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전단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가와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1월 KDI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KDI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됨과 동시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1998년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과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포 이후 1999년 4월 국토연구원의 내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총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1998년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 (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 8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 대책 수립 ·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공포
1999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 ·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 당성조사 법제화	· 4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 4월, 초대 이규방 소장 취임 (초대, 제2대 연임)

〈표 1-1〉의 계속

구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1월, 초대 김재형 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민간투자지원단 구성 (관계부처, 민간투자지원센터, 금융기관, 민간업계, 학계 등)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타당성제검증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마련 (민간투자법 개정)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제2대 심상달 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제3대 김홍수 소장 취임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 사업 착수(3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PPP(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 11월, 민간투자사업의 기준 및 절차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통합(법률 제7386호)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 1월,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 1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추가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 12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국제회의 개최 (IMF, World Bank, ADB, Partnerships UK)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제2대 김재형 소장 취임(제3대, 제4대 연임)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 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제검증의 법정 제도화 · 10월, 200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 12월, 자금제조달 검토 도입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2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명칭 변경)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아시아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식공유 국제회의(ADB, ADBI, WBI)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 8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회의(IMF, World Bank)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제5대 박현 소장 취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제6대 김강수 소장 취임(제7대 연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관한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11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 12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및 동 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근거하여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근거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총괄 지원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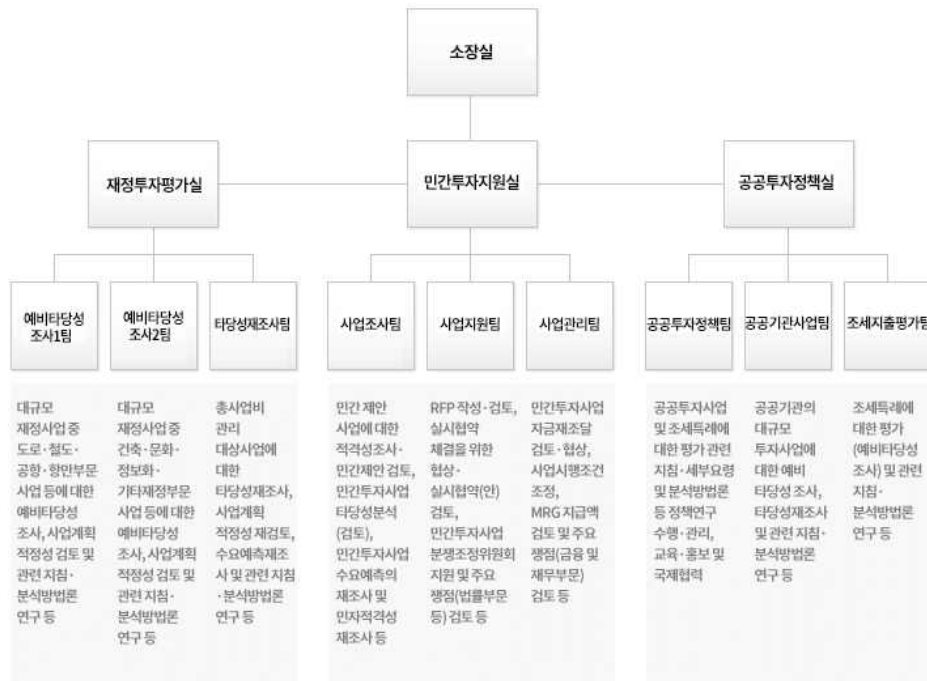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 3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은 별도의 세부 팀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실별 세부 팀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투자평가실은 예비타당성조사1팀, 예비타당성조사2팀, 타당성재조사팀, 민간투자지원실은 사업조사팀, 사업지원팀, 사업관리팀, 공공투자정책실은 공공투자정책팀, 공공기관사업팀, 조세지출평가팀의 세부 팀을 갖추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도 및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 [그림 I-1], <표 I-3>과 같다.

[그림 1-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원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총원 100명으로 경제, 경영, 회계, 통계 및 공학 분야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전문분야	인원 수	전문분야	인원 수
경제/경영/재무	30명	회계	10명
도시계획/교통/지역개발	20명	법률	8명
토목/건축/환경공학 등	17명	기타(문화관광 등)	2명
국제협력	3명	행정 총괄 및 지원 / 인턴	10명

주: 2016년 3월 기준임.

〈표 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소장	소장실	· 공공투자사업(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재정투자평가실	예비타당성조사 1팀	· 교통부문 등 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예비타당성조사 2팀	· 건축·정보화·문화·R&D·기타 재정 부문 등 비정형사업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타당성재조사팀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등의 수행 및 지원·관리
민간투자지원실	사업조사팀	·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검토 및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 수행에 대한 지원·관리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및 지원·관리
	사업지원팀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문 검토 및 작성 ·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관리팀	·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금제조달 검토 및 협상 수행·지원 ·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MRG 지급액 관련 검토 수행·지원
공공투자정책실	공공투자정책팀	·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조사의 제도 및 방법론 연구 및 관리 · 사후평가 등 공공투자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리 · 교육, 홍보 및 DB구축·관리 · 공공투자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동향 분석
	공공기관사업팀	·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조세지출평가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및 관리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 지침작성, 자료 축적 및 DB 구축

제 II 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투자평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성재조사”의 체계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재정투자평가사업의 수행 실적을 조사완료 사업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1999	20					
2000	30					
2001	41					
2002	30					
2003	32		6			
2004	55		6			
2005	30		9			
2006	52		19			
2007	46	4	14		1	
2008	38	7	21		1	
2009	63	9	31		3	

<표 II-1>의 계속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요예측 재조사	설계의 적정성 검토/설계변경 사전타당성검토
2010	48	6	31	3	1	
2011	43	2	15	5	0	
2012	35	6	11	4	1	
2013	13	4	9	6	3	
2014	36	10	17	11	7	
2015	19	9	12	10	0	4
합계	631	57	201	39	17	4

- 주: 1) 각 연도별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도입 초기 기획예산처 직접 발주 수행 건수를 포함, KISTEP에서 수행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한 실적임.
 3)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총 53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및 의의²⁾

1) 면밀한 사전검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사전검토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전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려된다.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이는 그만큼의 예산 낭비를 의미한다. 설사 다소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조로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2) 한국개발연구원(1999),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의 내용을 참조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 재정은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의 중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사전검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 혹은 예상치 못한 현장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사업비 증액의 폭은 훨씬 작을 것이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사전검토의 기여는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연장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사업에 착수한 이후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기란 매우 어렵다. 중도에 취소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혹은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설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안 건설된 시설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넷째,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의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의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그 당시까지의 타당성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예비설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대상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예비설계안이 나와야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적 검토 이전에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해 사

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 이전 단계에서 전체 및 사업부문별 재정운용과 상위계획, 기존의 추진사업의 큰 틀 속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 시기, 대안에 대한 검토, 자원조달계획의 실현성 및 구체성, 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 자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999년 3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순서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의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를 도모한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대상 사업간의 우선순위가 비교 가능한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통계·정보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개발된 타당성 평가모형이나 평가기준, 각종 계수의 기준치 등은 타당성조사에서도 필요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즉 보다 폭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심사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타당성조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운용의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법적근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

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 추진경위

(舊)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각 단계마다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집행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품질의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9년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법·제도 정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연도	주요 추진경위
1998년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1999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2월, 일반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 발간 ·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2000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2001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2004년	· 4월,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착수(3개 사업)
2007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 사업) · 1월, 국가재정법(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제조사의 법정 제도화
2008년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0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 복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 의무화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명칭 변경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가.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³⁾

1)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3) 기획재정부(2015),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내용을 참조함.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나.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앞서 살펴본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이외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로 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들 수 있다.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3)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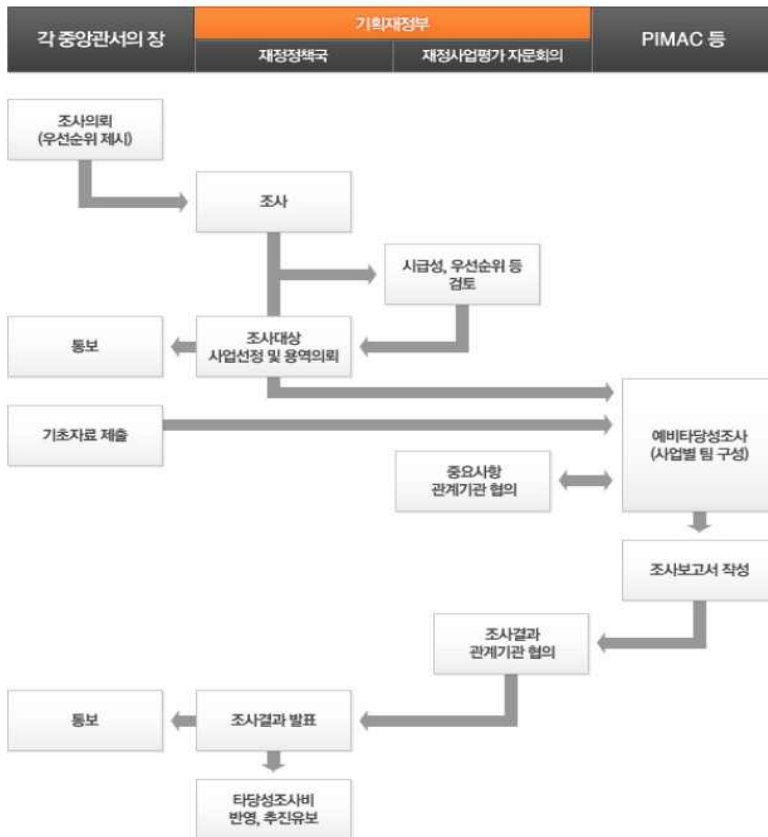
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수행절차

가.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 (<http://pimac.kdi.re.kr>)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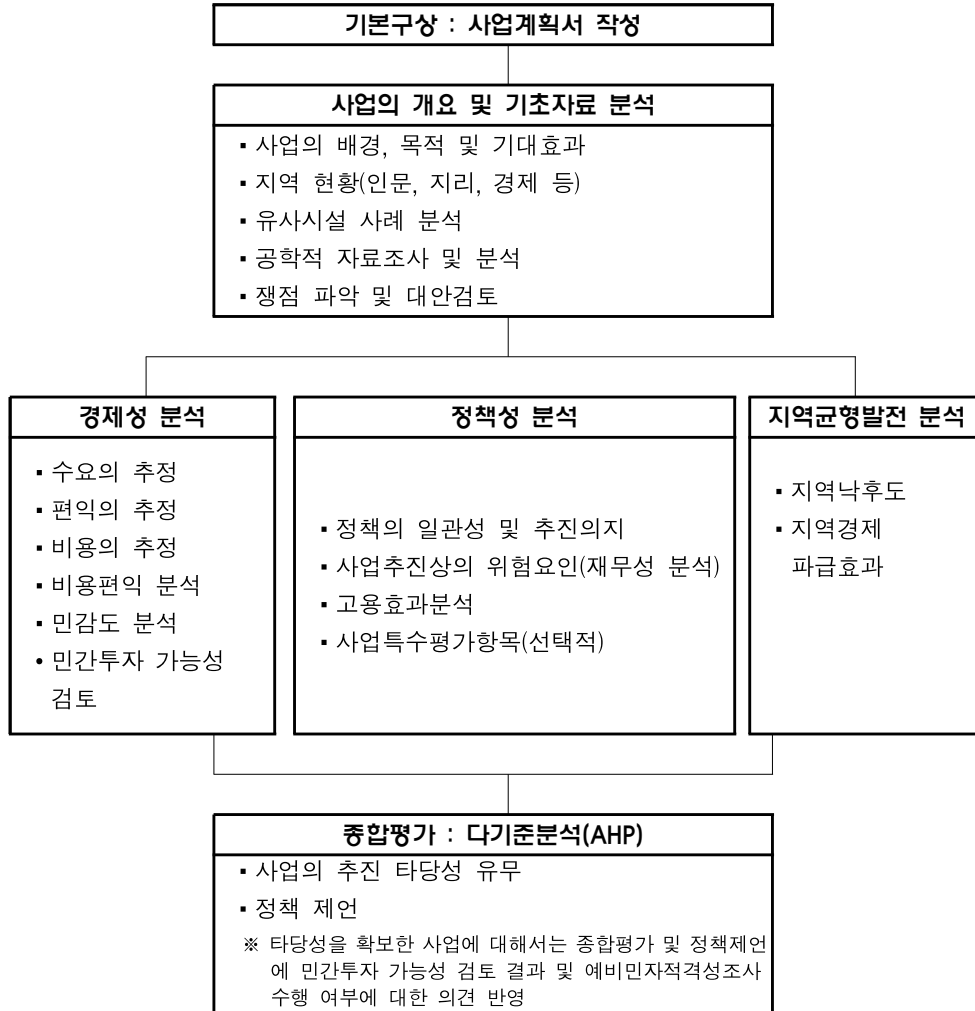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하며,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의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둘째,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셋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정책성 분석 및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토대로 본 사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넷째, 다기준 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결과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⁴⁾.

4)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을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11-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 주: 1)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하나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대상사업, 수행절차 및 체계 등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구분	개요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조사 수행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정 <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전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 추진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운영
대상사업	<input type="checkbox"/> 대 상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상호연계성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면 제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규모 검토
수행절차 및 체계	<input type="checkbox"/> 수 행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장관 검토,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input type="checkbox"/> 조 사 의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요, 편익, 비용 등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B/C)수행 (필요시 재무성분석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장래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나눈 비율 · 정책성 분석: 타당성평가의 중요항목 정성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등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평가 항목 등 · 종합평가(AHP):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HP: 분석요소간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정량적 결론 도출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공사완료단계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변경도 총사업비 변경협의의 대상이 된다.⁵⁾

198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94년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되었다. 2000년에는 총사업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연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총사업비 20% 이상 증액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추진과정 중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0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국가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구축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 한국개발연구원(2012),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SOC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은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 조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재검증 제도는 199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당시 타당성재검증의 수행시점을 실시설계단계로 한정하고,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가할 때에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사업비 증가 원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당성재검증을 하지 않는 등 타당성재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199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타당성재검증 대상 사업의 기준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건축사업은 기준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1997년, 1998년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타당성재검증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타당성재검증 수행규정의 구속력이 없어 타당성재검증이 선언적인 효력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99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등 공공투자사업의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타당성재검증 규정을 다시 명문화하였으며, 대상은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총사업비 대비 20%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총사업비 변경의 기준 설정 시 기존의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별로 타당성재검증 대상과 수행주체, 분석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을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시공단계에서도 타당성재검증을 수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007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기존 타당성재검증의 명칭이 타당성재조사로 변경되었으며,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08.7.23)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2009.3.18)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중앙관서의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던 수행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임하였다. 또한 제49조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간이타당성재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0.11.10)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기존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표 II-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1989	• 총사업비 관리제도 규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1994	•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개시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수립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기준 수립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주요투자사업과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가 특히 필요한 사업) • 실시설계단계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조사설계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함.
1995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준 변경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500억원 이상)
1996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준 세분화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1997	•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대상으로 포함
1999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1	• 기본설계, 실시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수준을 초과하여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수행함.
2002	•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증 수행 (KDI, 2003)
2003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요건 추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인 사업)
2004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적용 •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시행단계

〈표 II-4〉의 계속

연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주요변경사항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재검증 수행단계 확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시공단계 등 각 사업추진단계별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타당성 재검증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일반지침, 부문별지침) 제정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분야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KDI, 2006) 공사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 중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수행(KDI, 2006)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근거법령이 「국가재정법」으로 수정됨(「예산회계법」이 폐지). 「총사업비 관리지침」 조문화 타당성재검증, 수요예측재검증 명칭변경 →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수행 요건 신설: 국회의결이 있을 경우 수요예측재조사 수행대상 확대: 모든 SOC 분야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조정(토목사업: 300억원 이상, 건축사업: 100억원 이상)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이 폐지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요건 변경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설됨. 간이 타당성재조사 제도 도입(타당성재조사 미시행 사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기준 조정(토목 및 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간이 타당성 재조사 외 4건 수행(KDI, 2010) 정보화 부문 세부조정기준 수립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 추가 신설: 예타면제사업,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미만의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분야의 총사업비 정의 추가: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비용 포함 수요예측재조사 기준시점 변경: 이전단계 예측치 → 최초 사업추진단계 예측치 기타부대비 항목 변경: 시설부대비 → 공사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가. 타당성재조사의 수행요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물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에서는 동 법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타당성재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에서는 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에서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검토하고, 총사업비 변경내역 및 타당성재조사의 수행근거를 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의 쟁점 파악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과 관련된 쟁점,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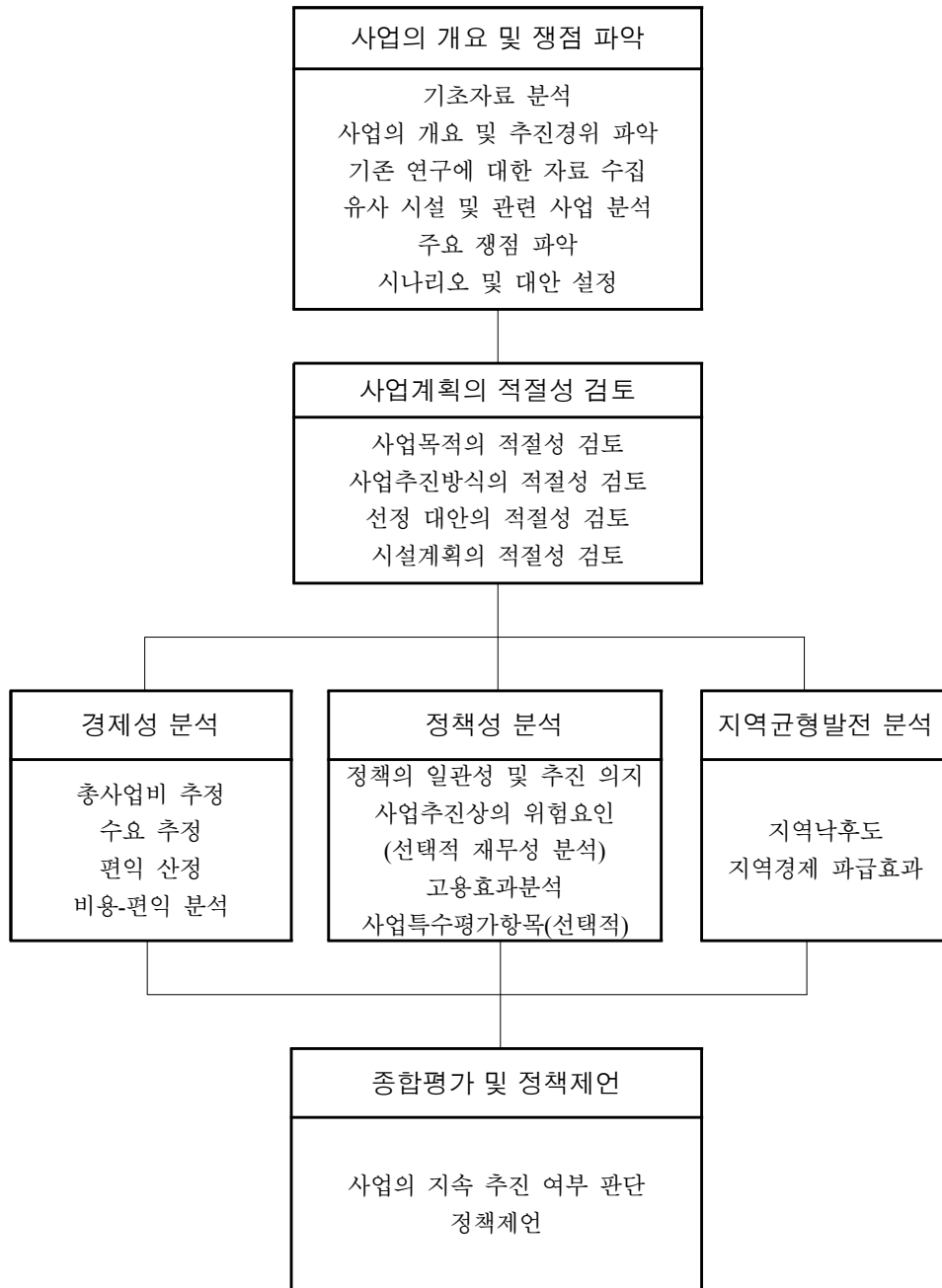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선정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총사업비는 공중별로 물량 및 적정 단가 산정을 통해 추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단계의 타당성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착수 전년도를 분석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할인율 및 분석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한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되,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의 분석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가에는 사업추진 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을 산정하고 바람직한 사업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그림 11-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요인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편, 재정여력은 재정지출 억제나 세입증대를 통해서만 확충이 가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출 억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세입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8년 이후 약 30조원 규모의 국세감면이 유지되고 있다.

〈표 II-5〉 조세지출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2000	13.3	92.9	12.5
2001	13.7	95.8	12.5
2002	14.7	104.0	12.4
2003	17.5	114.7	13.2
2004	18.3	117.8	13.4
2005	20.0	127.5	13.6
2006	21.3	138.0	13.4
2007	23.0	161.5	12.5
2008	28.8	167.3	14.7
2009	31.1	164.5	15.8
2010	30.0	177.7	14.4
2011	29.6	192.4	13.3
2012	30.1	203.0	12.9
2013	33.8	201.9	14.3
2014	34.3	205.5	14.3
2015(추정)	35.7	215.7	14.2
2016(추정)	35.3	223.1	13.7

주: 1)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00~2013년 수치는 실적기준, 2014년은 잠정치, 2015년은 전망치

3) 2012년 이후로는 신규로 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를 위하여 2011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14년)하여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신규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조세지출의 개요

조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세입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인 지출행위로 간주되는 정부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에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국세감면이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단, 중과제도 혹은 납세자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닌 경우와 국가세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은 조세지출에서 제외된다.

조세지출은 크게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감면은 영구적인 세부담 경감(혹은 세수 감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되며 간접감면은 일정 기간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으로서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공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직전, 당해 및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이 포함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34조 3,383억원, 2015년 35조 6,656억원(추정), 2016년 35조 3,325억원(추정)으로 국세감면율은 하향안정되어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6〉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실적)		2015년 (잡정)		2016년 (전망)	
		비중		비중		비중
• 국세감면액(A)	343,383	100.0	356,656	100.0	353,325	100.0
조특법상조세지출	186,044	54.2	194,561	54.6	187,302	53.0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51,797	44.2	158,183	44.3	162,545	46.0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5,542	1.6	3,912	1.1	3,448	1.0
• 국세수입총액(B)	2,055,198		2,157,346		2,231,383	
• 국세감면율(A/(A+B))	14.3		14.2		13.7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8		14.7		14.8	

주: 1)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로부터 조세지출항목에 포함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국세감면규모 변동효과가 포함되었음.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단, 직전 3년 중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감면율이 아닌 법정한도로 계산하고 항목 추가 등 국세감면액 변동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2015.

3.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의 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 2에 평가수행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에 신규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하며,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조세특례금액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신규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둘째,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6)로서 기존 조세특례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6)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경우이며 개별 세법 체계 내 조세특례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며,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II-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조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조항	내용
	<p>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p> <p>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p> <p>[전문개정 2010.1.1.]</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p>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p> <p>①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

조항	내용
	<p>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p> <p>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p>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신설 2014.9.11.></p> <p>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p>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p>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p> <p>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p>

조항	내용
	<p>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p>	<p>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p>[본조신설 2014.9.11.]</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 수행실적

지난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3건, 심층평가 14건을 2015년 수행과제로 선정하였고 KDI에서는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1건을 수행하였다.

〈표 II-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내용	주무부처	평가담당기관
1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특례 	금융위원회	KIPF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상생결제시스템*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 *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KDI
3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나 항에 보훈대상자 신규고용인원과 제대군인 채용을 포함시켜 기업이 취업지원·알선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현행 법령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청년·장애인·고령자(60세 이상)수준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 	보훈처	KIPF

5. 추진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작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연구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연구책임자와 1~2명의 연구자 및 다수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기간은 원칙으로 매년 1월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6~7월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 수정이 이루어지며 8월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서는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9월에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기재부에서는 예타 신청서

검토를 통해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10월초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표 II-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구분	주요일정	기타
1~5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조사수행 기간: 5개월
6월 7월	평가결과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연도 조세지출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9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신청서 검토 및 다음연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 선정	
10월	조세지출 성과평가 자문회의 개최, 다음연도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정	
11월	다음연도 평가 준비	
12월	- 기관선정, TF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6.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은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형평성 분석으로 구성되며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각 항목별 분석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 정책성 분석: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분석
- 경제성 분석: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형평성 분석: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종합평가: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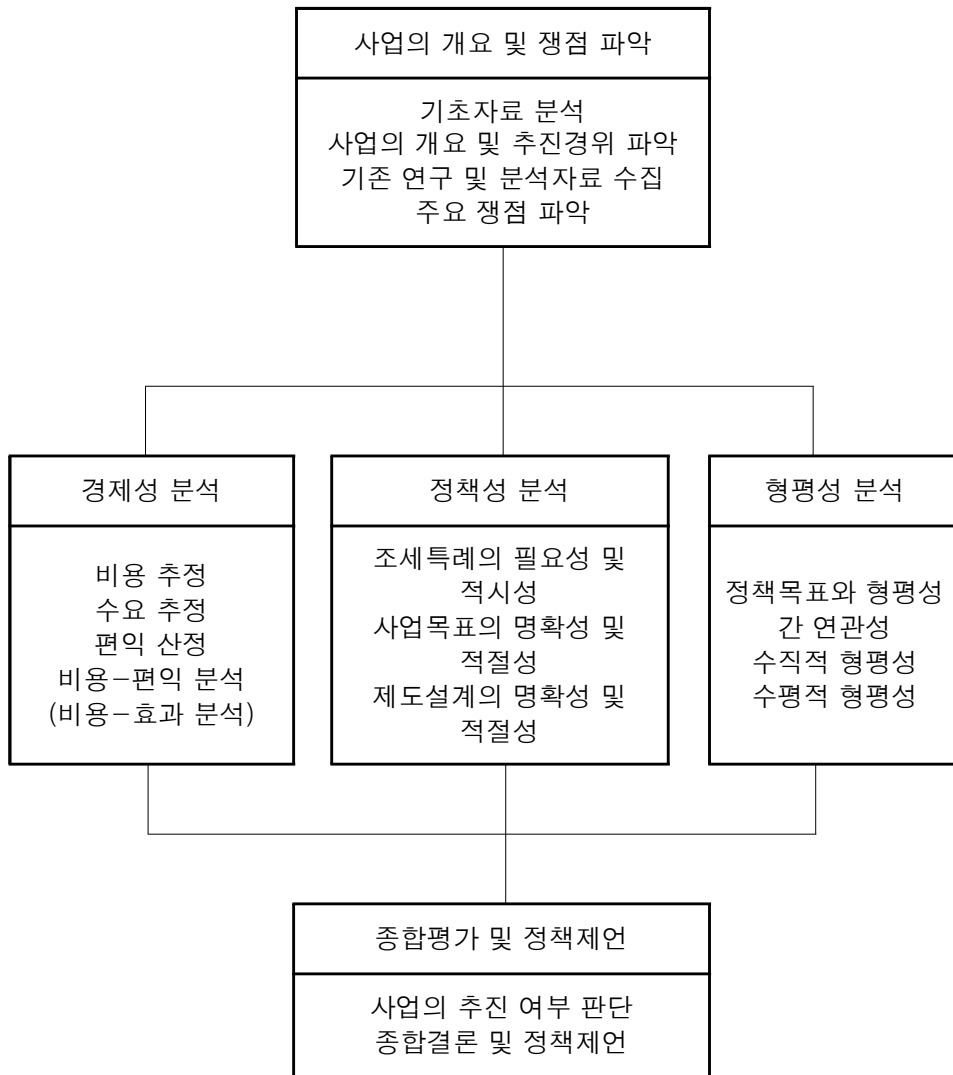
〈표 II-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분석 유형	경제성 항목	정책성 항목	형평성 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11

- 정책 제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정책제언의 내용: 해당 조세특례의 특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증가 가능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 등에 관한 의견

[그림 II-4]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제III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5년 수행 실적

1999~2015년까지 총 631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제외)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사업이 각각 223건 및 114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건축 사업을 포함한 기타 비정형 사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표 III-1 참조).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재조사』의 수행을 기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2007~2015년까지 총 57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부문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5	-	1	2	1	4	13
2014	8	4	2	12	2	8	36
2015	3	4	2	7	0	3	19
계	223	114	41	71	49	133	631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건축부문은 2011년부터 별도 구분되며 기존 사업은 기타 실적으로 구분됨.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표 III-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2	-	-	-	-	2	4
2008	5	-	-	-	-	2	7
2009	3	-	1	-	-	5	9
2010	2	-	-	-	2	2	6
2011	-	-	1	-	-	1	2
2012	2	1	-	1	1	1	6
2013	1	-	1	1	-	1	4
2014	2	-	-	7	1	-	10
2015	0	0	1	6	2	0	9
계	17	1	4	15	6	14	57

주: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연구(사업계획 검토,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등)를 수행한 모든 사업을 포함한 수척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1999~2015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전체 총사업비 334.7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되는 사업의 전체 총사업비는 해마다 약 8~46조원 수준이며,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체의 약 68.2% 정도를 차지(예비타당성조사 기준)하고 있다.

〈표 III-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단위: 조원)

연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합계
	도로	철도	항만	문화· 관광· 건축	수자원 (댐)	기타	소계		
1999	14.9	2.0	0.1	0.3	0.6	0.7	18.7	-	18.7
2000	4.9	4.6	0.8	1.5	0.0	0.5	12.4	-	12.4
2001	6.1	12.1	0.1	1.4	-	0.1	19.7	-	19.7
2002	5.9	6.2	0.3	0.5	1.1	0.7	14.7	-	14.7
2003	5.3	5.4	1.9	1.0	1.3	0.8	15.7	-	15.7
2004	7.1	6.4	1.0	1.0	0.2	2.5	18.3	-	18.3
2005	3.5	4.6	0.4	1.4	0.4	1.7	12.1	-	12.1
2006	7.7	7.3	1.3	0.6	0.1	1.1	18.1	-	18.1
2007	6.8	4.2	2.0	0.2	0.1	7.6	20.9	1.0	21.9
2008	2.6	1.1	1.0	0.3	0.4	5.0	10.4	0.3	10.7
2009	13.1	7.7	0.4	0.3	3.4	9.5	34.4	11.2	45.6
2010	5.7	17.9	0.5	0.1	0.5	9.3	34	5.3	39.3
2011	1.3	6.1	0.6	1.9	2.0	3.7	15.6	0.7	16.3
2012	1.8	10.3	2.1	1.1	0.8	1.7	17.8	4.5	22.3
2013	0.8	-	0.1	0.1	0.4	1.3	2.7	5.8	8.5
2014	2.8	13.7	0.6	2.0	0.5	3.1	22.6	1.7	24.3
2015	2.3	1.6	0.5	1.3	0.0	1.1	6.8	4.5	11.2
계	92.6	112.0	13.7	15.1	11.8	54.5	299.9	35.0	334.7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의 사업계획(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기타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조사를 포함함.

사업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업이 420건으로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I-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건설교통부	철도청 ¹⁾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²⁾	과학기술부 ³⁾	교육부			
1999	12	1	2	1	-	-	-	3	1	-
2000	12	7	5	1	-	1	-	2	-	2
2001	27	8	2	-	-	-	-	2	-	2
2002	19	4	3	2	-	-	-	2	-	-
2003	17	4	7	-	-	-	1	1	-	2
2004	26	1	4	-	9	1	-	2	2	10
2005	20	-	3	-	-	-	2	-	2	3
2006	33	-	10	-	2	2	-	-	1	4
2007	25	-	2	2	1	-	1	1	1	13
2008	21			7		1		1	1	7
2009	42			8		3		2	3	5
2010	26			9		5		2	2	4
2011	19			5		2		2	1	14
2012	22			2		4		2	2	3
2013	10			1		1		-	-	1
2014	12		5	2		3		4	1	9
2015	7		2	1		2	0	2	1	4
계	420			53		29		29	18	82
	66.6%			8.4%		4.6%		4.6%	2.9%	13.0%

주: 1) 2005년 1월부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사업은 건설교통부로 이관됨.
 2) 2008년도 정부조직 개편 이전 재정경제부 소관 사업 분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으며,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이관받음.
 3)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비율)을 살펴보면 약 4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가장 높게 (66.7%) 나타났고, 다른 부문 사업은 39~53% 수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B/C \geq 1$ (%)
1999	36.4	50.0	100.0	25.0	100.0	100.0	45.0
2000	45.5	71.4	80.0	0.0	100.0	50.0	56.7
2001	30.0	50.0	0.0	20.0	-	0.0	34.1
2002	33.3	87.5	50.0	0.0	0.0	75.0	46.7
2003	50.0	71.4	100.0	0.0	60.0	50.0	53.1
2004	50.0	53.8	100.0	0.0	33.3	58.3	50.9
2005	45.5	33.3	100.0	0.0	66.7	71.4	53.3
2006	48.1	20.0	40.0	60.0	0.0	75.0	44.2
2007	53.3	0.0	0.0	50.0	100.0	28.6	43.5
2008	41.7	50.0	75.0	66.7	50.0	26.7	42.1
2009	27.3	20.0	50.0	50.0	66.7	45.0	41.3
2010	42.9	21.4	100.0	100.0	100.0	54.5	47.9
2011	83.3	0.0	50.0	54.5	20.0	42.9	44.2
2012	85.7	0.0	60.0	16.7	60.0	80.0	48.6
2013	60.0	0.0	100.0	0.0	100.0	75.0	61.5
2014	50.0	50.0	50.0	83.3	50.0	50.0	61.1
2015	33.3	50.0	50.0	100.0	-	62.5	66.7
사업건수	223	113	41	72	49	138 ¹⁾	636
$B/C \geq 1$ 건수	102	46	27	34	26	71	306
$B/C \geq 1$ (%)	45.7%	40.7%	65.9%	47.2%	53.1%	51.4%	48.1%

주: 1) 기타분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은 평균 6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항만부문(75.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 부문이 57.5%로 가장 낮은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단위: %, 건)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	기타	타당성 확보율
1999	45.5	50.0	100.0	100.0	100.0	100.0	65.0
2000	27.3	71.4	80.0	0.0	100.0	75.0	53.3
2001	30.0	35.7	100.0	40.0	-	0.0	34.1
2002	33.3	75.0	50.0	0.0	0.0	75.0	43.3
2003	70.0	71.4	100.0	0.0	60.0	50.0	59.4
2004	87.5	53.8	100.0	100.0	66.7	66.7	74.5
2005	36.4	83.3	100.0	100.0	66.7	71.4	63.3
2006	63.0	40.0	40.0	40.0	100.0	50.0	53.8
2007	63.3	20.0	100.0	50.0	100.0	42.9	56.5
2008	75.0	100.0	100.0	100.0	50.0	46.7	68.4
2009	50.0	80.0	50.0	0.0	91.7	80.0	68.3
2010	71.4	64.3	100.0	100.0	100.0	77.3	75.0
2011	83.3	50.0	50.0	90.0	80.0	71.4	74.4
2012	100.0	28.6	80.0	42.9	80.0	100.0	69.4
2013	80.0	-	100.0	50.0	100.0	75.0	76.9
2014	62.5	75.0	50.0	91.7	50.0	75.0	75.0
2015	33.3	75.0	50.0	100.0	-	62.5	70.8
사업건수	223	113	41	72	49	138	636
통과건수	132	65	31	47	35	95	405
타당성 확보율(%)	59.2	57.5	75.6	65.3	71.4	68.8	63.7

주: 1) 1999~2002년 조사결과는 (舊)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발표 기준이며, 2003년 이후 조사결과는 AHP \geq 0.5 기준임.

2) 기타분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종합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5년 12월 말까지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하여 토목, 건축, 정보화, 기타 재정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87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약 125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분석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57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정 사업규모 및 효율적 대안 등의 제시와 이의 분석을 통해 약 1조 9천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7〉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¹⁾	사업수 (건)	전체 사업비 ²⁾	총사업비 절감액 ⁵⁾
1999	20	271,559	197,956
2000	30	152,439	57,753
2001	41	198,401	105,823
2002	30	162,059	73,120
2003	32	176,278	39,885
2004	55	185,740	52,697
2005	30	123,561	39,569
2006	52	193,531	101,401
2007	46	189,476	82,947
2008	38	90,471	39,685
2009	63	303,290	91,362
2010	48	279,831	112,091
2011 ³⁾	99	228,262	107,606
2012	35	206,434	75,150
2013	13	24,360	2,099
2014	36	127,261	35,627
2015	19	66,796	31,323
총합계 ⁴⁾	687	2,979,749	1,246,094

주: 1) AHP를 수행하지 않았던 1999년~2002년간 사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사업추진, 중장기 검토)를 기준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분석된 재추정 사업비 기준이며, 국고 및 지방비 등이 포함됨.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56건)을 포함한 수치임.

4)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AHP<0.5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합계임.

〈표 III-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¹⁾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억원)

출판연도	건수	사업계획서 총사업비 (A)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B)	절감액 (A-B)
2007	4	9,790	9,705	85
2008	7	3,167	2,723	444
2009	9	111,521	123,200	- 11,679
2010	6	52,969	44,925	8,044
2011	2	7,467	5,275	2,192
2012	6	45,080	35,650	9,430
2013	4	57,822	56,763	1,059
2014	10	17,176	13,485	3,691
2015	9	44,826	39,191	- 5,635
총합계 ²⁾	57	349,818	330,917	- 18,901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간이예비타당성조사의 변경된 명칭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5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가. 예비타당성조사

2015년도에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19건으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사업계획 기준으로는 6조 7,634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으로는 6조 6,796억원에 달했다.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9〉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1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국가산단 연장	철도	6,482	8,413	1,931	0.25	0.336
2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	도로	1,980	1,375	-605	1.03	0.516
3	대구광역권(구미~경산) 철도망 구축사업	철도	1,171	1,197	26	1.00	0.517
4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철도	5,515	5,501	-14	1.04	0.584
5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신설사업	도로	16,973	16,921	-52	0.78	0.412

〈표 III-9〉의 계속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			조사결과		
			사업 계획 (A)	예타 (B)	차액 (B-A)	B/C	AHP	
6	충청권 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철도	2,527	2,107	-420	0.95	0.513	
7	성남~장호원 6 도로건설사업	도로	3,739	3,216	-523	0.48	0.359	
8	평택당진항 서부두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항만	1,283	1,413	130	0.76	0.393	
9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항만	3,751	2,911	-840	2.25	0.649	
10	서계동 복합 문화관광시설 조성	문화관광	1,745	1,808	63	1.03	0.528	
11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조성 (구:3D콘텐츠미디어산업활성화사업)	건축	1,321	1,013	-308	0.94	0.501	
12	중부권 광역 우편집중국 건립사업	건축	877	836	-41	2.04	0.665	
13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위한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전면개편사업	정보화	1,259	1,181	-78	1.01	0.560	
14	의료기술훈련원 구축사업	건축	969	988	19	1.00	0.503	
15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문화관광	1,773	1,861	89	0.97	0.515	
16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사업	건축	1,708	1,812	104	1.19	0.523	
17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²⁾	정보화	4,320	4,609	289	1.13 ²⁾	0.508	
18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문화관광	5,062	4,552	-510	0.97	0.517	
19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³⁾	사업군1	기타	5,180	681	-4,499	0.55	0.398
		사업군2	기타	0	1,040	1,040	1.05	0.600
		사업군3	기타	0	433	433	0.77	0.504
		사업군4	기타	0	399	399	0.28	0.351
		사업군5	기타	0	2,249	2,249	0.89	0.507
		사업군6	기타	0	279	279	0.37	0.360
합계			67,634	66,796	-839	-	-	

주 1) 조사결과는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공공기관의 모든 장비에 클라우드화가 진행되고, 기관의 모든 전산장비를 모두 제3센터로 이관하여 효율적 정보이용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2 기준임.

3)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부문별 수행 건수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은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3건, 철도부문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국가산단 연장” 등 4건, 항만부문은 “평택당진항 서부두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등 2건, 문화·관광·건축은 “서계동 복합 문화관광시설 조성” 등 12건, 기타부문(기타 및 정보화)은 3건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의 총사업비가 2조 1,512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3,516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고, 부문별 사업 1건당 평균 총사업비는 도로부문이 7,171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	합계	
수행 건수		3	4	2	7	-	3	19	
총 사 업 비	사업계획	소계	22,692	15,695	5,034	13,455	-	10,759	67,634
	(A)	평균	7,564	3,924	2,517	1,922	-	3,586	3,560
	예타	소계	21,512	17,218	4,324	12,870	-	10,871	66,796
	(B)	평균	7,171	4,305	2,162	1,839	-	3,624	3,516
	차액	소계	-1,180	1,523	-710	-584	-	112	-839
	(B-A)	평균	-393	381	-355	-83	-	37	-44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이 7건으로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약 37% 가량을 차지한다. 총사업비 규모를 보아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3조 8,730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국토 교통부	해양 수산부	문화 체육 관광부	미래 창조 과학부	산업 통상 자원부	보건 복지부	행정 자치부	기타	계	
수행 건수		7	2	2	2	1	1	1	3	19	
총 사 업 비	사업계획(A)	소계	38,387	5,034	3,066	2,585	5,180	969	4,320	8,094	67,634
		평균	5,484	2,517	1,533	1,293	5,180	969	4,320	2,698	3,560
	예타(B)	소계	38,730	4,324	2,821	2,648	5,082	988	4,609	7,594	66,796
		평균	5,533	2,162	1,410	1,324	5,082	988	4,609	2,531	3,516
	차액(B-A)	소계	343	-710	-245	63	-98	19	289	-500	-839
		평균	49	-355	-123	31	-98	19	289	-167	-44

주: 1) 안전행정부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나뉘었음.

2)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

사업이 수행된 권역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건 수 기준으로는 수도권 사업이 전체 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조 5,443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참조).

〈표 III-12〉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	합계	
수행 건수		8	-	3	1	5	2	19	
총 사 업 비	사업계획(A)	소계	36,487	-	8,466	1,321	14,922	6,439	67,634
		평균	4,561	-	2,822	1,321	2,984	3,220	3,560
	예타(B)	소계	35,443	-	7,495	1,013	16,582	6,262	66,796
		평균	4,430	-	2,498	1,013	3,316	3,131	3,516

주: 기타 권역은 기타 재정사업과 정보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B/C \geq 1$)의 비율은 약 66.7%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철도, 항만부문에서 각각 50%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관광·건축부문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¹⁾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3	4	2	7	-	8	24
$B/C \geq 1$	건수	1	2	1	7	-	16
	비율	33.3	50.0	50.0	100.0	-	66.7

주 1)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은 공공기관의 모든 장비에 클라우드화가 진행되고, 기관의 모든 전산장비를 모두 제3센터로 이관하여 효율적 정보이용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 2 기준임.

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타당성 확보율은 70.8%이다. 부문별로는 문화·관광·건축부문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이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각 부문별로 도로는 33.3%, 철도는 75%의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단위: 건, %)

구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¹⁾	수자원	기타	전체
전체건수	3	4	2	7	-	8	24
AHP≥0.5	건수	1	3	1	7	-	5
	비율	33.3	75.0	50.0	100.0	-	62.5

주: 1)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은 공공기관의 모든 장비에 클라우드화가 진행되고, 기관의 모든 전산장비를 모두 제3센터로 이관하여 효율적 정보이용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2 기준임.
 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1건의 사업을 6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5년도에 완료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총 9건으로 총사업비의 합계는 사업계획이 4조 4,826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3조 9,191억원으로 5,635억원 가량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5〉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번호	사업명	부문	총사업비(억원)		
			사업계획(A)	적정성 검토(B)	차액(B-A)
1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자원	1,188	1,157	-31
2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사업	항만	4,649	3,456	-1,193
3	불갑저수지 치수능력 증대사업	수자원	742	649	-93
4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장 건립사업	건축	1,897	859	-1,038
5	북함민원센터 건립	건축	3,520	1,781	-1,739
6	제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건축	1,165	631	-535
7	제주특별자치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축	2,350	1,599	-751
8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건축	27,637	27,637	0
9	10.27 법난기념관 건립	건축	1,678	1,423	-256
합계			44,826	39,191	-5,635

부문별 수행 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부문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사업” 등 6건, 수자원부문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건, 항만부문은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사업” 1건을 수행하였다. 부문별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건축부문의 총사업비가 3조 8,247억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축	수자원	항만	총합계
수행 건수		6	2	1	9
총사업비	사업계획(A)	38,247	1,930	4,649	44,826
	적정성 검토(B)	33,929	1,806	3,456	39,191
	차액(B-A)	-4,318	-124	-1,193	-5,635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2건, 국회사무처 1건, 농촌진흥청 1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보건복지부 1건, 안전행정부 3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이 수행되었다.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4,395억원(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국토 교통부	국무 총리실	농림 축산 식품부	문화 체육 관광부	산업 통상 자원부	해양 수산부	행정중 심복합 도시건 설청	환경부	총합계
수행 건수		1	1	1	1	1	1	1	2	9
총 사 업 비	사업계획(A)	1,188	1,678	742	1,897	27,637	4,649	3,520	3,515	44,826
	적정성 검토(B)	1,157	1,423	649	859	27,637	3,456	1,781	2,230	39,191
	차액(B-A)	-31	-256	-93	-1,038	0	-1,193	-1,739	-1,285	-5,635

사업이 수행된 권역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호남권과 제주권이 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기타	합계
수행 건수		1	1	1	2	1	2	1	9
총 사업비	사업계획(A)	1,678	1,897	3,520	1,930	4,649	3,515	27,637	44,826
	적정성 검토(B)	1,423	859	1,781	1,806	3,456	2,230	27,637	39,191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5년 타당성재조사

2002~2015년까지 총 201건(조사완료 사업 기준)의 타당성재조사(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제외)가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사업이 126건으로 전체 타당성재조사의 절반 이상(약 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건축 부문 33건, 수자원 부문 14건, 철도 부문 11건, 항만 부문 11건, 기타 7건의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였다(표 III-19 참조).

2002년 이후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착수일 기준 215건의 타당성재조사 중에서 현행 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55건(2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경우가 46건(21.4%)을 차지하고 있다(표 III-20 참조).

〈표 III-1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3	3	-	-	3	-	-	6
2004	2	1	-	2	-	1	6
2005	6	-	-	3	-	-	9
2006	10	-	-	2	5	2	19
2007	9	2	2	1	-	-	14
2008	10	1	2	6	2	-	21
2009	25	-	2	1	2	1	31
2010	17	3	-	5	4	2	31
2011	12	-	-	2	-	1	15
2012	6	1	1	2	1	-	11
2013	3	1	2	3	-	-	9
2014	15	-	2	-	-	-	17
2015	8	1	-	3	-	-	12
계	126	10	11	33	14	7	201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정보화, R&D 부문 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

〈표 III-2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단위: 건)

연도	예타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예측 (30%이상) 감소	예산낭비 신고	감사원 및 국회요구	기타	합계
2002	-	-	1	-	-	-	-	1
2003	3	1	1	-	-	-	1	6
2004	2	2	5	-	-	-	-	9
2005	3	4	9	-	-	-	-	16
2006	3	4	8	-	1	-	4	20
2007	3	4	2	1	1	-	6	17
2008	4	1	6	1	-	-	6	18
2009	4	2	3	3	-	14	10	36
2010	2	8	6	1	-	6	4	27
2011	2	5	2	-	-	-	-	9
2012	2	2	3	1	-	-	1	9
2013	1	8	2	1	-	2	7	21
2014	2	5	3	7	-	-	3	20
2015	2	-	4	-	-	-	-	6
계	33	46	55	15	2	22	42	215

주: 1) 사업 착수일(공문 접수일) 기준임.

2) 2015년 12월말 기준임.

2007년 이후 수요예측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수행되었으며, 2007~2015년까지 수요예측재조사는 총 17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 39건이 수행되었다. 부문별로는 수요예측재조사는 주로 도로부문 15건과 항만부문 2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도로부문 7건, 철도부문 4건, 항만부문 4건, 문화·관광·건축부문 17건, 수자원 4건, 기타 3건에 대해 검토가 수행되었다.

한편 2015년에는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와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는 총 1건,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3건이 수행되었다.

〈표 III-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0	1	-	1	1	-	-	3
2011	1	3	-	1	-	-	5
2012	1	-	-	1	1	1	4
2013	1	-	-	4	-	1	6
2014	2	-	1	6	1	1	11
2015	1	1	2	4	2	-	10
계	7	4	4	17	4	3	39

주: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22〉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7	-	-	1	-	-	-	1
2008	1	-	-	-	-	-	1
2009	2	-	1	-	-	-	3
2010	1	-	-	-	-	-	1
2011	-	-	-	-	-	-	0
2012	1	-	-	-	-	-	1
2013	3	-	-	-	-	-	3
2014	7	-	-	-	-	-	7
2015	-	-	-	-	-	-	0
계	15	-	2	-	-	-	17

주: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표 III-23〉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15	2	-	1	-	1	-	4
계	2	0	1	0	1	0	4

주: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003년 타당성재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 12월 말까지 총 234건의 토목, 건축, 정보화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재조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약 29조 6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24〉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단위: 건,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조사 총사업비 ¹⁾²⁾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조사 총사업비	
2003	6	47,987	42,328	5,659
2004	6	13,977	13,928	49
2005	9	72,976	47,375	26,847
2006	19	49,126	44,357	4,769
2007	14	40,650	43,684	-1,915
2008	21	166,919	155,070	29,306
2009	31	98,162	81,191	30,541
2010	31	148,006	132,340	34,250
2011 ³⁾	48	121,438	108,690	96,584
2012	11	48,657	48,598	34,987
2013	9	10,420	10,069	5,948
2014	17	79,244	75,186	19,411
2015	12	36,504	33,805	9,308
계 ⁴⁾	234	934,066	836,621	295,744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AHP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은 요구안 대비 최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합산하여 집계함.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재조사(33건)을 포함한 수치임.

4)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9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적정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약 3조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25〉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단위: 건, 억원)

연도	요구안 총사업비 및 재검토 총사업비			총사업비 절감액
	총건수	요구안 총사업비	재검토 총사업비	
2010	5	83,021	77,217	5,804
2011	3	14,959	11,241	3,718
2012	4	47,117	30,532	16,585
2013	6	8,429	7,294	1,135
2014	11	12,490	9,871	2,619
2015	10	12,141	11,700	441
계	39	178,157	147,855	30,302

주: 1) 2015년 12월말 기준 조사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舊간이타당성재조사) 사업 대상임.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5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가.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의 요건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타 대상사업임에도 예타 미실시”가 4건,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가 4건, “수요 30% 이상 감소”가 1건, “예타 대상규모로 증가”가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	예타 미실시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 30%이상 감소	기타	합계
타당성재조사	1	4	4	1	2	12

2015년도에 수행한 타당성재조사는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총 12건이다. 각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은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조사결과		
		요구안 (A)	타재 (B)	절감액 (A-B) 또는 (A)	B/C	AHP
1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880	815	65	1.66	0.627
2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1,286	931	356	1.00	0.505
3	아트센터 건립사업	1,145	1,199	1,145	0.76	0.391
4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건설사업	1,964	1,889	1,964	0.69	0.356
5	국도28호선(우보~고노) 개량사업	792	761	792	0.15	0.422
6	국도2, 77호선(신장~북용) 건설사업	745	669	745	0.33	0.455
7	국도19호선(장수변암우회도로) 건설사업	1,124	1,351	1,124	0.40	0.427
8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23,178	21,122	2,056	0.98	0.521
9	국지도82호선(갈천~가수) 도로확장사업	1,860	1,723	137	1.15	0.556
10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853	740	853	0.86	0.426
11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602	628	-26	1.63	0.600
12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	2,075	1,977	98	1.05	0.575
계		36,504	33,805	9,308		

- 주 1) 조사결과는 AHP를 수행한 최적대안에 한하여 제시함.
 2)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타당성재조사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기준연도가 상이함.
 3)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4)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2015년도 조사완료 사업 기준
 6) “국지도82호선(발안~조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는 2015년 조사 의뢰 후 철회됨.

타당성재조사의 부문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도로부문 사업 8건, 문화·관광·건축부문 3건, 철도부문 1건의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도로	문화·관광·건축	철도	합계
타당성재조사	8	3	1	12

2015년도 수행된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3조 6,504억원이며, 타당성재조사의 총사업비는 3조 3,805억원으로 절감액은 약 9,30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절감액
타당성재조사	12	36,504	33,805	9,308

주: 총사업비 절감액은 AHP값 0.5이상인 경우 요구안 대비 최적대안 총사업비 절감액을, AHP값이 0.5 미만인 사업의 경우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합산하여 집계하였음. 단, 타당성재조사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10건, 문화체육관광부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이 1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30〉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합계
타당성재조사	10	1	1	12

권역별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사업이 5건, 이어서 영남권 3건, 충청권 2건, 호남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단위: 건)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계
타당성재조사	5	3	2	2	12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 \geq 1$) 및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 \geq 0.5$)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은 41.7% 수준이었으며,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5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2015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단위: %)

구분		경제적 타당성 확보(B/C≥1)	종합적 타당성 확보(AHP≥0.5)
총건수		12	
타당성 확보	건수	5	6
	비율	41.7%	50.0%

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5년도에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대덕댐 건설사업” 등 총 10건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요구안이 1조 2,141억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1조 1,700억원으로 절감액이 441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단위: 억원)

번호	사업명	총사업비		
		요구안 (A)	재검토 (B)	절감액 (A-B)
1	대덕댐 건설사업	822	1,130	-308
2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1,649	1,624	25
3	국도21호선(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	1,014	775	239
4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410	335	76
5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1,570	1,227	343
6	대구 교도소	1,869	1,886	-17
7	속초 교도소	808	713	95
8	부산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1,557	1,499	58
9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1,640	1,727	-87
10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802	785	18
합계		12,141	11,700	441

- 주: 1)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공문에 제시된 금액으로 조사결과와 가격기준연도가 상이함.
 2) 총사업비는 모두 기 투입비 포함임.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이 다수인 경우는 최소값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의한 분석결과로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5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표 III-34〉 201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감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0	12,141	11,700	441

다.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2015년도에 수행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총 4건이 수행되었다.

〈표 III-35〉 2015년도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단위: 억원)

번호	사업명
1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검토
2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3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 설계의 적정성 검토
4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주: 2015년도 12월말 조사완료 사업 기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타당성분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사업계획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협약(안) 검토, 자문 등 기타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수행한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수행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단위: 건)

업무 유형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조사	적격성조사	-	-	-	-	-	4	1	12	10	25	5	3	5	2	2	-	
	제안서검토	5	23	19	22	39	15	11	12	11	15	14	13	10	5	7	6	4
	타당성분석(BTO)	-	-	-	-	-	-	-	-	-	-	-	-	-	-	1	2	2
	타당성분석(BTL)	4	8	10	-	4	4	-	-	-	-	68	17	14	20	15	12	11
	수요예측재조사	-	-	-	-	-	-	-	-	-	-	-	-	-	-	-	2	3
	적격성재조사	-	-	-	-	-	-	-	-	-	-	-	-	-	-	-	2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등	7	7	9	7	12	11	48	57	62	42	42	35	18	14	12	11	10	
사업계획 평가	1	2	8	7	-	7	16	8	17	5	1	7	4	2	-	-	1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협상	3	32	23	25	29	20	6	8	6	8	4	4	3	3	-	4	-
	자문 등 기타						39	76	71	98	58	65	90	173	147	196	174	
실시협약(안) 검토	3	5	3	2	2	7	2	41	78	80	72	45	25	20	13	16	16	
자금재조달 협상 및 사전검토	BTO	3	5	3	2	2	7	2	1	5	4	5	4	7	6	5	4	8
	BTL	-	-	-	-	-	-	-	40	73	76	67	41	18	14	8	12	8
사업시행조건조정	-	-	-	-	-	-	-	-	-	-	-	-	-	-	2	-	2	4
금융단기(MRG 검토 등)	-	-	-	-	-	-	-	-	-	-	-	-	-	-	16	17	48	31
분쟁조정검토	-	-	-	-	-	-	-	-	-	-	-	-	-	-	3	1	2	2
합 계	23	77	72	63	86	64	126	203	261	270	298	200	183	267	225	313	267	

주: 조사, 검토, 분석, 평가, 협상 등은 년도 말의 과제완료기준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 소득 증가, 지역개발, 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전력·용수·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지방화·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급증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1) 추진경위

1994년 8월에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익형 사업(BTO)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1999년 12월)하였는데, 개정내용은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민간제안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였고, 학교시설 및 군주거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사업(BTL) 방식 도입과 더불어 공모 형태의 인프라펀드를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시행령 개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금의 민간투자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임대형 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사전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논란이 되어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변천과정은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민간투자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던 시기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제2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1999년 3월까지이다. 제3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며, 제4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기간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기간별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구분	기간	특성
제1기	1968~1994	· 개별 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제2기	1994~1998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도모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의 경우 BTO 방식으로, 제2종의 경우 BOO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제3기	1999~2004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 폐지하여 사업추진방식 다각화
제4기	2005~현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BTL 방식 도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의무화 ·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주: 1)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2)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2) 법적근거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는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업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감독·제재조치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적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각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법·시행령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방향

이 외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참고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세부요령 등이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유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투자대상시설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유형이다.

〈표 IV-3〉 사회기반시설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교육(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치원 및 학교
국방(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 군사시설 중 주거, 복지 및 체육시설 등
국토교통(15)	도로법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	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항공법	공항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
	하천법	하천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
문화체육관광(6)	임대주택법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도서관법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	

〈표 IV-3〉의 계속

분야 (시설 유형 개수)	법률	시설유형
미래창조과학(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국가정보화 기본법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보건복지(4)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산림(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산업통상자원(5)	전원개발촉진법	전원설비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기반시설
안전행정(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전거 이용시설
여성가족(1)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해양수산(3)	항만법	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배후간선망 연결시설 및 기반시설
환경(6)	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법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시설
12개 분야	52개 법률	49개 사회기반시설 유형

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나. 추진 절차 및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재정투자사업 중 사업성이 우수하고 정부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정부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둘째,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민간 제안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표 IV-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평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축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주로 BTO 방식과 BTL 방식이 있으며, 기타 BOT, BOO 방식 등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BTO 및 BTL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표 IV-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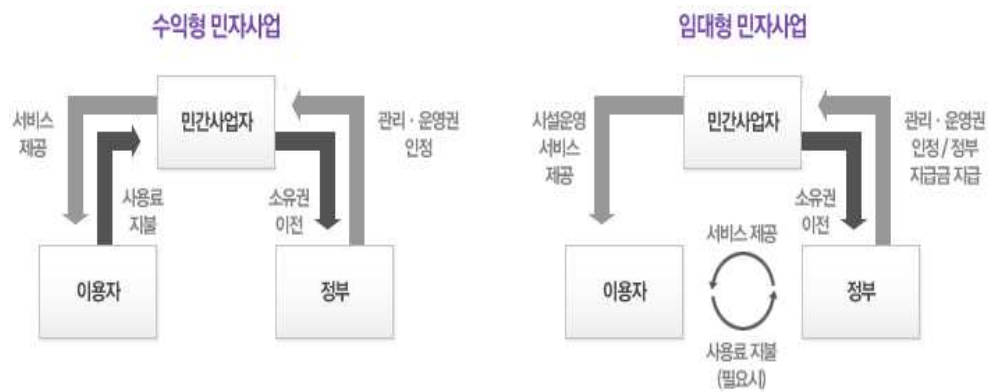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7.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익형인 BTO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시설을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도로 및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임대형인 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기반으로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학교 및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시장위험(수요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혼합형 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BTO 방식부터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그림 IV-1] 수익형 BTO와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자료: KDI PIMAC 홈페이지 (<http://pimac.kdi.re.kr>)

BTO와 BTL 방식의 대상시설 성격 및 투자비 회수, 사업 리스크 등의 주요 항목별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추진방식	BTO (수익형 민자사업)	BTL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수익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제정)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수요에 따라 수익률 변동)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BTL(Build-Transfer-Lease)

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을 전부 부담하여, 파산위험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운영기간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요금 인상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15.4.20.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 분담 방식’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공고하였다.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으로 구분된다.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총민간사업비를 대상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수준 만큼 투자비 등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정부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의 사업수익률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총민간투자비 중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이후 실시협약에서 정할 금액을 한도로 함)과 이를 제외한 민간투자비의 최소기회비용 및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써 정부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의 사업수익률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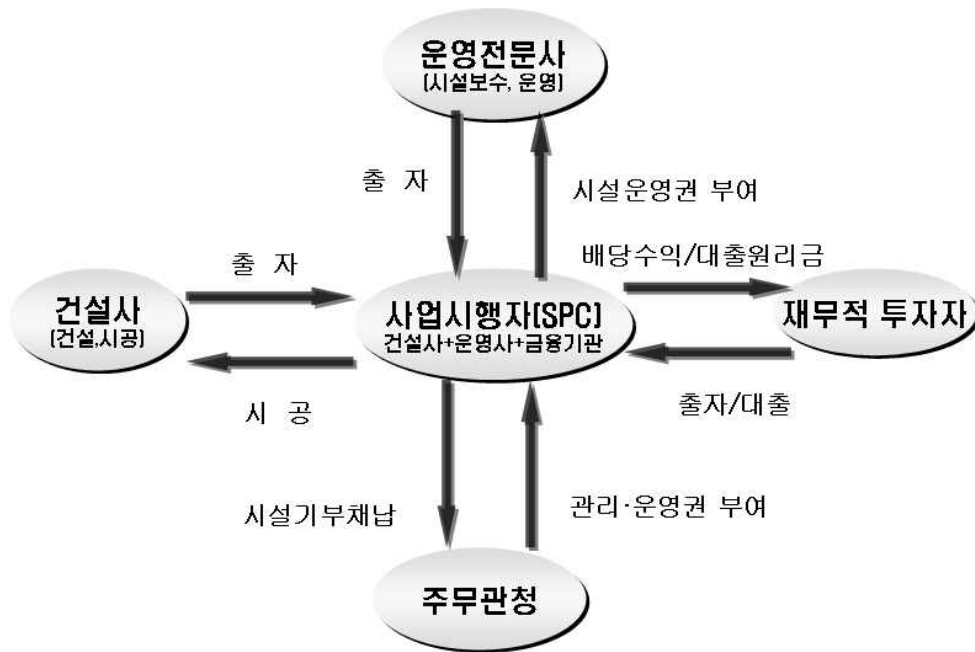
〈표 IV-7〉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구분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손익공유수준		
부담주체	일부 정부부담(예: 50%)	상당부분 정부부담(예: 70%)
보장내용	정부 부담분의 민간투자비, 운영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비 70% 원리금 ▪ 30% 기본수익(국채금리) ▪ 운영비용
환수여부	정부 부담비율만큼 환수(비율 변경가능)	민간투자비 초과금액 정부환수(예: 70%)
운영비		
보장여부	50%(예시)	100%
수익률		
기준	혼합정상수익률 (정부부담분 +사업자부담분의 가중평균)	5년국고채금리+α (보장수익률)
사용료		
수준	협약요금(공공요금 준용)	협약요금(공공요금 준용)
인상방식	매년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 가능)	매년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 가능)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실시협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사업시행자(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그림 IV-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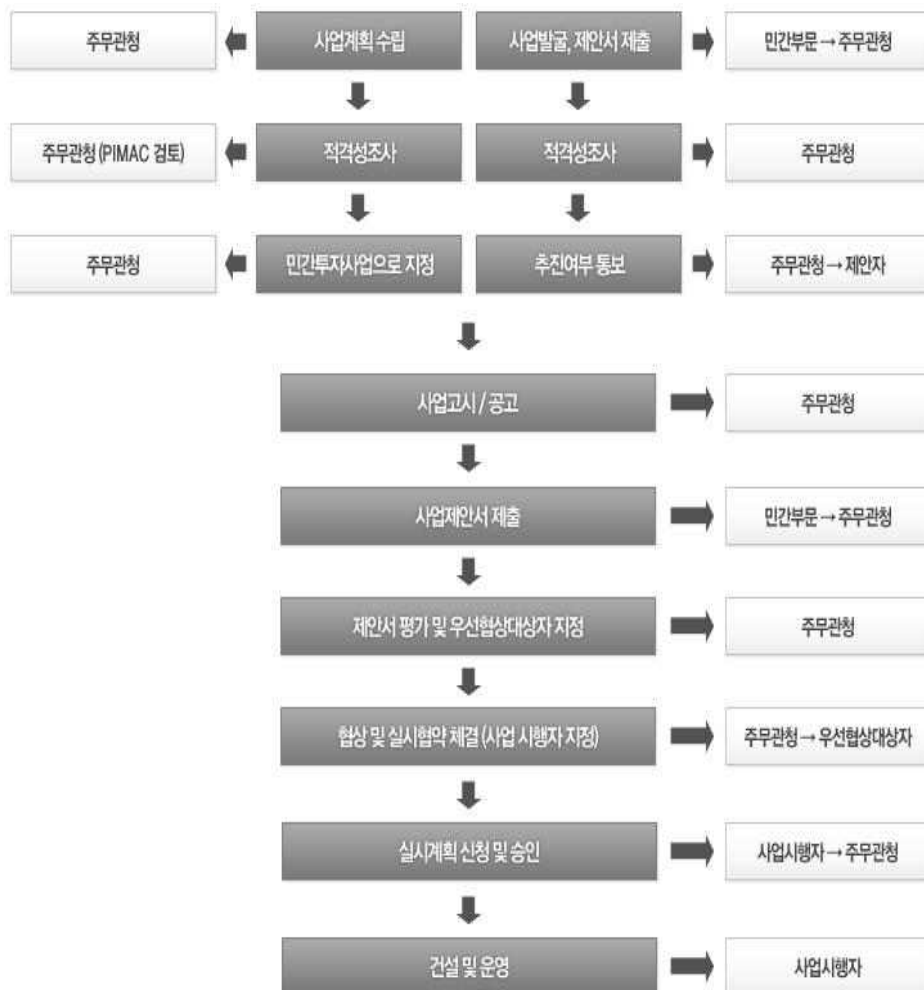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설계회사, 건설회사, 재무적 투자자, 운영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 건설, 재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주무관청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된다.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장기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4. 세부 추진절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사업’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구분되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할 수 있다.)

[그림 IV-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7) 2016년 3월 2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BTL 방식도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허용됨.

가.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여야 한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나.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부합 여부 검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을 포함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경우 추진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다.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제안이 있을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최근 대부분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⁸⁾ 기본적인 사업 추진의 절차는 앞에서 서술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 절차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을 주로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선정은 법적 적합성,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법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 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과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측면에서는 ①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편익 증진과 설계·건설·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②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건설·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③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8) 2016년 3월 2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BTL 방식도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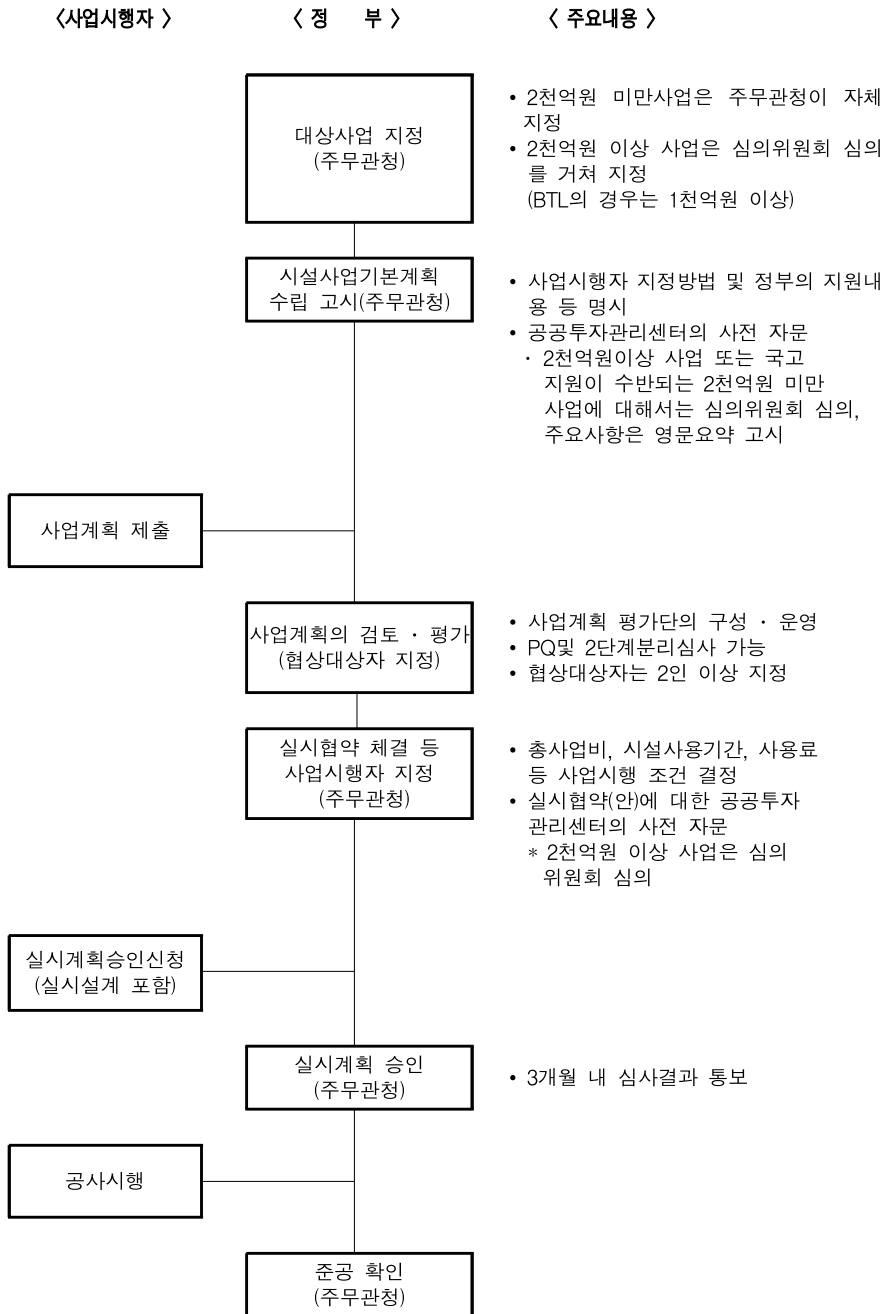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④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③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한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고려사항으로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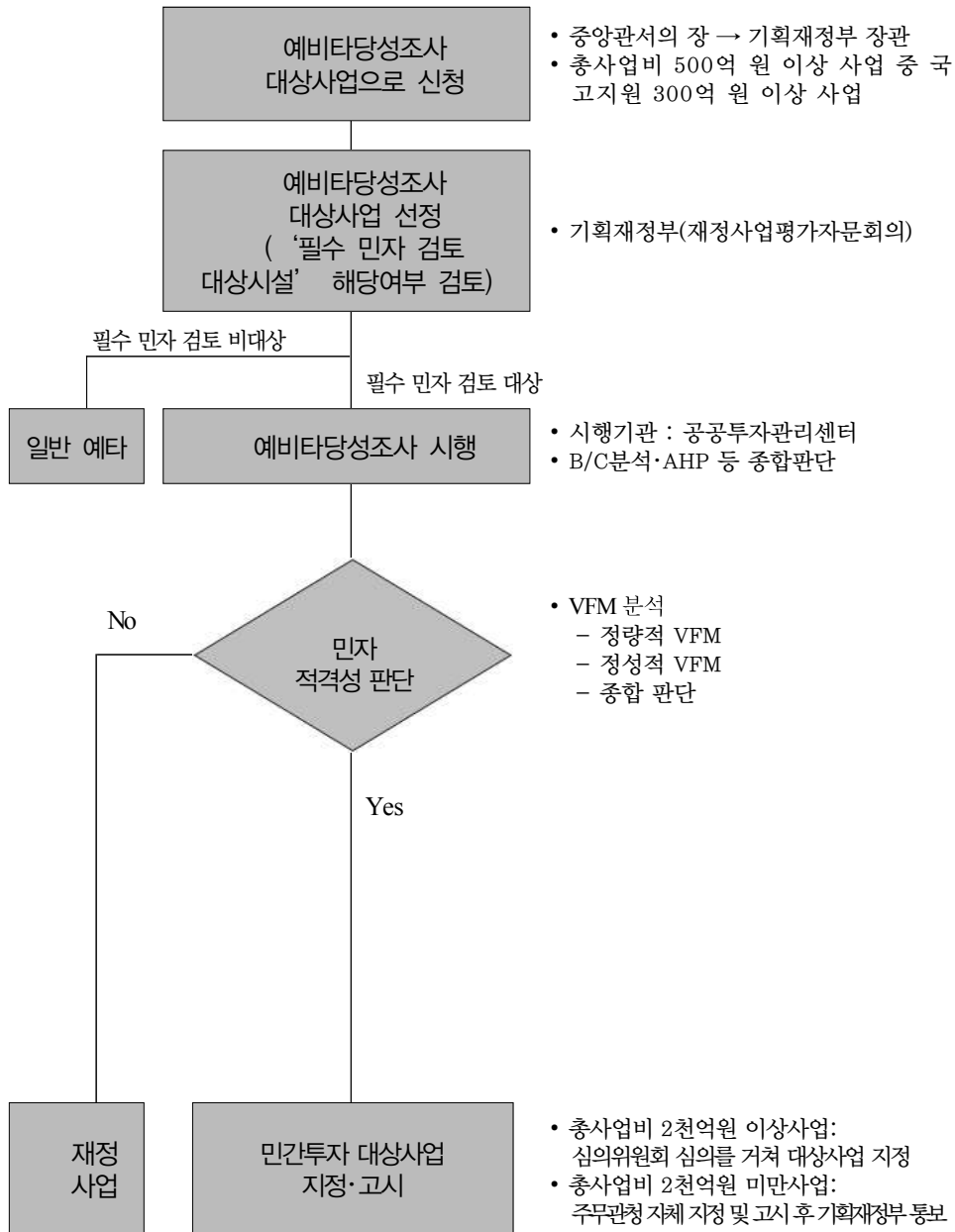
- ①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 ②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 ③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
- ④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업

[그림 IV-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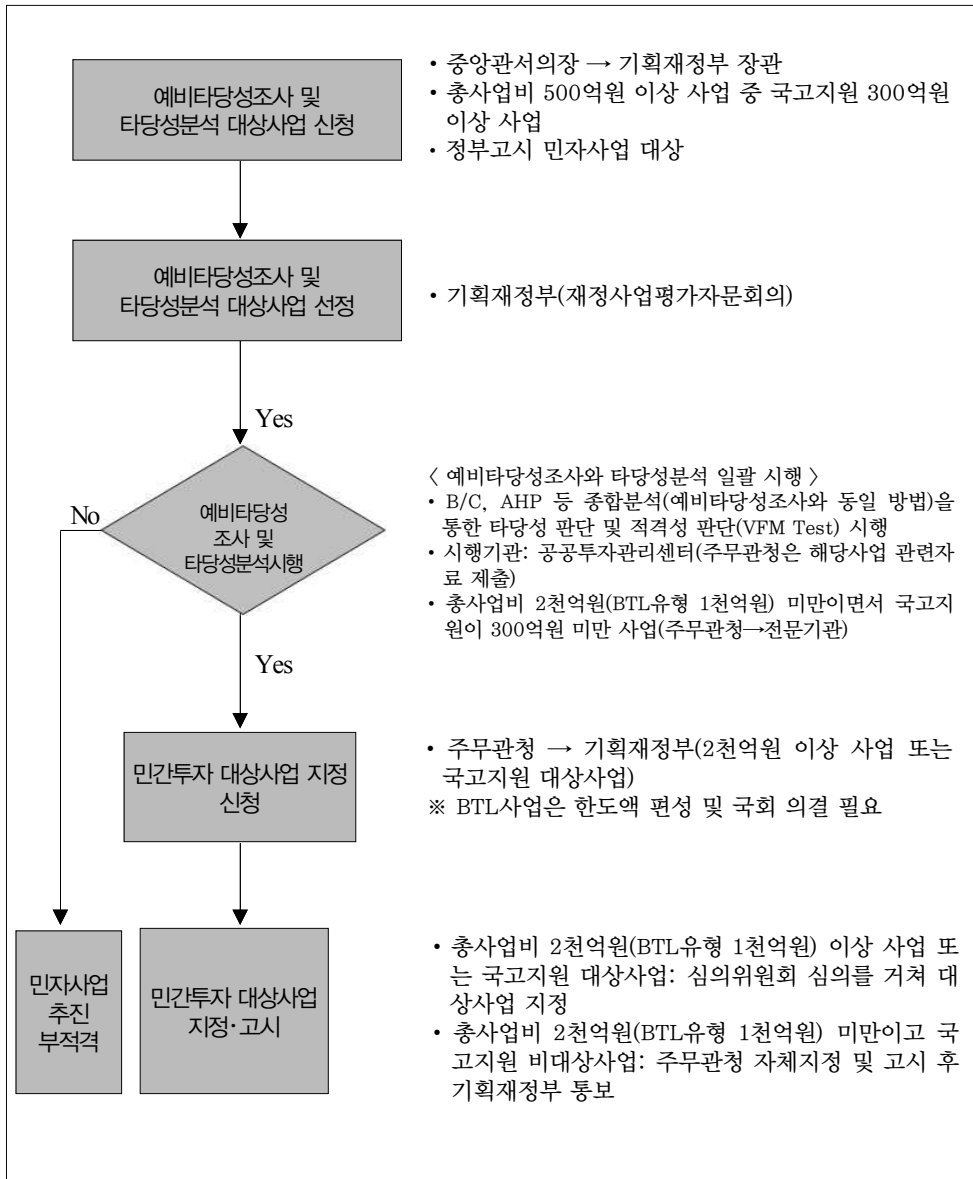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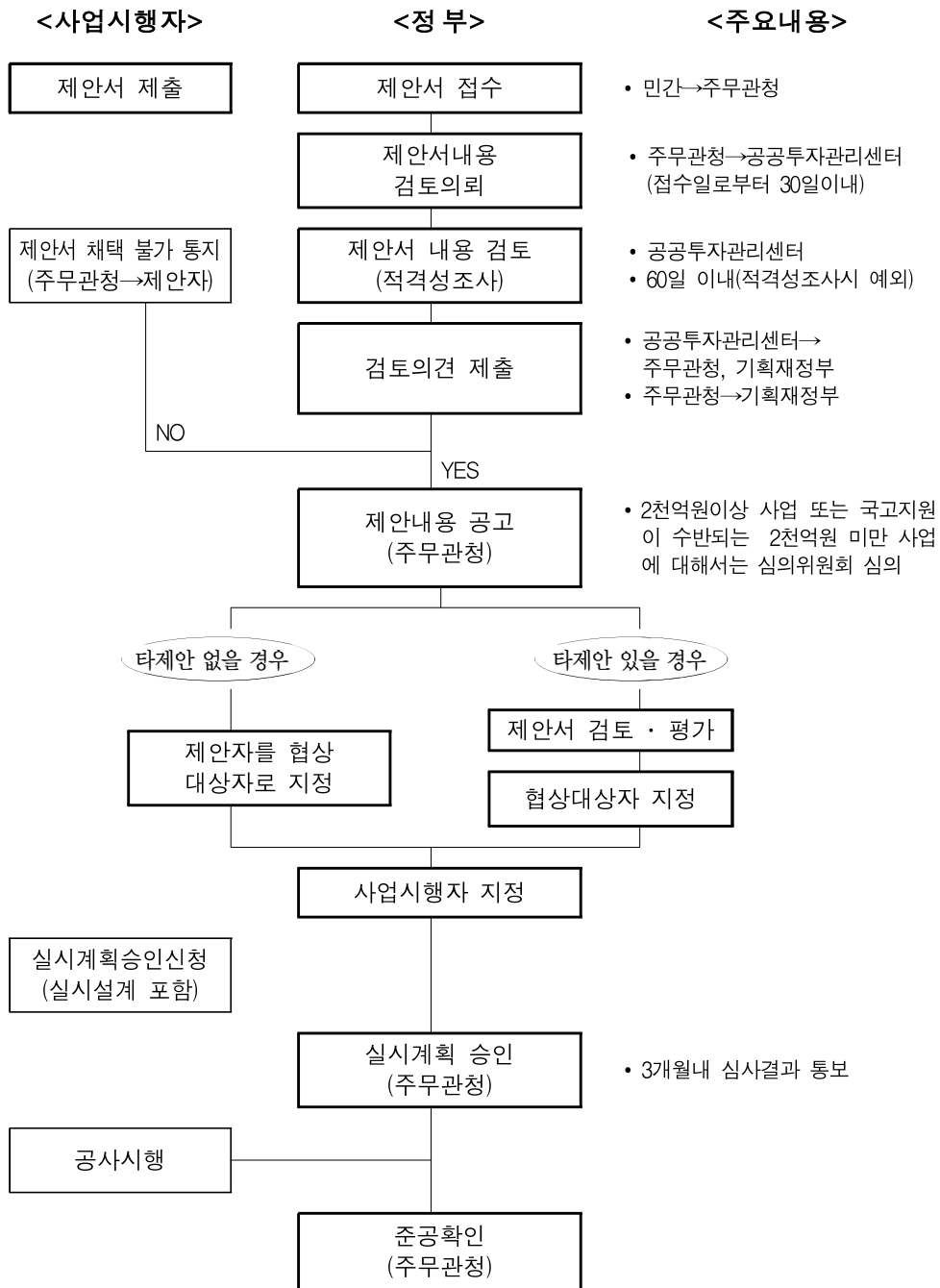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4.

[그림 IV-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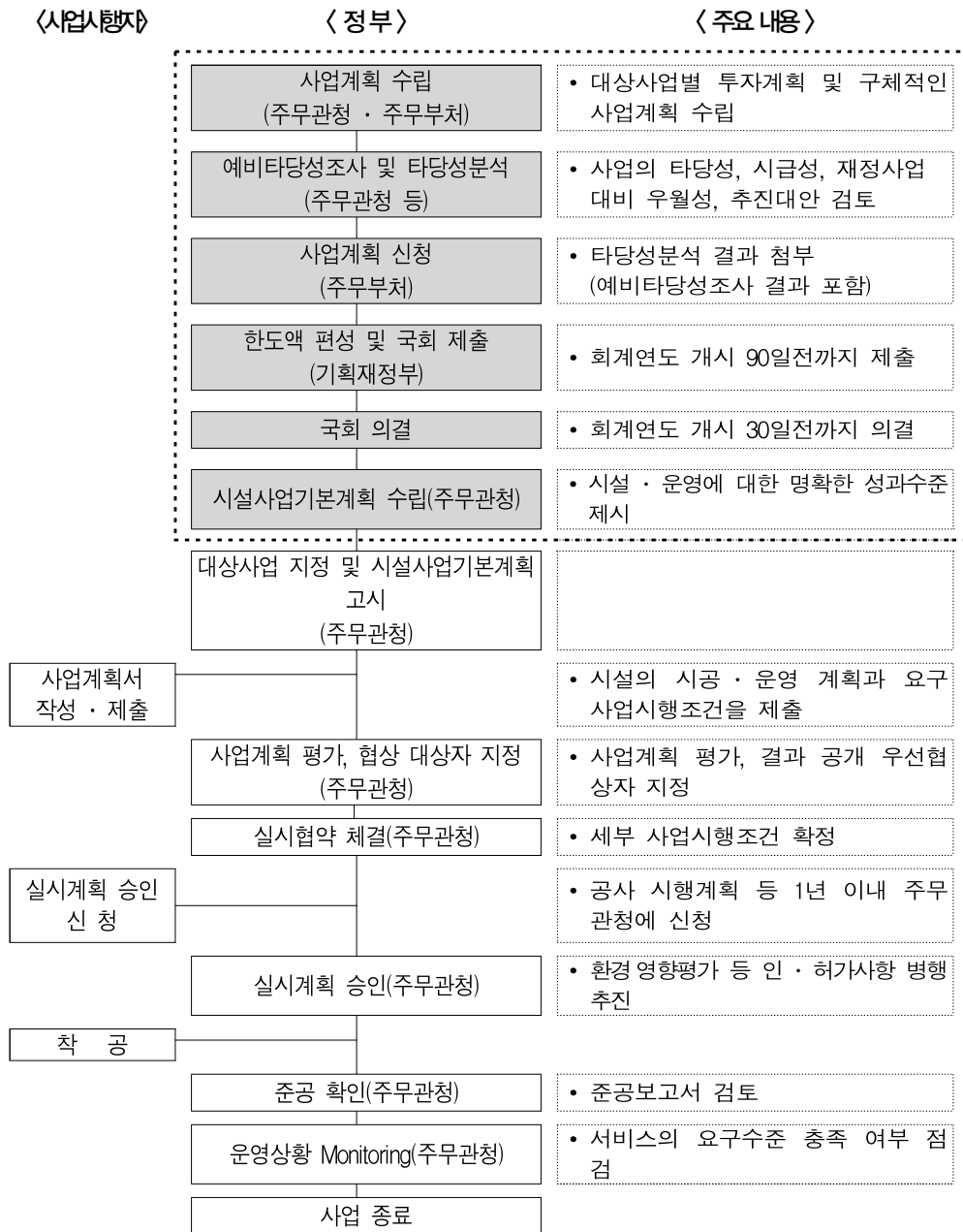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그림 IV-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그림 IV-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제2절 민간투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1.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및 타당성분석

가.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성조사를,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격성조사 내지 제안서검토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인 타당성 판단의 단계에서는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2단계인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3단계인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수행한 민간제안서 내용의 적격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무성분석 등을 통해 정부측 입장에서의 적정 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한다.

나. 타당성분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모든 BTL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립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조사하며 재정사업 추진시와 대비하여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있는지 VFM(Value for Money) 분석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있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⁹⁾.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정부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주로 수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와 대응되는 업무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형태로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타당성분석 결과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 때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사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는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러한 검토 업무를 관장하며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종 요령 등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¹⁰⁾.

나.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및 작성(민간제안)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제3자 제안공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제3자 공고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시행에 이르게 된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9)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관리기법을 통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일정 기간 동안의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상의 내용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걸쳐 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을 지원하고, 협상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협상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상 업무는 내외부의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협상점검위원회가 협상단이 수행한 협상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나. 실시협약(안)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협약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¹⁾. 따라서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를 관장하여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법령, 민

11)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각종 요령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5.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단계에 접어드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자금재조달(Refinancing) 사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자금재조달의 기준 및 절차 등 일반지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04년 기본계획에서는 자금재조달의 정의와 공유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자금재조달 이익산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최소 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7년에는 자금재조달의 범위를 출자자 변경까지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에 대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의무를 주요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자금재조달 규정을 개정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요령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공유이익규모 측정 등 자금재조달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대행 업무, 주무관청의 자문 업무, 출자자 변경 등 자금재조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2014년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MRG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사업재구조화 기법을 운영부실 및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등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본계획 제33조의2(사업 시행조건 조정)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을 통해 주무관청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대상사업에는 MRG 규정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해지시지급금 발생으로 정부의 일시적 재정투입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경우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의 의뢰를 받아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가. 분쟁조정 검토 업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다툼을 조정·심사하기 위해 2012년 3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되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되는 법률적·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은 앞서 기술한 업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기관 등의 의뢰를 받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및 일반국민이 웹사이트 또는 유선을 통해 수시로 제기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하고 있다.

제V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5년 수행 실적

2015년 12월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84개 사업, 총투자비¹²⁾는 102.2조원이다.

추진방식별로 살펴보면, BTO 방식은 223개 사업, 72.0조원이고, BOT·BOO 방식은 11개 사업, 2.0조원이며, BTL 방식은 450개 사업, 28.3조원이다.

대상시설을 총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도로사업이 43.1조원(4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8.3조원(17.9%), 환경사업 14.0조원(13.5%), 교육사업 9.8조원(9.6%), 항만사업 6.7조원(6.6%)의 순이다.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규정에 따라 BTO, BOT, BOO, BTL 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BTO와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수는 BTL 방식이 65.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투자금액은 BTO 방식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BTL 방식이 450개, BTO 방식이 223개, BOO 방식이 7개, BOT 방식이 4개 순이다.

12) 총투자비 = ① 건설보조(경상) + 타인자본(경상) + 자기자본(경상)

②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가한 금액) + 건설이자(건설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투자비 기준으로 보면, BTO 방식이 72.0조원, BTL 방식이 28.2조원 순이다.
추진방식별로 평균투자금액을 비교하면, BTO 방식의 평균 투자비가 3,228억원으로 BTL 방식의 평균 투자비 627억원의 약 5.15배 수준이다.

〈표 V-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BTO	223	32.6%	719,961	70.4%	3228
	BOT	4	0.6%	6,580	0.6%	1645
	BOO	7	1.0%	13,504	1.3%	1,929
	소계	234	34.2%	740,045	72.3%	6,802
임대형	BTL	450	65.8%	282,511	27.6%	627
합계		684	100%	1,022,557	100%	1495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수익형의 경우 사업수와 총투자비 모두 민간제안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V-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수익형	고시	105	44.8%	303,476	41.0%	2,890
	제안	129	55.2%	436,570	59.0%	3,384
	소계	234	100%	740,046	100%	3,163
임대형	고시	450		282,511		628
합계		684		1,022,557		1,521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대상시설별로 구분하면, 사업 수는 교육사업(227개)과 환경사업(183개), 투자비는 도로사업(43.1조원)과 철도사업(18.3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에 대한 교육사업은 227개 사업, 총투자비 9.8조원으로,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434억원 수준이다. 도로사업은 91개 사업, 총투자비 43.1조원으로, 사업당 평균투자비는 4,734억원 수준이다. 사업당 평균투자비가 가장 큰 사업은 철도사업으로 1.3조원 수준이다.

〈표 V-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교육	227	33.3%	9.6%	434
환경	183	26.9%	13.5%	754
도로	91	13.3%	42.1%	4,734
국방	72	10.5%	5.6%	792
문화관광	40	5.8%	1.7%	427
항만	18	2.6%	6.6%	3,741
공항	14	2.0%	0.8%	557
복지	14	2.0%	0.5%	351
철도	14	2.0%	17.9%	13,091
유통	6	0.9%	1.5%	2,574
정보통신	5	0.7%	0.2%	507
총합계	684	100%	100%	1,495

추진방식별로 대상시설을 구분하면 사업 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BTO 방식의 경우 도로사업(91개) 및 환경사업(85개)이 전체 BTO사업의 79.0%를 차지하고, BTL 방식의 경우 교육사업(226개) 및 환경사업(98개)이 전체 BTL사업의 72.0%를 차지한다. BOO와 BOT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문화관광,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1개 사업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도로사업이 전체 BTO 방식의 59.8% (43.1조원)를 차지하고, 교육사업(9.8조원)이 전체 BTL 방식의 34.9%를 차지한다.

〈표 V-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BTO	도로	91	40.8%	430,750	59.8%	4,734
	환경	85	38.2%	67,571	9.4%	795
	항만	18	8.1%	67,334	9.3%	3,741
	공항	14	6.3%	7,798	1.1%	557
	철도	10	4.5%	143,330	19.9%	14,333
	문화관광	3	1.3%	2,539	0.4%	846
	교육	1	0.4%	195	0%	195
	정보통신	1	0.4%	444	0.1%	444
	소계	223	100%	719,961	100%	3,229
BOT	문화관광	3	75.0%	3,439	52.3%	1,146
	유통	1	25.0%	3,141	47.7%	3,141
	소계	4	100.0%	6,580	100.0%	1,645
BOO	유통	5	71.4%	12,302	91.1%	2,460
	문화관광	2	28.6%	1,202	8.9%	601
	소계	7	100.0%	13,504	100.0%	1,929
BTL	교육	226	50.2%	98,250	34.9%	435
	환경	98	21.8%	70,373	24.9%	718
	국방	72	16.0%	57,015	20.2%	792
	문화관광	32	7.1%	9,919	3.5%	310
	복지	14	3.1%	4,916	1.7%	351
	정보통신	4	0.9%	2,092	0.7%	523
	철도	4	0.9%	39,946	14.1%	9,986
	소계	450	100%	282,511	100%	628
합계	684	-	1,022,557	-	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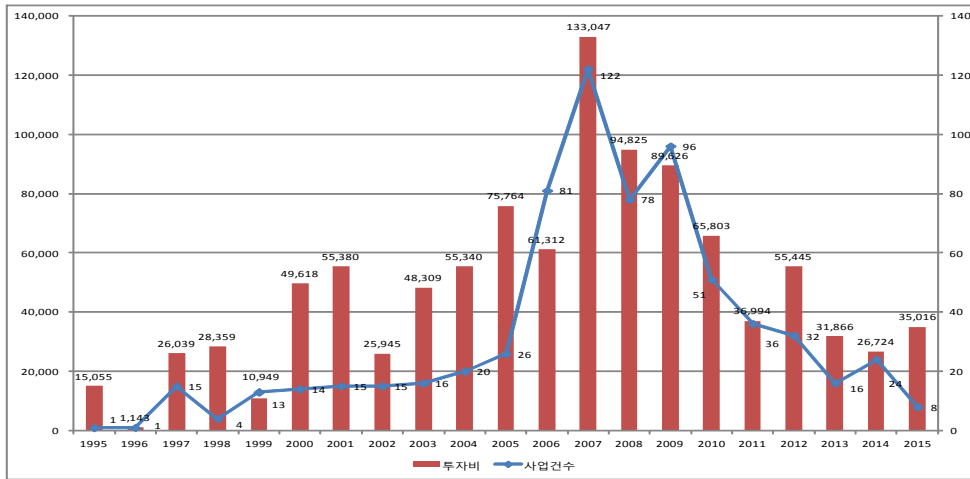
주: 비중은 추진방식별로 구분됨.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994년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수와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1999년 민간제한방식과 MRG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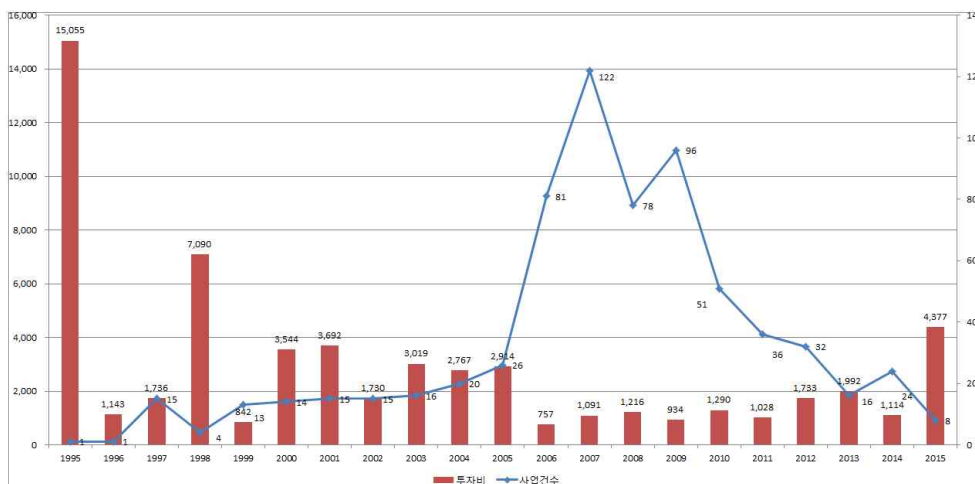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에 사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07년에 사업 수(122개)와 투자금액(13.3조원)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V-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2000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도입과 MRG 활용으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임대형 사업 도입의 영향으로 사업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투자비 규모는 감소되었다.

[그림 V-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연도별로 추진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V-5>와 같다.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약 74.0조원이며, BTL 방식 사업은 약 28.2조원에 이르고 있다. 만약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민간이 투자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재정부담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편익이 그만큼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 도	사업수	총 투자비	평균 투자비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5,055	1	15,055		
1996	1	1,143	1,143	1	1,143		
1997	15	26,039	1,736	15	26,039		
1998	4	28,359	7,090	4	28,359		
1999	13	10,949	842	13	10,949		
2000	14	49,617	3,544	14	49,617		
2001	15	55,380	3,692	15	55,380		
2002	15	25,945	1,730	15	25,945		
2003	16	48,309	3,019	16	48,309		
2004	20	55,340	2,767	20	55,340		
2005	26	75,764	2,914	18	71,929	8	3,836
2006	81	61,312	757	11	31,503	70	29,808
2007	122	133,046	1,091	18	71,690	104	61,357
2008	78	94,825	1,216	15	66,366	63	28,459
2009	96	89,626	934	11	35,843	85	53,782
2010	51	65,803	1,290	3	19,633	48	46,169
2011	36	36,994	1,028	12	23,320	24	13,673
2012	32	55,445	1,733	8	38,870	24	16,576
2013	16	31,866	1,992	9	15,380	7	16,486
2014	24	26,724	1,114	9	15,856	15	10,868
2015	8	35,016	4,377	6	33,519	2	1,497
합 계	684	1,022,557	1495	234	740,045	450	282,511

연도별로 추진 주체를 비교하면, 임대형 사업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수가 국가관리 및 국가관리지자체 사업보다 사업수가 더 많지만 총투자비의 규모는 낮았다.

〈표 V-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사업수	총투자비	국가관리		국가관리지자체		지자체관리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사업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	15055	-	-	-	-
1996	1	1,143	-	-	-	-	1	1,143
1997	15	26,039	12	21012	1	3025	2	2,002
1998	4	28,359	1	26310	1	1882	2	167
1999	13	10,949	4	7661	-	-	9	3,288
2000	14	49,617	2	43137	-	-	12	6,482
2001	15	55,380	4	48255	-	-	11	7,124
2002	15	25,945	-	-	2	20621	13	5,324
2003	16	48,309	4	15131	3	28,611	9	4,566
2004	20	55,340	4	26960	4	23,150	12	5,229
2005	26	75,764	10	49053	6	21,957	10	4,753
2006	81	61,312	17	26536	18	20,611	46	14,165
2007	122	133,046	16	55634	38	31,869	68	45,544
2008	78	94,825	10	55836	28	20,555	40	18,434
2009	96	89,626	35	43968	28	30,497	33	15,162
2010	51	65,803	22	47625	14	10,763	15	7,415
2011	36	36,994	10	19769	7	5,362	19	11,862
2012	32	55,445	10	39979	12	9,435	10	6,031
2013	16	31,866	5	22668	2	2,831	9	6,368
2014	24	26,724	9	14510	7	7,163	8	5,051
2015	8	35,016	2	18746	5	16,253	1	17
합계	684	1,022,557	178	597,845	176	254,585	330	170,127

연도별로 발주방식을 비교하면, 정부고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이후로 급감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아, 수익형의 경우 정부고시보다는 민간제안의 발주방식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 도	사업 수	총투자비	정부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5,055	1	15,055	-	-	-	-
1996	1	1,143	1	1,143	-	-	-	-
1997	15	26,039	15	26,039	-	-	-	-
1998	4	28,359	4	28,359	-	-	-	-
1999	13	10,949	12	10,599	-	-	1	350
2000	14	49,617	11	47,491	-	-	3	2,126
2001	15	55,380	10	51,183	-	-	5	4,198
2002	15	25,945	11	13,275	-	-	4	12,670
2003	16	48,309	7	28,877	-	-	9	19,432
2004	20	55,340	11	26,145	-	-	9	29,194
2005	26	75,764	6	24,578	8	3,835	12	47,351
2006	81	61,312	8	27,634	70	29,808	3	3,869
2007	122	133,046	5	1,116	104	61,358	13	70,574
2008	78	94,825	1	159	63	28,459	14	66,207
2009	96	89,626	-	-	85	53,782	11	35,843
2010	51	65,803	1	722	48	46,169	2	18,912
2011	36	36,994	-	-	24	13,673	12	23,320
2012	32	55,445	-	-	24	16,576	8	38,870
2013	16	31,866	1	1,101	7	16,486	8	14,279
2014	24	26,724	-	-	15	10,868	9	15,856
2015	8	35,016	-	-	2	1,497	6	33,519
합 계	684	1,022,557	105	303,476	450	282,511	129	436,570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비교하면, 사업 수 측면에서는 지자체관리사업(330개)이 국가관리사업(178개)의 약 2배 수준이지만, 총투자비는 국가관리 및 국가관리지자체사업(85.2조원)이 지자체관리사업(17.0조원)보다 규모가 크다. 국가관리 및 국가관리지자체사업의 평균투자비는 2,408억원이며, 지자체사업의 평균투자비는 516억원이다.

〈표 V-8〉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178	26.1%	597,845	58.5%	3,359
국가관리지자체	176	25.7%	254,585	24.9%	1,447
지자체관리	330	48.2%	170,127	16.6%	516
총합계	684	100%	1,022,557	100%	1,495

추진주체별 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가관리사업과 국가관리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수는 BTL 방식, 투자금액은 BTO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수와 투자금액 모두 BTO 방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관리사업은 BTO 방식이 사업 수의 36.0%, 투자금액의 77.2%, 국가관리지자체사업은 BTL 방식이 사업 수의 79.0%, 투자금액의 32.4%, 지자체관리사업은 BTL 방식이 사업 수의 61.2%, 투자금액의 45.9%를 차지한다.

〈표 V-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방식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관리	BTO	64	36.0%	461,517	7,211
	BOT	1	0.6%	3,141	3,141
	BOO	4	2.2%	11,159	2,790
	BTL	109	61.2%	122,028	1,120
	소계	178	100%	597,845	3,359
국가관리 지자체	BTO	37	21.0%	172,184	4,654
	BTL	139	79.0%	82,401	593
	소계	176	100%	254,585	1,447
지자체관리	BTO	122	37.0%	86,261	707
	BOT	3	0.9%	3,439	1,146
	BOO	3	0.9%	2,345	782
	BTL	202	61.2%	78,082	387
	소계	330	100%	170,127	516
합계		684		1,022,557	1,495

추진주체별 대상 사업은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관리사업(178건)은 국방, 교육, 도로, 항만 순이며, 국가관리지자체사업(176건)은 환경사업이 113건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관리사업(330건)은 교육 사업이 19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사업은 도로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은 환경사업이, 지자체사업은 교육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체별로 추진된 대상시설 유형이 서로 상이하다.

〈표 V-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분야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 투자비	
			비중	비중		
국가 관리	국방	72	40%	57,015	10%	792
	교육	29	16%	21,167	4%	730
	도로	24	13%	294,518	49%	12,272
	항만	18	10%	67,334	11%	3,741
	공항	14	8%	7,798	1%	557
	철도	8	4%	128,850	22%	16,106
	유통	5	3%	14,300	2%	2,860
	환경	3	2%	2,519	0%	840
	문화관광	2	1%	1,657	0%	829
	정보통신	2	1%	2,124	0%	1,062
	복지	1	1%	563	0%	563
	소계	178	100%	597,845	100%	3,359
국가관리 지자체	환경	113	64%	104,005	41%	920
	문화관광	27	15%	7,587	3%	281
	도로	16	9%	84,126	33%	5,258
	복지	13	7%	4,353	2%	335
	철도	6	3%	54,426	21%	9,071
	교육	1	1%	88	0%	88
	소계	176	100%	254,585	100%	1,447
지자체관리	교육	197	60%	77,190	45%	392
	환경	67	20%	31,421	18%	469
	도로	51	15%	52,105	31%	1,022
	문화관광	11	3%	7,855	5%	714
	정보통신	3	1%	412	0%	137
	유통	1	0%	1,143	1%	1,143
	소계	330	100%	170,127	100%	516
합계		684		1,022,557		1,495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발주방식별로 구분하면, 사업 수와 총투자비 기준 모두 정부고시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평균 투자비는 민간제안방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555개 사업, 총투자비는 58.6조원으로 사업당 평균 1,056억원이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129개 사업, 총투자비는 43.7조원으로 사업당 평균 3,384억원이다.

〈표 V-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정부고시사업	555	81.1%	42.7%	1,056
수익형	105			2,890
임대형	450			628
민간제안사업	129	18.9%	57.3%	3,384
합계	684	100%	100%	1,495

발주방식을 대상시설별로 구분할 경우 사업수를 기준으로 정부고시사업은 교육사업(227건), 환경사업(122건), 국방사업(72건), 도로사업(44건) 등의 순서이며, 민간제안사업은 환경사업(61건)과 도로사업(47건) 순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정부고시사업은 도로사업 14.2조원과 철도사업 12.4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민간제안사업은 도로사업이 28.9조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V-12〉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연 도	정부 고시						민간제안	
			수익형		임대형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교육	227	98,446	1	195	226	98,250	-	-
환경	122	78,656	24	8,283	98	70,373	61	59,288
국방	72	57,015	-	-	72	57,015	-	-
도로	44	142,297	44	142,297			47	288,453
문화관광	33	10,249	1	330	32	9,919	7	6,850
항만	13	50,808	13	50,808			5	16,526
공항	13	7,296	13	7,296			1	502
철도	9	123,860	5	83,914	4	39,946	5	59,416
복지	14	4,916	-	-	14	4,916	-	-
유통	4	10,352	4	10,352			2	5,091
정보통신	4	2,092	-	-	4	2,092	1	444
합 계	555	585,987	105	303,476	450	282,511	129	436,570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추진단계별로 보면, 전체 684개 사업 중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588개 사업(86.0%)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표 V-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완료	4	0.6%	2,382	596
운영중	588	86.0%	662,689	1,127
시공중	69	10.1%	294,596	4,270
시공준비중	23	3.4%	62,889	2,734
합계	684	100%	1,022,557	1,495

각 추진단계별로 대상시설을 구분하면 운영 중인 사업은 교육사업 219건과 환경사업 156건이 사업수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도로사업 21.3조원과 철도사업 11.0조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공중인 사업은 환경사업 18건과 도로사업 27건으로 사업수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기준으로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총 22개 사업이며, 총투자비 규모는 62.2조원이다.

〈표 V-1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운영완료		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전체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교육	-	-	219	93,106	6	4,326	2	1,014	227	98,445
환경	2	771	156	109,314	18	22,507	7	5,352	183	137,944
도로	-	-	56	213,485	27	182,508	8	34,756	91	430,750
국방	-	-	65	48,482	5	5,409	2	3,124	72	57,015
문화관광	-	-	37	14,438	2	646	1	2,016	40	17,099
항만	-	-	15	49,931	2	9,538	1	7,866	18	67,334
공항	2	1,611	12	6,187					14	7,798
철도	-	-	8	109,693	5	65,422	1	8,160	14	183,276
복지	-	-	11	3,168	2	1,147	1	602	14	4,916
유통	-	-	4	12,351	2	3,093	-	-	6	15,443
정보통신	-	-	5	2,536	-	-	-	-	5	2,536
합계	4	2,382	581	659,891	71	306,687	22	62,247		

수익형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구분하면, 운영 중인 사업은 167개 사업 43.1조원, 시공중인 사업은 48개 사업 25.0조원, 시공준비중인 사업은 15개 사업 5.6조원 규모이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은 58.%, 시공중인 사업은 33.8%, 시공준비 중인 사업은 7.6%를 차지한다.

〈표 V-15〉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완료	4	1.7%	2,382	596
운영중	167	70.8%	431,484	2,584
시공중	48	20.5%	249,958	5,207
시공준비중	15	6.4%	56,221	3,748
합 계	234	100.0%	740,045	3,163

임대형 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면, 운영 중인 사업은 421개 사업 23.1조원, 시공 중인 사업은 21개 사업 4.5조원, 그리고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8개 사업 6.7조원 규모다. 총투자비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은 81.8%, 시공 중인 사업은 15.8%,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2.4%를 차지한다.

〈표 V-16〉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사업 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운영중	421	93.6%	231,205	549
시공중	21	4.7%	44,639	2,126
시공준비중	8	1.8%	6,668	834
합 계	450	100.0%	282,512	628

제2절 2015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015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는 도로, 에너지, 환경, 상·하수도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총 4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2건,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2건이다.

〈표 V-17〉 2015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민간제안서 검토	1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구미시	추진 가능
	2	인천광역시 주차빌딩	인천시	추진 가능
	3	인천광역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인천시	타당성 미확보
	4	인천광역시 송도환경센터 3호기	인천시	타당성 미확보

2. 타당성분석 검토(BTO)

2015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는 철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으로 총 2건이 수행되었으며, 조사결과는 2건 모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V-18〉 2015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

사업형태	연번	사업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타당성분석 검토	1	신안산선 복선전철	국토교통부	추진 가능
	2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개량	환경부	추진 가능

3. 타당성분석 검토(BTL)

2015년도 타당성 분석 검토(BTL)은 하수관거, 국방부 관사, 국립대학교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총 11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모든 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무관청은 국방시설본부(5건), 교육부(3건), 고용노동부(1건) 및 기타 지자체(2건) 등이다.

〈표 V-19〉 2015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1	단양군 군립아파트	단양군	적격성있음
2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적격성있음
3	부산시 하수관거	부산광역시	적격성있음
4	국방부 병영시설(과주연천동두천)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5	국방부 병영시설(연천철원)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6	국방부 병영시설(양구인제)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7	국방부 병영시설(원주홍천)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8	인천대학교외 1교 기숙사	교육부	적격성있음
9	전남대학교 기숙사	교육부	적격성있음
10	국방부 병영시설(홍천양구)	국방시설본부	적격성있음
11	공주대(본교, 예산캠퍼스) 기숙사	교육부	적격성있음

4. 수요예측재조사

2015년도 수요예측재조사는 철도, 수자원, 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총 3건이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2건이며,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실시협약 수요 대비 64~77% 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 전반의 여건을 감안한 주무관청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V-20〉 2015년도 수요예측재조사

사업형태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조사결과
수요예측 재조사	1	면목선 경전철	서울특별시	추진 가능
	2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화성시	추진 가능
	3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국토교통부	30% 이상 차이 발생

제3절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015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는 총 8건이다. 검토한 사업의 유형은 대학교 생활관, 하수관거정비, 병영시설 사업 등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등이다.

〈표 V-21〉 2015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1	강원대학교 등 6개 국립대학 생활관 신축(BTL)	교육부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미래창조과학부
3	‘15년도시흥시하수관로정비BTL사업	시흥시
4	‘15년부산광역시(사직·장진분구)하수관로정비BTL	부산광역시
5	김포시하수관로정비BTL사업	김포시
6	단양군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형 민자사업(BTL)	단양군
7	2015년국방부병영시설BTL사업(양주·과주병영시설)	국방부
8	2016년국방부병영시설BTL사업(원주·여주·성남병영시설)	국방부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2015년도 BTO 방식의 제3자 공고(안) 검토는 총 2건을 수행하였다.

〈표 V-22〉 2015년도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1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평택시
2	내부순환(만덕~센텀) 민간투자사업	부산시

제4절 2015년도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2015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는 총 1건으로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V-23〉 2015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 수행 실적

연번	사 업 명	선정
1	서부내륙 고속도로 제안서 평가	○

제5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015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중인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총 3건이다. 모두 대형 국책사업으로 2015년도에 협상이 종료되지 못하였다.

〈표 V-24〉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연번	사 업 명	주무관청	협상결과
1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진행중
2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진행중
3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진행중

제6절 2015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BTO)

2015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O 방식의 실시협약(안) 검토 및 변경실시협약(안) 검토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등 총 8건이다.

〈표 V-25〉 2015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1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부산광역시
2	신분당선(정자~광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3	인천국제공항철도 변경협약안 사전검토	국토교통부
4	평택에코센터 실시협약안 검토	평택시
5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 합의서 검토	국토교통부
6	경북북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7	마산항개발(1-1단계) 변경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8	서울~문산 손실보전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

2. 실시협약(안) 검토(BTL)

2015년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BTL 방식의 실시협약(안) 검토는 “서울과기대 생활관 신축 BTL 실시협약(안) 검토” 등 총 8건이다.

〈표 V-26〉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연번	협약 검토	주무관청
1	서울과기대 생활관 신축 BTL 실시협약(안) 검토	교육부
2	안성의료원 이전 신축 실시협약안 검토	경기도
3	송도컨벤시아 실시협약안 검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	대곡~소사 실시협약안 검토	국토교통부
5	순천시 하수관거	순천시
6	국방부,국방부병영시설2개사업실시협약(안)	국방부
7	부산시(수민분구)하수관로정비BTL사업실시협약(안)	부산시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숙사 실시협약(안) 검토	미래창조과학부

제7절 2015년도 자금제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2015년도에는 자금제조달과 관련하여 자금제조달 사전검토 7건과 자금제조달 협상 2건 사업시행조건 조정 4건을 완료하였다.

2015년도에 공문으로 접수받은 금융재무 관련 질의답변 검토업무는 31건을 수행하였고, 그 중 MRG금액 검토가 17건, BTO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질의 10건,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은 4건이었다.

〈표 V-27〉 2015년도 자금제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유형별	건수
자금제조달 사전검토	7
자금제조달 협상	2
사업 시행조건 조정	4
단기 검토(MRG 검토 등)	31

2015년에 완료된 자금제조달 사전검토 7건은 모두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해당한다. 7건의 수익형 민자사업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의 검토 의뢰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이 2008년 기 수행한 자금제조달계획에 따른 공유이익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실제 금융약정 조건을 반영할 경우의 공유이익 산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또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제조달 협상이 수행되었다.

〈표 V-28〉 2015년도 자금제조달 사전검토 수행 실적

구분	연번	과제명
사전 검토	1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검토
	2	파주시 금촌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검토
	3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이익산정 적정성 검토
	4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검토
	5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검토
	6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자금제조달 검토
	7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및 자금제조달 검토
변경 협상	1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협상
	2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제조달 협상

2015년에 완료된 사업시행조건 조정 검토 4건은 모두 MRG가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해당한다. 4건의 수익형 민자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하여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줄이기 위해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지급금 등)이 우려되어 사업시행조건 조정 검토가 수행되었다.

〈표 V-29〉 2015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수행 실적

구분	연번	과제명
사전 검토	1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2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3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 계획서 사전검토
	4	평택당진항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 방안 검토

제8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지원팀에서는 2014년 12월에 1건과 2015년도 7월에 1건, 총 2건의 분쟁조정 검토를 의뢰받았으며, 2015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지원”과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사업 분쟁조정지원” 등 2건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였다.

〈표 V-30〉 2015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연번	분쟁조정명
1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업무 지원
2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사업 분쟁조정업무 지원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2015년도에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는 총 174건을 수행하였다.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 35건, 기재부 요청 질의 답변 62건, 홈페이지 질의 77건을 수행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업무는 총 77건으로, BTO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27건(약 35.1%), BTL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19건(약 24.7%), 민간투자사업 공통 또는 재정사업 관련, 현황·제도 및 지침 관련 등 기타 일반사항은 31건(약 40.2%)을 차지하였다.

〈표 V-31〉 2015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구 분	건수
민자제도 및 법률 관련 공문 질의답변	35건
기재부 요청 질의 답변	62건
홈페이지 Q&A	77건
계	174건

제VI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인 집행업무와 간접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생활 및 후생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2015년 기준 316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공익성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¹³⁾로 대두되면서 국회는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및 감독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

13) 국회예산정책처(2010)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 증가율이 현저히 높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국회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위원회는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관계없이 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유발됨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을 훼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2010년 5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2011년 1월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즉, 종전 공공기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자체타당성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토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일 자	추진 경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 - 공공기관 자체 수행
20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보고 - 재정전략회의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타당성검증 강화 내용 포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예산편성지침 심의·의결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등 마련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조치
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
20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발표
201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개정

2. 추진 근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50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공운법 제5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지침 수립권”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운법 제50조 제1항 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운법 제50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에서 신규 투자사업·자본 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 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3. 법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및 근거, 대상사업 및 선정 기준, 수행체계 등의 세부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이외에도 면제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기타 효율적 제도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¹⁴⁾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즉,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②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③ 법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다. ③에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14) 본 절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됨.

- 정부간 외교 협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 및 본 세부시행계획의 “I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각 공공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¹⁵⁾를 사업시행 전년도 1월말 또는 6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절차

각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 또는 7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의뢰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년도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여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되고 그 승인으로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신청하는 연도를 사업시행 연도로 본다.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조사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며,

15)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의 (별표1)에 따름.

필요시 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의뢰받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특수성 등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조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제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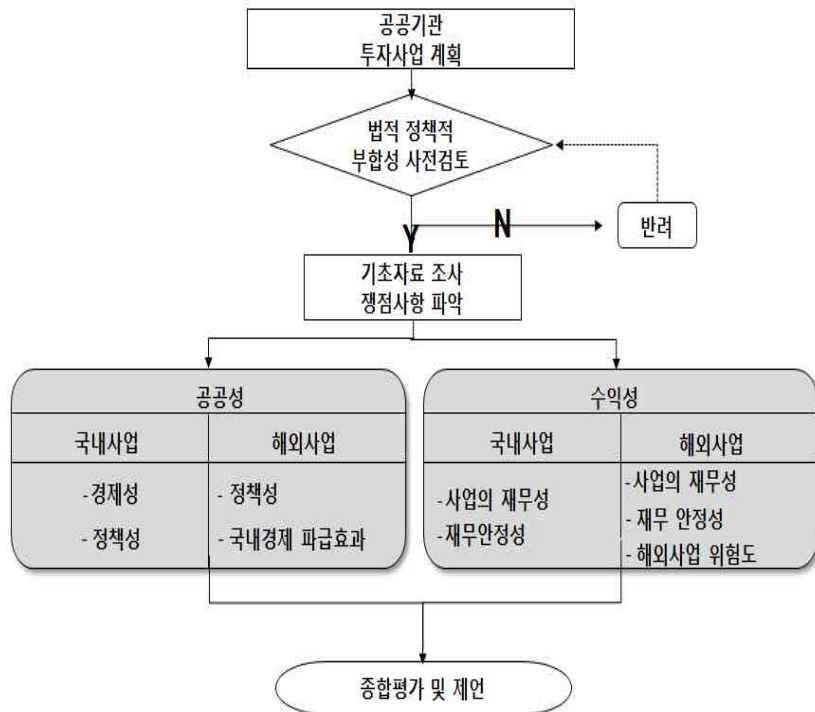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법령 ·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호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각 년도)』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조사 대상 사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의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국가,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절차는 다음 [그림 VI-1]과 같으며,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한다¹⁶⁾. 다음 <표 VI-3>과 같이 2012년까지는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2013년부터는 수익형과 비수익형사업의 평가 가중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VI-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3.

16) 본 절은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됨.

〈표 VI-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구분		평가 가중치
기존 (2012년도 이전)	국내사업	공공성 40%, 수익성 60%
	해외사업	공공성 30%, 수익성 70%
현행 (2013년도 이후)	수익형	공공성 30%, 수익성 70%
	비수익형	공공성 70%, 수익성 30%

주: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사업은 비수익형, 해외사업은 수익형으로 평가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2012.11.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가. 국내사업의 평가 방법

공공성 평가 방법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틀을 유지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편익/비용(B/C) 비율을 제시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필수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으로 구분하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필수 평가항목은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환경성 검토’, ‘지역경제발전효과’, ‘지역낙후도’ 등이며, 선택 평가항목은 경제성과 수익성 평가에서 정량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개별 조사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려한다.

수익성 평가 방법은 재무성 평가와 재무안정성 평가로 구분한다. 재무성 평가는 사업의 투자안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며,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PI)을 활용한다. 재무안정성 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투자비 재원조달 가능성, 운영기간 중 추가재원조달 위험 등 사업수행기관의 재원조달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적 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나. 해외사업의 평가 방법

해외사업의 평가도 국내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AHP 수행)한다. 단, 국내사업의 평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며, 공공성은 정책성과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국내경제 파급효과’에서는 기관의 사업 수행이 국가 전체의 수출 또는 자원 확보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를 토대로 ‘수출파급/자원확보 효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파악하여 ‘기관경쟁력 제고효과’를 평가한다.

수익성은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과 더불어 해외사업 위험도를 평가한다. 특히,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는 사업수행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시 해당 국가 및 사업이 가지는 위험도를 평가한다.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5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5년 12월말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검토요청한 사업은 총 407개 사업이며 이 가운데 89개 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한 후 년 평균 82개 사업을 검토하여 매년 약 18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의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요청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예타 대상사업 사업 수는 매년 20여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5년에는 38건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개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IV-4〉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및 선정 현황

(단위: 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요청	선정	(%)
189	16	8.5	91	16	17.6	62	23	37.1	27	14	51.9	38	20	52.6

주: 1) 2012년 검토요청 91건 중 20건은 사업준비 부족 등에 따라 반려
 2) 2015년 상반기 규모의 적정성조사 2건은 제외

예비타당성조사 조사대상 89개 사업을 소관 공공기관별로 구분할 경우, 발전 5개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이 각각 22개, 16개로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주로 에너지사업 및 단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상대적으로 발전 5개사의 사업비중이 낮은 대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만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2개 사업씩 선정되었다. 그리고 산업단지 사업이 8건이 의뢰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표 IV-6>의 부문별 대상사업 선정 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공공기관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수)

공공기관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한국토지주택공사	-	-	2	6	8	16
한국전력 관련 *발전 5개사 별도	1	3	1	2	2	9
발전 5개사	4	8	7	1	2	22
항만공사	2	-	3	1	2	8
공항/수자원공사	1	2	5	-	-	8
한국농어촌공사	4	-	3	-	-	7
한국자산관리공사	-	1	-	1	2	4
한국지역난방공사	-	-	-	2	2	4
기 타	4	2	2	1	2	11
합계	16	16	23	14	20	89

주: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표 IV-6>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현황

(단위: 건수)

연도	발전 및 설비	자원 개발	산단	택지 개발	항만	건축	기타	총합계
2011	3		2	3	2		6	16
2012	10				1	3	2	16
2013	8		3	2	5	2	3	23
2014	4		6	2	1	1		14
2015	5	1	8	2	3		1	20
총합계	30	1	19	9	12	6	12	89

주: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표 IV-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89개 사업 중 현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50건이며 이중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이 도출된 사업은 35건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89개 예타 선정사업 중 31개 사업(타당성 미확보 15, 사업포기 16)의 사업추진을 억제, 약 17조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별히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타당성 확보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사업 50건 기준으로 볼 때 70%이며, 사업포기를 포함할 경우 5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7>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5. 12월말 기준)

연도	예타 대상		예타결과 및 진행상황							
			타당성 있음		타당성 없음		사업포기		검증중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합계	89	445,459	35	158,963	15	88,569	16	84,351	23	113,576
2011	16	52,550	11	41,496	4	9,012	1	2,042		
2012	16	99,220	5	30,997	3	36,218	8	32,006		
2013	23	164,482	11	66,711	6	40,393	5	47,590	1	9,788
2014	14	26,826	8	19,759	2	2,947	2	2,713	2	1,407
2015	20	102,381							20	102,381

주: 대상사업 선정 시기 기준

출판연도 기준으로 총 50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매년 평균 10건의 조사가 완료되어 출판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발전 및 설비 사업이 가장 많고 나머지 부문의 사업 수는 5~8건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표 V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연도별 수행 사업 수

(단위: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단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총합계
2011	2	2	1	2		5	12
2012	4		2		2		8
2013	3	2		4	1	1	11
2014	4			1	2	1	8
2015	4	3	3	1			11
계	17	7	6	8	5	7	50

- 주: 1) 2015년도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
 2) 기타부문에는 연수타운, 특구개발사업, 수자원 등을 포함
 3) 대상사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의뢰된 사업 1건은 제외

2011~2015년 동안 수행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6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 2011~2015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 건수	11	7	5	8	5	8	44
B/C≥1	건수	8	5	1	7	2	27
	비율	72.7%	71.4%	20.0%	87.5%	40.0%	50.0%

- 주: 1) 2015년도까지 조사완료된 사업 기준이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해외사업은 제외한 수치임.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4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2011~2015년 부문별·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17	7	5	8	5	8	50	
PI≥1	건수	11	1	2	4	2	1	21
	비율	64.7%	14.3%	40.0%	50.0%	40.0%	12.5%	42.0%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앞서 조사된 공공성과 수익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총 타당성 확보 비율은 약 70.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중단 또는 포기를 고려할 경우에는 타당성 확보 비율은 53%로 낮아진다.

<표 VI-11> 2011~2015년 부문별·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단위: %, 건)

연도	발전 및 설비	산업단지	택지개발	항만	건축	기타	계	
사업건수	17	7	5	8	5	8	50	
AHP ≥0.5	건수	12	5	4	5	4	5	35
	비율	70.6%	71.4%	80.0%	62.5%	80.0%	62.5%	70.0%

주: 1) 2015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시나리오 사업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값에 기준하여 작성됨.

2. 2015년도 수행 실적

2015년에 완료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11건으로 사업명과 의뢰기관은 <표 VI-12>와 같다.

<표 VI-12> 2015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연번	사업명	기관명
1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2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3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4	화양변전소 특별계획구역 부지활용사업	한국전력공사
5	인천00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6	500MW급 표준석탄화력 수명연장 및 출력증강사업	한국중부발전
7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한국지역난방공사
8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부산항 신항 서'권(2-5단계) 확장사업	부산항만공사
11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주: 2015년도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또한 2015년에는 처음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사업이 <표 VI-13>과 같이 수행되었다.

<표 VI-13> 2015년도 공공기관 사업 사업규모의 적정성 조사 현황

연번	사업명	기관명
1	SJA Jeju 국제학교 건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LX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이전	LX국토정보공사

주: 2015년도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제Ⅵ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효율화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평가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지침 및 일반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Ⅶ-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계
1999	3	1	4							3	1	4
2000	6	6	12							6	6	12
2001	6	6	12							6	6	12
2003	1		1							1		1
2004	5	4	9							5	4	9
2005												0
2006				4	17	21				4	17	21
2007		1	1	2	7	9				2	8	10
2008	4		4		11	11				4	11	15
2009		1	1	1	7	8				1	8	9

〈표 VII-1〉의 계속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계
2010				1	6	7	1		1	2	6	8
2011		4	4	2	2	4				2	6	8
2012	3	2	5		2	2				3	4	7
2013	5	4	9	3	8	11	2	1	3	10	13	23
2014				1	8	9		3	3	1	11	12
2015	2	1	3		6	6				2	7	9
소계	35	30	65	14	74	88	3	4	7	52	108	160

주: 1) 각 년도 말의 과제완료 기준임.

2)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총 4건이며, 2013년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음.

1. 지침 연구

지침 연구는 재정투자평가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사업부문별 표준지침,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지침·요령 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제 지침의 제정·개정 연구를 일컫는다.

2015년 말 현재 총 52건의 지침 연구가 수행되었고, 4건의 지침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전체 지침의 목록은 다음 <표 VII-2>~<표 VII-6>과 같다.

〈표 VII-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6판)	수행 중

<표 VIII-2>의 계속

지침	개정	개정 연도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0
	(제3판)	2001
	(제4판)	2004
	(제5판)	2008
	(제5-1판)	2013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1999
	(제2판)	2001
	(제3판)	2003
	(제4판)	2008
	(제5판)	수행중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0
	(제2판)	2001
	(제3판)	2013
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제1판)	2004
의료시설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2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3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 연구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4
	(제2판)	2012
연구개발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08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	-	2012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1판)	2009
	(제2판)	2013
산업단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5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5
조세지출 평가 방법 정립을 위한 연구		수행중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수행중

〈표 Ⅷ-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BTO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5. 12.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	2009. 6.
BTO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수행 및 우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요령	2007. 1.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0. 6.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 (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2.
	2011. 8.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3. 8.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4.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013. 2.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2007. 2.
	2007. 10.
	2008. 5.
	2009. 8.
	2010. 4.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환경사업-	2008. 6.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2007. 3.
	2010. 4.
자금제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07. 12.
	2014. 8.

〈표 VII-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지침	개정 연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2005. 5.
	2005. 8.
	2006. 9.
	2009. 3.
	2010. 1.
	2011. 4.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2007.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005. 5.
	2005. 8.
	2006. 9.
	2009. 3.
	2010. 1.
	2011. 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05. 11.
	2006. 9.
	2008. 11.
	2009. 3.
	2010. 1.
	2011.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09. 4.

〈표 VII-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지침	개정	개정 연도
(수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제1판)	2013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제1판)	2013

2. 일반 연구

지침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를 일컫는다. 2015년 말 기준 총 108건의 일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반 연구 과제 목록은 다음 <표 VII-6>~<표 VII-8>과 같다.

<표 VII-6>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1999	총괄백서: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
200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2000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
2000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00	VE 방법론 및 제도 활성화방안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되는 O-D 및 NETWORK의 분석지침 연구
2001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1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
2001	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방안 및 평가방법론 연구
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연구II
2001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II)
2004	문화·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	예비타당성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	도시철도사업 재원조달 방향 및 민자가가능성 검토
2004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III: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성과 및 향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7	국가교통DataBase(KTDB)검토 재정투자평가 연구사업
2009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연구
2011	교통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2011	시설부대경비 산정의 적정성 비교 연구
2011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재검토
2011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연구
2012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비 추정 연구
2012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2013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013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2013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2013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2015	예비타당성조사 사후 타당성 검증 연구 -도로철도부문을 중심으로-

〈표 VIII-7〉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06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연구
2006	BTL사업 평가방안
2006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2006	BTL사업 유지관리방안
2006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적격성평가의 위험반영방안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관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군주거시설 (군병영막사)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민간투자사업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연구
2006	BTL하수관거사업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2006	BTL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2006	민자사업(BTL)의 민간 Advisory 도입방안
2006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BTO 용지보상비 급증 대책에 관한연구
2006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활용 개선방안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연구
2006	BTO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공공투자관리센터데이터베이스 구축(I)연구
2007	중장기PPPs 종합계획 및 전략
2007	BTL학교복합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2007	도로·철도·항만(BTO) 표준재무모델 연구
2007	부대,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환경분야수익형 민자사업(BTO) 실시협약 표준안 연구
2007	민간투자법령정비방안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의후생효과 분석과 최적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2008	환경기초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방안 연구
2008	동남아민간투자사업 진출환경 연구
2008	도시철도분야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
2008	임대형민자사업(BTL) 성과평가 및 발전전략 연구
2008	일본과 한국의 민자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협상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연구

〈표 Ⅷ-7〉의 계속

년도	과제명
2008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8	관광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2008	민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 연구
2008	민간투자사업 제세공과금, 부대비용의 산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9	개도국인프라사업에 있어 개발원조와 PPP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9	BTL사업 표준 재무모델 연구
2009	평가관리 및 평가위원 POOL 관리방안 연구
2009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한 중국 인프라시장 진출방안 연구
2009	BTL사업시설관리 운영지침 작성요령 연구
2009	기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수요증대방안 연구
2010	BTL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등 3개 요령 개정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에 관한 연구
2010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도로민자사업의 적정통행료 수준 관리방안
20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2010	WTO GPA, FTA체결 국가별 협정 및 민간투자법과의 비교분석 연구
2011	BTL표준실시협약 해설 연구
2011	민자사업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국내기업의 해외민간투자사업 진출 방안 연구
2012	민간투자사업운영비 실태 연구: 최소운영수입보장있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2013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2013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2013	상수관망 개선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201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2013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1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표 VIII-7>의 계속

년도	과제명
2014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2014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2014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2014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2015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사업을 중심으로-
2015	BOO 사업에 대한 연구
2015	2014년 공공투자 관련 법률쟁점 연구
2015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2015	최근 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원인 및 시사점 연구
2015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 사업 비교 연구

<표 VIII-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년도	과제명
2013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2014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2014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2절 2015년도 정책연구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는 다음 <표 VII-9>와 같이 총 9건이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침연구 1건과 일반 연구 8건 등 총 9건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반 연구 총 3건이 수행되었다.

<표 VII-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구분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 예타			합 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지침	연구	소계
2015	2	1	3	-	6	6	-	-	-	2	7	9

주: 과제종료일이 2015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과제의 목록은 다음 <표 VII-10>과 같다.

<표 VII-10> 2015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연번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1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사업을 중심으로-
2	연구	BOO 사업에 대한 연구
3	연구	2014년 공공투자 관련 법률쟁점 연구
4	연구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5	연구	최근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원인 및 시사점 연구
6	연구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 사업 비교 연구
7	지침	산업단지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8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사후 타당성 검증 연구 -도로철도부문을 중심으로-
9	지침	문화관광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표준지침 연구

주: 과제기간이 2015년까지인 연구과제 목록이며, 일부 과제의 경우는 수정·보완 중에 있음.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015년 민간투자사업 교육은 주무관청과 민간기업의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및 민간투자사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되었고, 한 해 동안 603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알리기 위해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에서 2015년에 실시한 민간투자사업 교육 수행 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

〈표 VII-11〉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수행 실적

연번	교육과정명	비고
1	2015년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	기초교육
2	2015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 교육	전문교육
3	2015년 민간투자사업 민간기업 대상 교육	기초교육

2. 국제협력 업무

2015년 국제협력 및 국제교육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회의·세미나 11회, 방원회의 및 방문교육 총 11회가 아래와 같이 수행되었다. 특히 주된 성과로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샵 및 브루나이 재정투자사업평가 현지워크샵 참석을 주목할 수 있다.

〈표 Ⅷ-12〉 2015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구분	연번	사 업 명	비고
KDI 주최	1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샵 참석(8.14~16, 네피도)	국제세미나
	2	브루나이 재정투자사업평가 현지워크샵 참석(11.17~19, 반다르 스리브가완)	국제세미나
KDI 방원	1	미얀마 KSP 관련 사절단 방원 교육(1.22)	방문교육
	2	탄자니아 KSP 관련 사절단 방원 연수 (2.26~27)	방문교육
	3	몽골 국회의원 대상 PPP 연수 (3.11~12)	방문교육
	4	APEC 회원국 인프라투자 역량강화 연수(3.24, 3.27)	방문교육
	5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 대상 PPP 교육(4.6~10)	방문교육
	6	인도네시아 IIGF 사절단 PPP 교육(4.9~10)	방문교육
	7	사우디 KSP 사절단 방원(4.24)	방원회의
	8	OECD 방원(8.27)	방원회의
	9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공무원 교육(9.8~10)	방문교육
	10	베트남 2035 스터디 공유를 위한 WB 방원(10.26)	방원회의
	11	베트남 공무원 대상 PPP 역량강화 워크샵 참석(11.24)	방문교육
KDI 참석	1	제8차 OECD 연례 PPP 세미나 참석(3.23~24, 파리)	국제회의
	2	한국 세계은행 가입 60주년 기념 한국주간(Korea week) 참석 (6.2, 송도)	국제회의
	3	동경 재정포럼 참석(6.10~11, 동경)	국제회의
	4	PPP Days 참석(6.16~17, 런던)	국제회의
	5	아태지역 인프라 PPP 개발 및 금융투자 세미나 참석(8.13~14, 타이베이)	국제회의
	6	베트남 PPP 역량강화 현지워크샵 참석(8.18~19, 하노이)	국제회의
	7	G20 인프라 워크샵 참석(9.13, 안탈리아)	국제회의
	8	태국 PPP 세미나 참석(11/18~20, 방콕)	국제세미나
	9	APEC PPP 역량강화 워크샵 참석(11/30~12/4, 상하이)	국제회의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InfraInfo DB system은 민간투자사업(수익형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업)과 재정투자평가사업(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의 단계별 주요자료를 대상으로 DB구축을 하였으며,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사업계획과 사업검토 결과를 구분하여 DB구축을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후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제정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에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 방식이 도입되어 정부고시사업이 더욱 확대되었고 2014년 말까지 총 715¹⁷⁾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1999년부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받아 총 900여건의 사업을 검토를 해왔다.

이에 대한 자료가 향후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InfraInfo DB system으로 DB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DB 구축대상은 1994년부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자료이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1999년과 2002년부터 검토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의 사업계획과 검토 결과 자료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고 및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715건으로 수익형민자사업이 250건, 임대형민자사업은 465건의 추진단계별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투자평가사업은 총 1,036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744건, 타당성재조사가 292건의 사업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표 VII-13〉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구분	사업	건수	비고
민간투자사업	• 수익형민자사업	250건	추진단계별 자료 DB화
	• 임대형민자사업	465건	
재정투자평가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744건	사업계획 및 검토결과 DB화 (철회사업 포함)
	• 타당성재조사	292건	

시스템관리는 보안관리, 백업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 웹서비스 관리

17) 2014년 12월 기준 제3자 제안공고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운영기간이 완료된 사업 포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안은 웹서버 보안과 DB 암호화로 구성되어 자체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백업은 DB와 OS 환경 등을 매일 부분백업이 시행되고 일주일마다 전체백업을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DBMS(Oracle 11g)는 DB 점검 전문 업체를 통해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Ⅶ-14〉 시스템 관리내역

구분	프로그램	보유량	비고
보안	서버보안	2	웹/DB 서버 접근 통제
	DB 암호화	1	개인정보 및 보안 자료
백업	백업	1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DBMS	Oracle 11g	1	-
웹프로그램	웹 서비스	2	-

2014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사이트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받았으며, 웹소스, WAS, 서버 OS 상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표 Ⅶ-14>와 같이 2015년 하반기에 수행하였다.

〈표 Ⅶ-15〉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

구분	보안 취약점	보안 조치
Web 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Info DB system - 경로조작 및 자원삽입 - 부적절한 자원 해제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 하드코어된 비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Info DB system의 Web source를 수정
	W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MAC 평가관리시스템 SSL 적용 • 무상 Web 솔루션(Tomcat)에 대한 보안 취약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x OS 취약점 보안 - 계정관리 - 파일시스템 설정 - 네트워크 재설정 및 계정제한 - 주요 서비스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 설정파일 재설정

<간 자>

제 2 부
2015년도 사업별 요약표

<간 자>

제 1 장

2015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간 자>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1. 대구도시철도호선 국가산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4. 9.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박재민 - 외부 연구진: 김성수(서울대), 라정균(동명기술공단)
주요 논의사항	- 4량1편성 직결운영 및 신호장 계획검토 - 노면계획 및 열차의 운행계획에 따른 수요예측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	
사업규모	총연장 30.615km(단선,신설) 정거장 5개소(토공4개소,교량1개소)	총연장 30.720km(단선,신설) 정거장 5개소(토공4개소, 교량1개소) 신호장 4개소
총사업비(억원)	6,481.71	8,412.63
사업기간	2014년~2021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국고지원비율: 국고(60%) 지자체(40%)	
B/C	-	0.25
AHP	-	0.336

주: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2. 종합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홍구, 고일동, 최영은 - 외부 연구진: 최기주(아주대), 권재혁(케이탑이엔씨)
주요 논의사항	- 검단들지구,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당초 사업계획서 상 6차로로 계획되었으나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교통량을 감안하여 4차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사업규모	L=3.4km 6차로 신설	L=3.3km 4차로 신설	
총사업비(억원)	1,980	1,262	1,375
사업기간	2014-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 국비 및 지방비		
B/C		0.97	1.03
AHP			0.516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2년 말 가격기준이며, 사업계획은 2008년 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 단위는 백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4)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함.
 5) 용지보상비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금액임.
 6)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6차로 기준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4차로 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4차로 기준임.
 7) 시나리오 1: 검단들지구,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개발계획을 미반영한 시나리오임.
 시나리오 2: 검단들지구, 제3공단 및 서대구공단 개발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임.

3. 대구광역시(구미~경산)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1. 01 ~ 2015. 0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중태 - 외부 연구진: 노정현(한양대), 구본로((주)유신)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 확인 -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 검토 - 신설 및 기존 정거장의 개량 검토 - 열차 요금제 확인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기존 경부선의 구미~동대구~경산 구간	
사업규모	- 기존 경부선 L=61.85km(구미~경산구간)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 정거장 4개소 신설, 기존역 5개소 개량	
총사업비(억원)	1,171.00	1,196.60
사업기간	2014 ~ 2017(4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사업비 70%, 지방비: 사업비 30%	
B/C		1.00
AHP		0.517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2년 말 가격기준임.

4.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 1 ~ 2015. 8.3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조혜정 - 외부 연구진: 김익기(한양대), 김철주(태조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월곶~판교 등 주변 계획노선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 주변 노선의 개통시기, 열차운행계획, 표정속도 등을 고려한 분석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¹⁾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안		대안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시(성남~여주선 여주역) ~ 강원도 원주시(중앙선 남원주역) ²⁾				
사업규모	20.9km 단선전철 건설	L=21.8km 단선전철 건설		L=20.9km 단선전철 건설	
총사업비(억원)	5,515	S1	5,236.78	S1	5,001.36
		S2	5,628.22	S2	5,391.94
사업기간	2014 ~ 2021년(8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재원분담	전액국고				
B/C	-	S1	1.00	S1	1.04
		S2	0.82	S2	0.85
AHP	-	-		S1	0.584
				S2	0.472

- 주: 1) 국토교통부는 MOSF 3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단선용지 단선전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국토교통부 시행 철도건설과-1969(2015. 7. 8.))하였으며, 본 사업계획안은 변경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됨.
 2)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중점을 남원주 정거장으로 변경하여 검토함(국토교통부, “여주~원주 예타 KDI 답변자료(2차)”, 2014.5).
 3)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4)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2년 말 가격기준임.
 5) ‘기본안’은 서원주 정거장 시점부의 섬강을 복선교량으로 횡단하여 접속하는 안임.
 6) ‘대안’은 섬강교 시점 전방에서 중앙선에 접속시켜 기존 교량을 활용하여 접속하는 사업비 절감 안임.
 7) 시나리오1(S1): 월곶~판교선 전제, 시나리오2(S2): 월곶~판교선 미전제임.

5.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성철식,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손영태(명지대), 김성호(동성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송도국제배후도시 매립여부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연약지반 처리비용 적용 검토 - 송도JCT 등 해상교량 사업비 적정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사업규모	노선연장 : 15.2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억원)	16,973.00	16,921.10
사업기간	2015~2028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고 : 공사비 25%, 용지비(부대비) 100% 도로공사 : 공사비 38% 인천시 : 공사비 37%	
B/C	-	0.78
AHP	-	0.412

주: 분석은 2012년도 말 기준임.

6. 충청권철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6. 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나정현 - 외부 연구진: 이성모(서울대), 한종수(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반영 여부 검토 - 운영주체 및 운영비 산정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당초	변경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계룡(충청남도 계룡시) ~ 신탄진(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사업규모	- 연장 35.22km 조차장~신탄진 (9.84km) 2복선화	- 연장 35.22km 조차장 ~ 회덕 (4.25km) 2복선화 회덕~신탄진(5.59 km) 단선 추가	- 연장 35.22km 조차장 ~ 회덕 (4.25km) 2복선화 회덕~신탄진(5.59 km) 단선 추가	- 연장 35.22km 조차장 ~ 회덕 (4.25km) 2복선화 회덕~신탄진(5.59 km) 단선 추가
	- 정거장: 기존 6개소, 신설 5개소 (덕암역 포함)	- 정거장: 기존 6개소, 신설 4개소 (덕암역 제외)	- 정거장: 기존 6개소, 신설 4개소 (덕암역 제외)	- 정거장: 기존 6개소, 신설 5개소 (덕암역 포함)
총사업비(억원)	2,527.00	-	2,064.37	2,107.03
사업기간	2015~2019년(5년간)		2015~2021년 (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대전광역시) / 국 고: 사업비 70%, 차량구입비 50%, 지자체: 사업비 30%, 차량구입비 50%			
B/C	-	-	시나리오 1: 0.56 시나리오 2: 0.94	시나리오 1: 0.58 시나리오 2: 0.95
AHP	-	-	-	시나리오 1: 0.373 시나리오 2: 0.513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7. 성남~장호원 6 국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1. 02 ~ 2015. 10.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승현, 이세환 - 외부 연구진: 정성봉(과기대), 김석희(진우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사업관련 기존조사수행결과(도서) 적절한 활용의 필요성 - 교차로 설치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비용추정 및 교통수요추정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안	대안
사업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장호원 풍계리		
사업규모	- 연장: 15.2km - IC설치 1개소 - 교량: 31개소(1,925m), 입체교차로 6개소	- 연장: 15.2km - IC설치 1개소 - 교량: 27개소(1,640m), 교차로 6개소	- 연장: 15.2km - IC설치 1개소 - 교량: 23개소(1,015m), 교차로 4개소
총사업비(억원)	3,762	3,684.28	3,216.36
사업기간	2014년~2021년 (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전액 국고		
B/C		0.42	0.48
AHP			0.359

주: 총사업비는 2012년 말 기준이며 매물비용(실시설계비) 포함 금액임.

8. 평택·당진항 서부두 잡화부두(2선석) 축조공사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1. ~ 2015. 1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손경원 - 외부 연구진: 한상용(동서대), 정성식 (주대양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3선석) 확대변경(컨테이너부두 3선석 → 컨테이너부두 1선석, 잡화부두 2선석)을 감안한 시나리오 분석 - GS EPS 발전소 신규 건립에 따른 신규 물동량 추정결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해역 일원		
사업규모	3만톤급 2선석(480m)		
총 사 업 비	공사비	1,079.50	1,186.28
	부대비	86.75	98.43
	보상비	-	-
	예비비	116.62	128.47
	합계	1,282.87	1,413.18
사업기간	2015~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B/C	1.33	0.76	
AHP	-	0.393	

주: 총사업비의 기준연도는 2013년 말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9.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05. 28 ~ 2015.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김중태 - 외부 연구진: 고용기(영남대), 조문호((주)헤인이엔씨)
주요 논의사항	- 준설토 발생량 추정 -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비용 추정 - 분리호안 설치 여부에 따른 대안 설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384번지 북측해상		
사업규모	외곽호안 6,282m, 분리호안 1,827m	외곽호안 6,282m, 분리호안 1,827m	외곽호안 6,282m
총사업비(억원)	3,751.26	3,750.08	2,910.72
사업기간	2016 ~ 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100%		
B/C	-	1.74	2.25
AHP	-	-	0.649

주: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4년 말 가격기준임.

10. 서계동 복합 문화관광시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조혜정 - 외부 연구진: 이현(알투코리아), 한중철(간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유사시설 검토 및 수요추정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 검토 - 비용추정: 설계기준의 적정성 및 필요시설 구성 검토, 적정 공사비 단가 적용 필요 -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비용 및 편익의 적정범위 설정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청과 1동) 1번지	
사업규모	부지: 7,488.63㎡, 건축면적: 4,057.00㎡, 건축연면적: 43,446.59㎡ (공연장 및 공연장 부속시설:17,185.21㎡ / 공공 복합 업무시설:26,261.38㎡)	
총사업비(억원)	1,745	1,808
사업기간	2015~2018년(4년)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재원조달	국고(관광진흥개발기금): 509억원(부지) 민자: 1,236억원(건축비)	
B/C	0.6	1.03
AHP	-	0.528

주: 분석 기준연도는 2013년 말임.

11.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8.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서중해, 민경희, 이인정 - 외부 연구진: 송준혁(한국외대), 이관표(업이건축)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유사시설 검토 및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추정 - 비용추정: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비, 장비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성과 확산사업비, 운영비 등 검토 - 경제성 분석: 편익 및 비용 추정 후 각 안의 경제성 분석결과 제시 및 비교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산업단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52,139㎡ 건축면적 25,710㎡	부지면적 52,139㎡ 건축면적 25,710㎡	부지면적 52,139㎡ 건축면적 23,177㎡
총사업비(백만원)	132,100	103,327	101,288
사업기간	2015~2019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B/C		0.93	0.94
AHP			0.501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2. 중부권 광역 우편집중국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1. 31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박보영 - 외부 연구진: 박민영(인하대), 은동신(이가건축)
주요 논의사항	- 비용추정: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물류처리기 비용 산정의 적정성 - 수요추정: 우정사업본부 목표 점유율에 따른 물류 수요 및 물류 시스템 변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비용 및 편익의 적정범위 설정 필요 - 정책성 분석: 국고지원의 적합성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남대전물류유통단지 A3-1	
사업규모	대지면적 66,120㎡ 건축면적 21,510㎡	대지면적 66,120㎡ 건축면적 21,510㎡
총사업비(억원)	126,177 (87,685)	105,986 (83,637)
사업기간	2014-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국고100%(우정사업특별회계)	
B/C		2.04
AHP		0.665

주: 1) 괄호안은 사업계획서 요구안의 용지보상비는 주변 보상자료를 활용하여 토지매입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매입가 산정 시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임. 또한 기매입부지로서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제외됨. 검토안에서는 현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정함.

13. 국가재정관리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7. 13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조숙진 - 외부 연구진: 정재동(한국정보화진흥원), 임성목(동국대)
주요 논의사항	- 비용추정: 사업의 목표 및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기능에 대한 정의 부재 - 편익추정: 보조금통합관리 및 재정정보생성 등에 대한 계획 부재로 편익 범위 설정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규모	차세대 국가재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기준정보 표준화 및 재정통합 연계 구축 - 재정 선순환체계 실현을 위한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 재정건전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 개방형IT 인프라 체계 구축	
총사업비(억원)	978.93	1,180.51
사업기간	2015~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기획재정부 / 국고100%	
B/C	2.97	1.01
AHP		0.560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3)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4) 사업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안임.(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240(2015.04.13.))

14. 의료기술훈련원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6. 30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정옥, 위서연 - 외부 연구진: 홍석철(서강대), 조주현(해안건축)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실시와 훈련의 수요·편의 추정, 규모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추정: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 검토 -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의 비용 및 편익의 적정범위 설정 필요, 사업지역의 적절성 검토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최초 사업계획	최종 변경안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1112, 1112-1, 1112-2 일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사업규모	28,770m ² 지상8층, 지하2층	26,274m ² 지상6층, 지하1층	26,274m ² 지상6층, 지하1층
총사업비(억원)	2,000	969	988
사업기간	2015년~2019년 (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참여) / 국고 87.8% 지자체 12.2%		
B/C	-	0.96	1.00
AHP	-	-	0.503

주: 1) 조사기간 중 사업계획이 두 차례 변경됨.

2) 최초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총사업비 2,000억원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운영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예타 검토과정에서 제외됨.

15.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12. 31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융,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이주석(호서대), 성기택(디자인문박디애펜피)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 전시 콘텐츠 및 운영계획 구체성 검토 - 비용추정: 사업계획 변경(2차례)에 따른 비용 검토,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비용 추정 - 수요 및 편익추정: 중력모형을 적용한 전시체험시설의 수요 추정, CVM을 통한 편익 산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구)농촌진흥청 본청 인근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000m ² · 연면적: 18,000m ²	
총사업비(억원)	1,772.58	1,861.38
사업기간	2016-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농림수산식품부(수원시: 용지비 부담 / 이외 국고지원)	
B/C	-	0.97
AHP	-	0.515

16.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01. 20 ~ 2015. 09.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조숙진, 김유정 - 외부 연구진: 이현석(건국대), 원종호(정립건축)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오피스 수요 및 수익 산정을 위한 공실률, 렌트프리, 공급물량 등 추정 필요 -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영 필요 - 수익성 분석: 사업의 주요 목적이 수익 창출이므로 수익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사업규모	지하3층, 지상22층 연면적 67,698.45㎡	
총사업비(억원)	1,707.90	1,811.95 (2,570.92)
사업기간	2016~2019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국고지원 비율: 100%(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B/C	2.97	1.19
AHP		0.523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3) 총사업비는 용지보상비(사업부지는 우정사업본부 소유로 국공유지임.)와 용지보상비에 대한 예비비가 제외된 금액임.
 4) 괄호안의 총사업비는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부대비, 부가세, 용지보상비의 합계에 10%를 적용한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임.

17.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01. 20 ~ 2015. 11.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김희영 - 외부 연구진: 임성목(동국대), 김상욱(충북대), 성기택(문박디엠피)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의 미비 및 제3센터에서 관리할 시스템의 범위가 명확치 않음. -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대안 설정 - 클라우드화 도입, 제3센터 입주 관련 쟁점 및 이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¹⁾²⁾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일대		
사업규모	○ 대지면적: 81,456㎡ ○ 건물규모: 37,710㎡ - 전산동: 지하 3층, 연면적 24,295㎡ - 행정동: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3,415㎡	○ 대지면적: 81,456㎡ ○ 건물규모: 33,515㎡ - 전산동: 지하 3층, 연면적 22,391㎡ - 행정동: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124㎡	
총사업비(억원)	431,970 ³⁾	476,769	460,862
사업기간	2016~2018년(3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자치부 / 국고 100% ⁴⁾		
B/C	2.44	시나리오 1: 0.82 시나리오 2: 1.11	시나리오 1: 0.84 시나리오 2: 1.13
AHP	-	-	시나리오 1: 0.388 시나리오 2: 0.508

- 주: 1) 건축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으로 설정함.
 - 대안 1: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시설규모로 산정(37,710㎡)
 - 대안 2: 유사사례의 전산기계설 대비 비율과 2014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참조하여 전산동 및 행정동 관련 시설규모 조정(37,710㎡→33,515㎡)
- 2) 편익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로 설정함.
 - 시나리오 1: 현재의 상태에서 전산자원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안개선효과 반영
 - 시나리오 2: 향후 정부의 클라우드 및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모든 장비에 대해 클라우드화가 진행되고, 기관의 전산장비를 ‘모두’ 제3센터에 이관하여 효율적 정보이용체계가 구축될 경우
- 3) 당초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총사업비 3,959.03억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따라서 연구진이 재산정한 결과, 총사업비는 4,31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4) 국고 100%로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 기반시설(전력, 통신 등) 인입비는 지자체 부담임.

18.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1. 01 ~ 2015. 02. 28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종연, 김선경 - 외부 연구진: 신영철(대진대), 황현명(투에이치엠)
주요 논의사항	- 수요추정: 개별박물관과 박물관단지의 수요 및 편익 추정 방법론 검토 - 비용추정: 개별박물관과 박물관단지의 적정 시설규모 검토 및 적정 공사비 단가 적용 필요 - 경제성 분석: 개별박물관과 박물관단지의 경제성 분석 필요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용지(S-1, 2, 3) 내 위치	
사업기간		- 2014년 : 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공모 및 수립 - 2014~16년 : 개별 박물관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 2015~17년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7~20년 : 준공 - 2018~21년 : 시험운영 및 개관	
사업규모		개별 박물관(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 문화유산영상관 등), 통합운영시설(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 등)	
총 사 업 비	공사비	387,969	302,846
	용지보상비	52,555	53,309
	부대비	31,235	33,608
	기타 부대비	440	440
	유물구입비 ⁴⁾	23,600	23,600
	예비비	6,762	41,378
	합 계	506,198	455,181
경제성 분석		-	0.97
AHP		-	0.517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B/C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함.
 3)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3,820억원)와 추가 요구 사업비(1,242억원, 전시공사비·유물구입비 등 누락비용)가 포함된 금액임.

19.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4.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수일, 이호준, 김탁경, 조숙진, 김유정, 김정아 - 외부 연구진: 정영환(홍익대), 김성수(한국산업기술대), 김진호(가천대) 이창호(전기연구원)
주요 논의사항	- 비용추정: 단위기술식별후 단위기술의 조합을 통해 비용 추정 - 편익추정: 확산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편익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단위 설정 필요(권소사업 vs. 단위사업 vs. 사업군)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군 1	사업군 2	사업군 3	사업군 4	사업군 5	사업군 6
사업규모 및 위치	총 8개 권소사업의 민간사업자와 전국에 걸친 사업 대상지역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						
총사업비(억원)	5,180.35	681.02	1,039.95	433.39	399.21	2,248.90	279.44
사업기간	2016~2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주체: 국가, 8개 권소사업(민간사업자, 지자체로 구성)/ (조사안 기준) 국비 1,233.47억원, 지방비 336.07억원, 민간 3,512.36억원						
B/C		0.55	1.05	0.77	0.28	0.89	0.37
AHP		0.398	0.600	0.504	0.351	0.507	0.360

-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3년 말 가격기준임.
 3) 사업규모를 반영하여 용지점유면적을 산출하고 대상 지역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용지비를 산출함.
 4) 사업군 1: ESS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사업
 사업군 2: EMS 및 EE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사업
 사업군 3: AMI기반 전력재판매 사업
 사업군 4: 전기차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가상발전소 운영시스템사업
 사업군 5: 신재생 분산형전원사업
 사업군 6: 신재생출력 안정화 ESS사업
 7) 8개 권소사업: 한전, SKT, KT, 현대중공업, 포스코CT, LS산전, 현대오트에버, 집코
 8) 사업계획서상의 재원조달금액은 국비 1,411억원, 지방비 389억원, 민간 3,380억원임.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 추진경위

사 유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2항 6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재해예방·복구 지원)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5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중태 - 외부 연구진: 배영상(동부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옥회천 80년 빈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옥회천 확장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침수 발생 여부 - 옥회천 평상 시 및 홍수 시 관리운영방안 수립 여부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군산시 경포천 분기점~미제천 합류점	
사업규모	옥회천 정비 6.22km (하폭 4~27m→40~60m) 하도정비 6.22km, 제방축조 12.70km	
총사업비(억원)	1,188.17	1,156.92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군산시/ 국가 50%, 군산시 50%	
B/C		-

주: 분석은 2013년도 말 기준임.

2.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5.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박재민 - 외부 연구진: 황인섭(데코컨설팅(주))
주요 논의사항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된 사업임. - 특수공법에 대한 시공성에 대한 의문사항 존재 - 터키공법으로 발주할 경우 대기업 참여시 특수공법 이외 공법으로 시공 가능므로 특수공법 명칭을 기술하지 않기로 기재부와 협의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부산항 신항 1, 2단계 구역 및 항로 일원		
사업규모	토석제거 2,046천m ³		
총사업비(억원)	4,694	4,861	3,456
사업기간	2015년~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 / 국고 100%		
B/C	-	-	-
AHP	-	-	-

주: 분석은 2013년도 말 기준임.

3. 불갑저수지 치수능력증대사업

1) 추진경위

사 유	- ‘재해예방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용, 채수복 - 외부 연구진: 정순찬(동부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홍수발생량 대비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 안
사업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일원		
사업규모(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5m×L34m×2개소 • B8m×L34m×2개소 • B10m×L20m×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5m×L34m×1개소 • B8m×L34m×2개소 • B10m×L20m×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8m×L34m×1개소
총사업비(억원)	742.50	648.61	523.42
사업기간	2016~2020년		
사업주체/재원조달	농림축산식품부 / 전액국고		
B/C	-	-	-

주: 1) 분석은 2013년도 말 기준임.
 2) 검토안은 사업계획을 준용한 안임.
 3) 대안은 보조여수소가 마을을 관통하는 방안임.

4.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의뢰됨.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10. 18 ~ 2015. 01. 31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이경배 - 외부 연구진: 은동신(이가건축)
주요 논의사항	- 국고지원 적정성 검토 범위 -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방안 - 적정 비용 추정 방안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4	대안5	대안6	대안7
사업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일원								
사업규모	-5만석	-5만석	-5만석	-5만석	-5만석	-4만석	-4만석	-4만석	-4만석
	-연면적: 36,420㎡	-연면적: 36,420㎡	-연면적: 36,420㎡	-연면적: 36,420㎡	-연면적: 27,160㎡	-연면적: 32,646㎡	-연면적: 32,646㎡	-연면적: 32,646㎡	-연면적: 23,386㎡
총사업비 (억원)	-부지면적: 326,120㎡	-부지: 326,120㎡	-부지: 326,120㎡	-부지: 326,120㎡	-부지: 149,176㎡	-부지: 326,120㎡	-부지: 326,120㎡	-부지: 326,120㎡	-부지: 149,176㎡
				-문화지원 시설 구역은 유보지, 국공유지 활용	-부지 내 사유지 제외		-문화지원 시설 구역 중 일부를 활용	-문화지원 시설 구역은 유보지, 국공유지 활용	-부지 내 사유지 제외
사업기간	2014-2017년(4년간)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는 2012년 12월 가격기준 금액임.

5. 복합민원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유시설의 신·증축 사업"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기술성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1. 01 ~ 2015. 11. 30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성기택(문박디애펜피)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의 목적 및 기능의 적정성 - 운영계획 측면에서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장 규모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266㎡ · 연면적 131,901㎡	· 부지면적 52,266㎡ · 연면적 131,901㎡	· 부지면적 52,266㎡ · 연면적 114,132㎡	· 부지면적 52,266㎡ · 연면적 52,387㎡
총사업비(억원) (용지비 제외)	3,519.83	3,911.17 (3,516.49)	3,412.17 (3,017.48)	1,780.69 (1,608.88)
사업기간	2014~2018년(5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고 100%)			

- 주: 1)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추정결과임. 향후 사업을 분할하여 추진할 경우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는 변동될 수 있음.
- 2) 검토안은 주무부처 사업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추정 결과이며, 대안 1은 청사수급관리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정된 규모(연구진 주차수요 추정 결과를 반영)와 이에 대한 총사업비 추정결과임. 대안 2는 대안 1의 시설규모에서 '체육시설+동호회실'의 면적만 적용한 규모임.

6. 제주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1. 13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하성준 - 외부 연구진: 양세종(태성종합기술)
주요 논의사항	- 인구예측 및 시설의 적정규모 검토 - 주민편의시설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 매립시설 반입폐기물 대상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1	대안2	대안3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매립연한 및 채취토공량	38년 (허가량)	77년 (허가량)	77년 (실제채취량)	38년 (허가량)	38년 (실제채취량)
총사업비(억원)	1,163.20	983.70	1,029.41	630.50	659.73
사업기간	2015년 ~ 2017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제주특별자치도 / 국고 30%, 지방비 70%				

7.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조사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5. 14 ~ 2015. 01. 13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탁경, 추정수 - 외부 연구진: 이강원(선진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집적화의 적절성 및 기술적 적정성 - 공통시설 등 기타시설 규모의 적정성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사업규모	500톤/일	500톤/일
총사업비(억원)	1,671.8	1,599.46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제주특별자치도 / 국고 50%, 지방비 50%	

8. 경제협력권 산업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본 사업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되나, 적정 사업규모 및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17 ~ 2015. 09. 30
연구진	- KDI 연구진: 조숙진,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이석준(건국대), 권수태(전주대), 정성훈(강원대)
주요 논의사항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 분석 시점 등 -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예산 배정원칙, 절차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취지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내용	-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4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 산업을 선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6개 경제협력권을 구성 - 경제협력권내 주관기업 및 기관에게 과제를 공모, 선정된 과제를 지원					
사업 규모 및 총사 업비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R & D	비즈니스 협력형	10,476	7,857	-	2,619
		지역협력형	3,680	2,760	-	920
		지역주도형	3,357	-	2,518	839
		비R&D	10,124	3,893	3,700	2,531
	총계	27,637	2,760	2,518	6,909	
사업기간	2015~2020년(6년간)					

9.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해당 - 기념관 규모 등에 대한 규모적정성 검토 수행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17 ~ 2015. 09. 30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여흥구, 이현정 - 외부 연구진: 정동훈(비콘힐)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기준 및 방법론 - 치유시설 대상자의 수요 및 관광 수요 등 분석 - 대지면적 및 용지보상비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안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조계사 일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사업규모	부지	4,500m ²	4,500m ²	4,500m ²	4,500m ²
	시설	21,518m ²	21,518m ²	18,633m ²	11,475m ²
총사업비(억원) (용지비 포함)	1,678 (1,687)	1,727 (1,735)	1,662 (1,670)	1,422 (1,430)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무총리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재)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민간자본보조				

주: 1) ()안의 사업비는 국공유지 포함한 금액임.

제2절 타당성재조사

< 타당성재조사 >

1.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5. 2.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정진혁(연세대), 정훈(우성디앤씨)
주요 논의사항	- 변경된 주변 여건 및 JCT 형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원인 검토 - 장래 도로망(식만~사상, 삼락동~아시아드) 계획에 대한 덕천동~아시아드 사업과의 일관성 확보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최초(실시설계)	변경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동김해 지하차도 ~ 부산광역시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식만JCT			
사업규모	본선 1.3km 연결로 2.5km	본선 1.3km 연결로 3.3km	본선 1.3km 연결로 2.5km	본선 1.3km 연결로 3.3km
총사업비(억원)	730.47 (770.59)*	879.75 (925.22)*	892.46	814.93
사업기간	2009~2016년(8년간)	2009~2020년(12년간)	2009 ~ 2020년(12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김해시, 부산광역시 / 국고 50%, 지자체 50%			
B/C	-	-	시나리오 1: 1.49 시나리오 2: 1.35	시나리오 1: 1.66 시나리오 2: 1.47
AHP	-	-	-	시나리오 1: 0.627 시나리오 2: 0.611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2.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종연, 정동호 - 외부 연구진: 유승훈(서울과기대), 성기택(DMP건축)
주요 논의사항	- 국립항공박물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 시설구성 및 면적 - 구체적인 운영 계획의 내용 - 국민들의 본 시설에 대한 지불의사액 수준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수요 추정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최초	최종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배후지원단지 내		
사업규모	대지면적: 33,000㎡ 건축연면적: 25,000㎡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5,000㎡ 건축연면적: 17,938㎡(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억원)	1,286.37	930.73	933.57
사업기간	2014~2017년 (4년간)	2015~2018년 (4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1.00
AHP	-	-	0.505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3. 아트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4. ~ 2015. 10.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용관, 박지영 - 외부 연구진: 조승국(한세대), 양승일(이가)
주요 논의사항	- 세종시 출범 등 여건 변화 검토 - 추가 부지 수용 여부, 설계 디자인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 - 적합한 CVM 모형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당초	변경	
사업위치	세종시 나성동 문2-1블록 일원(2-4생활권)			
사업규모	대지면적 35,780㎡ 연면적 14,630㎡ 대공연장 700석 소공연장 300석	대지면적 43,493㎡ 연면적 26,523㎡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	대지면적 35,780㎡ 연면적 20,173㎡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대지면적 35,780㎡ 연면적 20,173㎡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총사업비(억원)	857.32	1,596.81	1,144.69	1,198.84
사업기간	2012~2016년(5년간)	2012~2018년 (7년간)		2012~2018년(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고 100%			
B/C	-	-	-	0.76
AHP	-	-	-	0.391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4.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5. ~ 2015.1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김희영 - 외부 연구진: 김상구(전남대), 설영만(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용지보상비 산정 방안 · 본 사업의 특성상 지하구간을 통과하는 터널 구간은 지하보상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용지보상비를 산정 - 2차로 선형개량 사업의 자유속도 설정 -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반영 여부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 광적면 광석리(대성빌라사거리)	
사업규모	연장 18.46km (4차로: 12.95km, 2차로: 5.51km)	
총사업비(억원)	1,963.85	1,886.40 (1,889.40)
사업기간	2014~2021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 100%	
B/C	-	0.69
AHP	-	0.356

주: 괄호 안은 기 투입비용 포함 금액임.

5. 국도28호선(우보~고노) 개량사업 타당성제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5. 1.
연구진	- KDI 연구진: 양인석, 김중태 - 외부 연구진: 이동민(서울시립대), 이희건((주)에스티이앤씨)
주요 논의사항	- 기존도로 현행속도 설정 - 자유통행속도 조사 -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제조사
사업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 우보면 선곡리		
사업규모	10.40km (2차로 시설개량)	14.92km (2차로 시설개량)	14.92km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억원)	551.46	776.03 (792.67)	743.91 (760.55)
사업기간	2013~2017년 (5년간)	2012~2017년 (6년간)	2014~2019년 (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 100%		
B/C	-	-	0.15
AHP	-	-	0.422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6. 국도2, 77호선(신장~복용)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5. 2.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박보영 - 외부 연구진: 정성봉(과기대), 서금열(다산건설턴트)
주요 논의사항	- 신안조선타운 개발계획 미반영에 따른 교통수요 재산정 · 사업노선 주변지역 개발계획 재검토 -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사전용역 적정성(총사업비, 규모 등 근거 미제시)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전남 신안 압해 신장리 ~ 압해 복용리		
사업규모	L=10.6km (개량확장4차로) B=19.5m	L=10.6km L=6.0km(4차로 전제 2차로) L=4.6km(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억원)	928.81	745.47	668.68
사업기간	2011~2016년 (6년간)	2015~2021년 (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	0.33
AHP	-	-	0.455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7. 국도19호선(장수변암우회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제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예타조사없이 국회 예산반영)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4. 1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재영, 박재민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 이진홍((주)대한건설ENG)
주요 논의사항	- 관광수요의 검토 및 VDF 함수의 적용 - 설계기준의 적정성 및 필요시설 구성 검토, 적정 공사비 단가 적용 필요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제조사
사업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사업규모	L=8.53km(차로수: 2차로) 교량 6개소, 터널 1개소, 교차로 4개소	
총사업비(억원)	1,123.80	1,351.46
사업기간	2014~2021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	0.40
AHP	-	0.427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8.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제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5.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정우현, 박용덕 - 외부 연구진: 손의영(서울시립대), 구본로(유신)
주요 논의사항	- 선로를 공유하는 신안산선이 민자 적격성검토 완료 후 최종 노선을 반영하여 분석 - 신규 KTDB 배포에 따라 신규자료로 재분석 - 일반철도로 건설되는 사업이지만 기능이나 수송수요 측면에서 광역철도의 성격이 강하여 운영비를 광역및도시철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제조사
사업위치	월곶역(수인선) ~ 시흥시청(소사~원시선, 신안산선) ~ 광명역(KTX, 신안산선) ~ 안양역(경부선) ~ 인덕원역(안산선) ~ 판교역(신분당선, 성남~여주선)	
사업규모	L=38.6km, 정차역 9개소	L=39.4km, 정차역 9개소
총사업비(억원)	23,178	21,122
사업기간	2015~2023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B/C	0.89/1.04	0.98
AHP	0.457/0.535	0.521

주: * 팔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9. 국지도82호선(갈천~가수)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7. ~ 2015. 5.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정권, 조민혜 - 외부 연구진: 이성모(서울대), 이진홍((주)대한건설이엔지)
주요 논의사항	- 유료도로 가중치 반영 방법 - 개발계획(택지, 산단-오산세교2지구) 수정 반영 - 장래 중간 분석년도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계획노선을 포함한 Network 반영 - 시점부, 접속부, 교량 설계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경기도 화성시 동오리~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사업규모	7.36km (2→4차로 확장)	8.4km - 기존: 5.2km, 신규: 3.2km, 제외: 2.16km (2→4차로 확장)	
총사업비(억원)	880.13	1,860.04	1,723.14
사업기간	2013~2020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 국고(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70%), 도비(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30%, 용지비 100%)		
B/C	1.80	-	1.15
AHP	-	-	0.556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0.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4호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8.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박용덕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 김석희(진우)
주요 논의사항	- 2013년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수행 - 경기도청 요청에 따라 2개 대안 추가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신산리			
사업규모	연장 L=4.53km(4차로) 교량: 3개소/175m, 터널: 1개소/335m 출입시설: 4개소(입체 1, 평면 3)			
총사업비(억원)	852.76	893.05	740.33	665.83
사업기간	2015 ~ 2020년(6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경기도 / 국고(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70%), 도비(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30%, 용지비 100%)			
B/C	0.89/1.04	0.76	0.86	0.85
AHP	0.457/0.535	-	0.426	-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기 투입비용 포함금액임

11.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1호 (총사업비 예타 대상규모 증가)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양봄이 - 외부 연구진: 엄영숙(전북대), 황현명(투에이치엠)
주요 논의사항	-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후 타당성재조사 수행 - 용지보상비 및 건물가격의 경제성 분석 반영 방법 검토 - 미술관 방문경험자의 WTP 적용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1 및 188-4 (청주 구 연초제조창 일대)		
사업규모	19,800m ²	19,856m ²	19,855.70m ²
총사업비(억원)	397.75	602.34	628.21
사업기간	2012 ~ 2015년(4년간)	2015 ~ 2017년(3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 국고 100%		
B/C	-	-	1.63
AHP	-	-	0.6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2.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 부문)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2. ~ 2016. 1.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희영, 이경희 - 외부 연구진: 조중래(명지대), 권재혁((주)케이탑이엔씨)
주요 논의사항	- 주요 개발계획의 반영 ·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정지구, 덕포지구, 조선평구 등의 현재 추진현황을 파악한 후 실현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하여 본 분석에 반영 - 도로의 등급에 따른 기하구조 설정 - 교량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2
사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사업규모	연장 18.27km (4차로: 10.84km, 2차로: 7.43km)	연장 18.46km (4차로: 12.95km, 2차로: 5.51km)		
총사업비(억원)	1,308.80 (1,624.07)*	2,075.45	2,028.65	1,977.01
사업기간	2009~2019년 (11년간)	2016~2022년 (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도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 100%			
B/C	1.08	-	1.02	1.05
AHP	-	-	-	0.575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 대덕담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8.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중태 - 외부 연구진: 임경재(강원대), 최병규(이산)
주요 논의사항	-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지역의견 수렴 관련 추진상황 확인 -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결과 확인 - 홍수량 산정 및 퇴사량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사업규모	유역면적: 98km ² 댐규모: 총저수용량 15.8백만m ³ , H 38m × L 180.0m	유역면적: 98km ² 댐규모: 총저수용량 16.0백만m ³ , H 35.3m × L 177.0m
총사업비(억원)	821.87	1,130.19
사업기간	2013 ~ 2018년(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김천시 / 국고 90%, 지자체 1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2.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5 ~ 2015. 5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백승한 - 외부 연구진: 한중수(삼보기술단)
주요 논의사항	- 요구안의 평면선형 계획, 노선 계획, 배선 계획, 인천대교 접속교 하부 통과구간 관련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 - 당초 연장사업, 인근 지역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유사 사례 공사비 단가, 변경된 기본계획 총사업비와의 비교·검토 등 추가 검토를 수행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규모	0.824km (정거장 1개소)		
총사업비(억원)	1,299.85	1,649.00	1,623.73
사업기간	2002 ~ 2018년 (17년간) ¹⁾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 국고 60%, 지방비 4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2013. 12)상 제시되어 있는 당초 연장사업(캠퍼스타운역~국제업무지구역)과 금번 추가 연장사업(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의 전체 사업기간임.

3. 국도21호선(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8. ~ 2015. 9.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정세나 - 외부 연구진: 유정훈(아주대), 박동교(다린이앤씨)
주요 논의사항	-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 시 제2서해안 고속도로(평택~부여) 요금 설정에 대한 검토 -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신규 KTDB 적용하여 재분석 - 국도21호선은 국가 자전거도로망 계획 및 주변 자전거도로 현황을 토대로 자전거도로 설치유무 검토 - 국도29호선에 대한 적정 비용 추정을 위하여 설계속도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사업위치	국도21호선: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 마서면 송내리 국도29호선: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 화양면 옥포리		
사업규모	총연장 : 8.05km (2→4차로 확장, 교량 4개소)	8.05km (2→4차로 확장)	2.74km (2→4차로 확장) 5.31km (선형개량)
총사업비(억원)	960.36 (1,014.39)*	1,006.18	775.26
사업기간	2013~2020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4.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나정현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사업범위의 명확화 - 종합수장고 개념 정립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2-2번지 일대 (경주박물관 내 증축)		
사업규모	부지면적 61,896㎡ 건축연면적 10,893㎡	부지면적 61,896㎡ 건축연면적 10,930㎡	부지면적 61,896㎡ 건축연면적 9,183㎡
총사업비(억원)	232.56	410.29	334.62
사업기간	2013~2015년 (3년간)	2013~2017년 (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5.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0. ~ 2015. 9.
연구진	- KDI 연구진: 김세용, 양봄이 - 외부 연구진: 김우수(경상대), 정성식(대양ENG)
주요 논의사항	- 부유사 확산피해에 대한 조사 자료의 신뢰성 검토 -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 보상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나리오1	시나리오2-①	시나리오2-②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일원				
사업규모	외곽시설: 1,465.8m, 접안시설: 270m				
총사업비(억원)	1,128.70	1,570.38	1,495.39	1,377.20	1,226.99
사업기간	2011~2015년 (5년간)	2010~2016년 (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제주도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6. 대구 교도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6. 1.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김형석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사업부지 외 분묘·지장물 보상비의 적정성 검토 - 주민개방시설의 적정성 검토 - 공장동(작업동) 및 비상대기소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833번지 일원				
사업규모 (시설면적)	66,029.01㎡	66,100.98㎡	66,100.98㎡	62,769.43㎡	60,760.41㎡
총사업비(억원)	1,445.21	1,880.52	1,844.57	1,933.82	1,885.53
사업기간	2009~2016년 (8년간)	2009~2019년(11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법무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7. 속초 교도소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6. 1.
연구진	- KDI 연구진: 한금용, 김형석 - 외부 연구진: 박영배(그림건축)
주요 논의사항	- 진입교량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장례식장 부지의 추가 매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비상대기소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표준품셈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반영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사업위치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33 일원				
사업규모 (시설면적)	19,831.90㎡	19,975.64㎡	19,975.64㎡	19,491.84㎡	19,458.84㎡
총사업비(억원)	384.10	807.60	749.81	725.24	713.07
사업기간	2003~2016년 (14년간)	2003~2017년 (1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법무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8. 부산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2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여홍구, 최영은 - 외부 연구진: 김호상(건일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2014년 수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과 기준, 방파제의 보강공법 및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총사업비는 요구안의 형식 및 단면을 준용하되 물량 및 단가 오류를 수정하고 제작장을 신선대 투기장으로 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함. - 공사 착수 전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 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부산항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파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부산 북항 전면해상	
사업규모	방파제 보강 1,007m	
총사업비(억원)	1,557.29	1,499.30
사업기간	2013 ~ 2020년 (8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9.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2.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정세나 - 외부 연구진: 김경철(한국종합기술)
주요 논의사항	- 적정 단면, 치수계획빈도, 호안계획의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운흥천 합류점 ~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고부천 합류점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장천 확폭 L=14.3km(10~50⇒120m) - 하장배수갑문확장(60m) - 교량 19개소 재설치(횡단교 12(수로교 1 포함), 종단교 7) - 양수장 이설 6개소 - 동정제수문 이설 1개소 - 배수구조물 129개소 	
총사업비(억원)	1,640	1,727
사업기간	2015~2019년 (5년간)	
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10.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8. ~ 2016. 2.
연구진	- KDI 연구진: 조숙진, 박용덕 - 외부 연구진: 정태화(창조건축)
주요 논의사항	- 최종 시설규모인 10만기 수요의 적정성 검토 - 사업부지 내 문화재시굴조사 수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설계내용 변경 가능성 존재 - 대강당 및 분임토의실 면적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909,447㎡, 봉안담 5만기(1차년도 1만기 조성)		
총사업비(억원)	802.20	791.43	784.67
사업기간	2012~2017년 (6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가보훈처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12.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나정현 - 외부 연구진: 정성식(대양엔지니어링)
주요 논의사항	- 해상작업 일수의 적정성 검토 - SEP(자주승강식) 바지선 임대료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사업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도항 일원			
사업규모	방파제 피해복구 1식			
총사업비(억원)	454.93	434.13	443.61	461.04
사업기간	2012 ~ 2020년(9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국고 100%			

주: * 괄호안의 사업비는 가격기준연도를 보정하여 제시

2.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과업 기간	2015. 7. ~ 2015. 11.
연구진	- KDI 연구진: 최승안, 김희영 - 외부 연구진: 김정현(한국종합기술)
주요 논의사항	- 송수관로 연장 증·감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양정고 변경에 따른 송수관로 터널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수요 추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현행안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이천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급수지역)		
사업규모	- 도·송수관로 89.1km (D1,350~400mm) - 취수시설 (194.3천m ³ /일), 정수시설 (185천m ³ /일), 가압시설 (185천m ³ /일)		
사업기간	2012~2015년 (4년간)	2015~2018년 (4년간)	
사업주체/ 재원조달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국고 30%, 한국수자원공사 70%		

3.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오승연 - 외부 연구진: 추상호(홍익대), 노희찬(도화eng)
주요 논의사항	- 교통수요 전망에 따른 적정 차로수 - 자전거도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덕동	
사업규모	2-1단계: L=1.04km, (현행안) 8차로 신설 → (요구안) 6차로 신설	
사업기간	2003~2018년 (15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해양수산부 / 국고 100%	

4.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건설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 추진경위

사 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	-----------------------------

2)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9. ~ 2015. 10.
연구진	- KDI 연구진: 박상준, 나정현 - 외부 연구진: 정훈(우성디앤씨)
주요 논의사항	- 시점부 노선 변경의 불가피성 검토 - 대안노선의 검토

3)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 분	요구안	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매리~양산시 강서동(유산동)	
사업규모	- 총연장 9.74km (폭 B=19.5m) - 교량 6개소 / 1,503m - 터널 2개소 / 3,804m	
사업기간	2006 ~ 2022년(17년간)	
사업주체/재원조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공사비90%, 시설부대경비 90%), 지자체(공사비10%, 시설부대경비10%, 보상비100%)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1.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조세특례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1. ~ 2015. 9.
연구진	- KDI 연구진: 한성민, 남창우, 이세환 - 외부 연구진: 유한옥(한림대), 서은숙(상명대)
주요 논의사항	- 제도도입의 순효과 추정

2) 사업 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에게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지원방식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구매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구매금액의 0.1% 혹은 0.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지급기한 15일 이내 → 구매대금의 0.2%, 지급기한 16~60일 → 구매대금의 0.1%	
운영기간	2015~2017년	
정책성 분석	정책적일관성	상생결제 제도의 보조 정책수단임을 전제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시성이 확보되며 타사업과의 중복성은 낮음.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목표가 불분명하며, 투입/활동-산출(운용 목표)간 논리적 연관성 불명확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은 명확하나 수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책대상에 대한 공제혜택 수혜 가능성 존재
	사업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현금성결제 전환의 유인제공이 낮고, 현금결제에서 현금성결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 초래 및 비납세 기업에 의한 조세 왜곡 가능성 존재
경제성 분석	B/C	0.32
형평성분석	과거 제도에 비해 형평성은 다소 개선되나, 그 효과는 미미함.	
AHP	0.250	

<간 자>

제II장

2015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간 자>

< BTO (타당성분석 검토) >

1.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2.~ 2015. 07.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추정수, 강은영
쟁점	- 기존 처리 중인 중앙처리구역에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므로 중앙처리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과부족량 검토 필요 - 공장폐수의 하수처리수요가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므로 계획 하수량 검토필요 - 탈수케입 무상 연계처리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구미시 오태8길 27-19 일원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6개월) - 준공 후 20년
사업규모	- 시설 용량 : 55,000m ³ - 처리 구역 면적 : 16.162km ² - 하수처리 인구 : 138,300인
주무관청	- 구미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구미맑은물주식회사((주)GS건설, (주)세원건설,(주)코오롱글로벌, 미래에셋캐프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2. 인천광역시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06.
연구진	- KDI 연구진: 홍성필, 추정수
쟁점	- 용량 제약을 고려한 주차장 수요 추정의 필요성 - VISSIM을 이용한 편익 추정 - 타당성 판단 시 근린생활 시설 제외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5번지
사업기간	- 공사기간: 24개월(설계6개월, 시공18개월) - 운영기간: 준공 후 20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813.2m ² - 건축연면적 : 14,560.56m ² - 주차대수 : 총394면 - 시설규모 : 지상1층 ~ 지상5층, 옥상층
주무관청	- 인천광역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주식회사에스에이치랜드((주)에스에치랜드)

3) 조사결과

조건부 처리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3. 인천광역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제안서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3. 9.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하성준
쟁점	-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폐쇄 여부에 따른 본 사업 추진여부 결정 - 수도권매립지 폐쇄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의 의견 조정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6-1 외 1필지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4.12~2018.05(42개월) - 운영기간: 2018.06~2043.05(25년간)
사업규모	-하수슬러지 건조 · 소각시설: 400ton/일 - 음폐수 혐기성소화시설: 250ton/일
주무관청	- 인천광역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인천엔텍(주)

3) 조사결과

추진 가능성 낮음.

4. 인천광역시 송도환경센터 3호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01. ~ 2015. 08.
연구진	- KDI 연구진: 정민웅, 정세나
쟁점	-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폐쇄 여부에 따른 본 사업 추진여부 결정 - 수도권매립지 폐쇄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의 의견 조정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송도동)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5년 1월 ~ 2016년 12월(시운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2017년 1월 ~ 2031년 12월
사업규모	- 소각설비 : 250Ton/일 X 1기 - 처리대상 : 생활폐기물 250Ton/일(300일/년) - 소각방식 : 연속연소 스토커방식(24hr 운전) - 여열이용설비 : 7,000kW(정격용량) X 1기 - 연소가스 처리설비 - SNCR + 반건식 반응탑 + 활성탄 분무설비 + 백필터
주무관청	인천광역시
사업방식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가칭)인천송도환경에너지주식회사(현대엠코(주), 한라건설(주), (주)서희건설, 풍창건설(주), 브니엘네이처(주))

3) 조사결과

추진 가능성 낮음.

< BTO (타당성분석 검토) >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1. ~ 2015. 08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도일, 구석모
쟁점	- 광역철도 운영비 중 인건비 산정 ·인건비 단가 - 경제성 분석 시 예비비 반영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화성시 등
사업기간	- 건설기간 · 1단계 2015년 ~ 2018년(4년) - 운영기간: 40년
사업규모	- 노선: 102(USKR)~광명~여의도 - 주요시설: 16개역, 송산차량기지 - 연장: 43.605km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TO

3) 조사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있음.

2.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7. ~ 2016. 1.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조영희, 강은영
쟁점	- 과업의 범위 · PIMAC이 타당성분석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나(기본계획 제65조) 민투심대상사업임을 고려, 검토를 수행함. - 6개 지역의 7개 시설로써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준용 검토 - 최초 BTO-a 사업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산시, 진주시, 청주시, 익산시, 여수 중흥, 여수 월내, 대구 달성
사업기간	- 건설(개량)기간 : 2016.1.1 ~ 2017.12.31 (2년) - 운영기간 : 2018.1.1 ~ 2023.12.31 (15년)
사업규모	- 경산 100,000 m ³ /일 - 진주 30,000 m ³ /일 - 청주 31,000 m ³ /일 - 익산 30,000m ³ /일 - 여수 중흥 : 65,000 m ³ /일 - 여수 월내 : 70,000 m ³ /일 - 달성 : 25,000 m ³ /일
주무관청	- 환경부
사업방식	- BTO

3) 조사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있음.

< BTL (타당성 분석 검토) >

1.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5.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유재광, 강은영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4번지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6. 4. 1. ~ 2017. 12. 31.(총 21개월) - 운영기간: 2018. 1. 1. ~ 2037. 12. 31.(총 20년)
사업규모	- 전용기준: 39㎡형 10층, 59㎡형 12층, 78㎡형 15층 총 3개동, 188세대 - 건축면적: 13,000㎡ - 연면적: 17,874㎡ - 아파트, 부대시설, 주차장 등
주무관청	- 단양군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22,543백만원	22,104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23,255백만원	22,790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2.59%)	적격성 있음 (2.47%)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2. 한국폴리텍대학교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김도일, 유재광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7. 1. ~ 2018. 12. 31.(총 18개월) - 운영기간: 2019. 1. 1. ~ 2038. 12. 31.(총 20년)			
사업위치 및 규모	대학	사업	위치	연면적(m ²)
	한국폴리텍VII대학	공학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29-52(중앙동)	14,080
		기숙사		6,048
	한국폴리텍VI대학	공학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	2,184
		기숙사		2,184
	주무관청	- 고용노동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48,350백만원	46,502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50,502백만원	48,584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7.97%)	적격성 있음 (8.11%)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3. 부산시 중앙·초량·범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유재광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1. 1. ~ 2020. 12. 31.(총 36개월) - 운영기간: 2021. 1. 1. ~ 2040. 12. 31.(총 20년)				
사업규모	처리구역	처리분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천m ³ /일)	사업량 (km)	배수설비 (개소)
	중앙	중앙	120	26,112	3,650
	남부	초량	340	26,117	6,366
범천		15,651		4,406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82,706백만원	82,452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87,786백만원	87,516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10.42%)	적격성 있음 (8.94%)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4. 육군 파주·연천·동두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오승연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3. 1. ~ 2020. 2. 29.(총 24개월) - 운영기간: 2021. 3. 1. ~ 2040. 2. 29.(총 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파주 A지역	11,747	1,452	199	3동
	양주 B지역	6,916	755	66	3동
	연천 C지역	5,964	577	66	3동
	동두천 D지역	5,863	577	66	3동
계	30,490	3,361	397	12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70,338백만원	71,206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74,314백만원	75,231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7.80%)	적격성 있음 (7.95%)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5. 육군 연천·철원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오승연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3. 1. ~ 2019. 10. 31.(총 20개월) - 운영기간: 2019. 11. 1. ~ 2039. 10. 31.(총 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철원 A지역	5,964	577	66	3동
	철원 B지역	5,596	577	66	3동
	연천 C지역	3,128	446	66	3동
	연천 D지역	6,723	755	-	2동
	계	21,411	2,355	198	11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50,379백만원	50,752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53,116백만원	53,510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7.39%)	적격성 있음 (7.58%)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6. 육군 양구·인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3. 1. ~ 2020. 3. 31.(총 25개월) - 운영기간: 2020. 4. 1. ~ 2040. 3. 31.(총 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인제 A지역	9,455	962	66	3동
	인제 B지역	9,455	962	66	3동
	양구 C지역	9,106	755	66	3동
	양구 D지역	9,106	755	66	3동
	양구 E지역	6,682	446	199	3동
	계	43,804	3,880	463	15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96,652백만원	98,266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102,154백만원	103,860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7.85%)	적격성 있음 (7.97%)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7. 육군 원주·홍천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이원석,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3. 1. ~ 2019. 7. 31.(총 17개월) - 운영기간: 2019. 8. 1. ~ 2039. 7. 31.(총 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원주 A지역	4,925	446	66	3동
	홍천 B지역	8,490	755	66	3동
	계	13,415	1,201	132	6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30,941백만원	30,865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2,556백만원	32,476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6.93%)	적격성 있음 (7.19%)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8. 인천대학교 외 1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하성준, 강은영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7. 1. ~ 2018.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9. 1. 1. ~ 2038. 12. 31.(20년)			
사업규모	대학	수용인원(명)	건축연면적(m ²)	총사업비(백만원)
	인천대학교	1,000	18,000	35,485
	한국복지대학교	80	2,575	5,223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40,706백만원	39,617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42,530백만원	41,395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7.72%)	적격성 있음 (7.33%)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9. 전남대학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6.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하성준, 강은영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7. 1. ~ 2018.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9. 1. 1. ~ 2038. 12. 31.(20년)		
사업규모	대학	수용인원(명)	건축연면적(m ²)
	전남대학교	350	6,300
총사업비(백만원)	12,822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12,822백만원	12,497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13,396백만원	13,058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8.54%)	적격성 있음 (8.92%)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0. 육군 홍천·양구 병영시설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7. ~ 2015. 8.
연구진	- KDI 연구진: 이과섭, 김정아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8. 3. 1. ~ 2019. 10. 31.(총 20개월) - 운영기간: 2019. 11. 1. ~ 2039. 10. 31.(총 20년)				
사업규모	구 분	요구 시설규모(m ²)			동수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위병면회실	
	홍천 A지역	5,251	-	-	1동
	홍천 B지역	2,413	-	-	1동
	홍천 C지역	2,021	-	-	1동
	홍천 D지역	1,898	-	-	1동
	양구 A지역	3,072	-	-	1동
	양구 B지역	5,615	-	-	1동
	양구 C지역	1,604	-	-	1동
	계	21,874	-	-	1동
주무관청	- 국방시설본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43,498백만원	43,753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45,862백만원	46,130백만원
적격성 판단 (VfM 분석)	적격성 있음 (7.26%)	적격성 있음 (7.47%)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11. 공주대학교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7. ~ 2015. 9.
연구진	- KDI 연구진: 백승환, 김선경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 본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예산 캠퍼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사업기간	- 공사기간: 2017. 7. 1. ~ 2018. 12. 31.(18개월) - 운영기간: 2019. 1. 1. ~ 2038. 12. 31.(20년간)				
사업규모	캠퍼스		건축연면적(m ²)	수용인원(명)	총사업비(백만원)
	본교	증축	9,936	1,052	27,206
		리모델링	8,927		
	예산	증축	3,780	422	11,008
		리모델링	3,960		
계		26,603	1,474	38,215	
주무관청	- 교육부				
사업방식	- BTL				

3) 조사결과

구 분	사업계획(안)	타당성분석
총사업비 (2015. 01. 01. 불변가)	38,215백만원	38,558백만원
총투자비 (경상)	39,934백만원	40,290백만원
적격성 판단 (ViM 분석)	적격성 있음 (8.45%)	적격성 있음 (8.07%)

주: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PSC 기준임.

< 수요예측재조사 >

1.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0. ~ 2015. 3.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백승한
쟁점	- 면목선 경전철 요금 체계 및 운행계획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의 반영 여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청량리역(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역(7호선)~망우동 ~중랑구청~신내역(경춘선, 6호선 예정역)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사업규모	-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 -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포스코)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2.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4. 12. ~ 2015. 06
연구진	- KDI 연구진: 박경애, 조영희
쟁점	- 수요감소에 따른 시설규모 및 설계변경(공사비 감소) 발생 - 수요예측재조사의 비교 기준(민투심의결은 받았으나 협약체결은 아니므로 적격성조사 수요와 비교) -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확상의 원단위 적정성 검토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일원
사업기간	- 공사기간 30개월(시운전 6개월 포함)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31,100톤/일) - 소규모공공 11개소 (1,210톤/일) 신설 - 기타: 관거정비 147.5km, 배수설비 2,654가구
주무관청	- 화성시
사업방식	- BTO
사업제안자 (출자자)	- (가칭)화선환경 주식회사(주간사: 한화건설)

3)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3. 호남권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1) 조사 개요

과업 기간	2015. 2. ~ 2015. 10.
연구진	- KDI 연구진: 우지원, 유재광
쟁점	- 분석관련 지침의 부재(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5차 준용 여부) - 수요예측재조사의 비교 기준(실시협약상 물동량) - 분석대상(CFS 제외 여부)

2) 사업 개요

사업위치	전남 장성군 서삼면 물류로 일원(52만㎡)
사업기간	- 1999년 ~ 2016년
사업규모	- 화물취급장 4동 - 배송센터 10동 - CY(컨테이너 야드) 9만㎡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 BOO
사업제안자 (출자자)	- (주)한국복합물류

3) 조사결과

30% 이상 차이 발생

제III장

2015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간 자>

1.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6.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박지혜, 추정수, 김정아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 해지 시점의 분쟁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정계약으로 인식되는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제도의 법리적 부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로서의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주무관청의 채무 관리 측면에서 재고하여야 할 사항과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II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p> <p style="padding-left: 20px;">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p> <p style="padding-left: 20px;">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p> <p>제III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영국과 호주</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미국</p> <p style="padding-left: 20px;">제4절 독일</p> <p style="padding-left: 20px;">제5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p> <p>제IV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p> <p style="padding-left: 20px;">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p> <p style="padding-left: 20px;">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p> <p style="padding-left: 20px;">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p>
----	---

	<p>제 V 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 1 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 2 절 종합결론</p>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직면하여,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분쟁상황을 더 유발하고 있는 지를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의 특성상 해지상황에서 주무관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실시협약에서 약정한 해지시지급금에 상당하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위험 요소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운영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쟁 상황에서의 법리 판단과 분쟁 현황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PPP 선진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바람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 현황 파악 (판결문 분석 등)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되는 질의 및 검토과정에 제기되는 쟁점 파악 - 해외 PPP 사례의 문헌 조사 및 자문위원 자문 - 실시협약 해지의 법률관계 분석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의 법리에 대한 분석 - 해지 시점의 공정한 가치에 관한 재무적/ 회계적 분석
<p>연구내용 및 결론</p>	<p>실시협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절차 및 근거 규정 마련과 해지시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내었다.</p> <p>민간투자법에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보상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표준 협약안에서의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해지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다.</p> <p>또한,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해석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해지시지급금 수준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주무관청 귀책사유별로 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손실보상 법리에 부합하게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p> <p>특히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정부의 보장 또는 보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해지시지급금 수준을 공정한 가치 수준에 대한 분석과 귀책사유별 지급의 정당성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 수준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였다.</p>

2. BOO 사업에 대한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9. ~ 2015. 6.
연구진	- KDI 연구진: 노승범, 추정수, 이동훈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BOO 방식은 일부 물류사업과 관광사업에 적용되어 현재 5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2005년 이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BOO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BOO 방식은 사업의 성격, 소유권 귀속여부, 사업위험의 분담 등에 있어서 BTO 또는 BTL 방식과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 이에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태, 특성 등을 파악하고 관련되는 법·제도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RFP, 표준협약안 등의 정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 II 장 BO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및 현황</p> <p>제 III 장 BOO 방식 사업의 공공성 관리 쟁점</p> <p>제 IV 장 대안</p> <p>제 V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 귀속시설사업(BTO사업 및 BTL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BOO사업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의 연구,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은 BTO 방식 및 BTL사업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물류사업과 관광사업 등 현재 5개 사업이 BO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5년 이후 BOO사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p> <p>그런데 이러한 BOO사업은 사업의 성격, 시설 소유권 귀속여부 등 법률관계, 사업위험의 분담 등에 있어서 BTO 등 귀속시설사업과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BOO사업의 고유한 특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p>

	<p>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p> <p>이에 본 연구에서는 BOO사업의 현황 및 실태,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또한 BOO사업의 주요 예상 쟁점을 도출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 개선방안 등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각 쟁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국내제도를 분석한다. 즉, BOO사업의 도입 배경 및 목적, 1종·2종 시설 구분 및 폐지 배경, 국내 민간투자법상 BOO사업의 특성 및 귀속시설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p> <p>다음으로 국내·외 BOO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BOO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부지 확보, 대상시설,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출자규제, 공적 서비스 제공 확보,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법률관계, 사업기간 만료시 처리방안 등의 다양한 쟁점들에 관련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 등 BOO사업의 장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p>끝으로 국내 BOO사업에 관련된 제도들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귀속시설사업과 차별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 등 관련 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한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본 연구를 통해, BOO사업에서의 공공성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확보방식과 공용수용권의 행사, BOO 방식에 친한 대상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준별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설단계에서는 설계, 공사 및 사업관리에 관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하고, 운영단계에서는 공적 서비스 제공의무가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사용료 등 핵심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담보제공과 그 실행에 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방안, 합리적인 위험분담 방식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필 수 있었다.</p> <p>이를 기초로 BOO사업의 공공성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며, 적정 수준의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p> <p>또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BOO 방식에 관한 공용수용 규정의 개정이나 국·공유재산의 장기 사용·수익 허용 규정의 신설,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등 민간투자법령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BOO 방식에 적합한 시설사업의 예시 규정 신설, 공용수용에 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실시협약 체결시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통제 강화 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p>

3. 2014년 공공투자 관련 법률쟁점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1. ~ 2015. 7.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혜영, 여흥구, 노승범, 이지현, 이동훈, 고승정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로,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목하여야 할 법률쟁점을 소개하고 발굴함으로써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함. - 둘째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인식하고 공유하여야 하는 법률쟁점을 소개하고 발굴함으로써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식하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연구결과

목차	<p>[제1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률쟁점]</p>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 II 장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령 개정 동향</p> <p>제 III 장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판례 분석</p> <p>제 IV 장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심화 연구</p> <p>제 V 장 결론</p> <p>[제2부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쟁점]</p> <p>제 I 장 연구의 개요</p> <p>제 II 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p> <p>제 III 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쟁점 심화 연구</p> <p>제 IV 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판례 분석</p> <p>제 V 장 결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대규모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배정 절차의 합리성이 결여된 후속 행정계획 등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이를 둘러싼 국민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이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개정 동향과 관련 분쟁사례에서의 판결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사업</p>

	<p>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공성 평가 항목인 ‘설립 목적 부합성’에 관한 쟁점 검토를 대상으로 하였다.</p> <p>한편,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 및 운영기간의 조건이 정하지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 역할 뿐 아니라, 건설 기간 및 운영기간 전기간에 걸친 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법령의 최근 개정 동향 분석, 최근 분쟁 현황과 그에 관한 판결례 분석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내 국가개정법 및 민간투자법령 개정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법령제·개정이유, 국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p> <p>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사례의 발굴을 위하여 분쟁 현황 및 판결례를 수집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 단계별, 주체별, 승소율의 관점에서 분쟁 추이를 분석한다. 그 외에 홈페이지 질의사항 등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심화 쟁점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상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하도록 한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국가개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률상 근거와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 발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예산 배정 단계에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공성 평가 및 판단이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충실이 검토되고 평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p>

	<p>민간투자법의 개정 현황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목소리와 활성화 차원의 개정 목소리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구조상 국가 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령의 제도와 교차점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으므로 계약조건 조정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관련 사항에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 제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p> <p>민간투자사업 분쟁사례를 통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소송을 통한 분쟁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p>
--	---

4. 서비스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9. ~ 2015. 2.
연구진	- KDI 연구진: 이호준, 홍성필, 이과섭, 김혜영, 박수진, 구석모, 고유은, 최명호, 오승연, 이동훈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제공까지도 관리운영권(특히)을 가진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새로운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거나 학교, 군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사업에 치중하여 옴. -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노후시설의 개량형 사업”이나 “공공부문이 운영하여 오던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 “시설에 기반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서비스(예. 교육이나 복지서비스, 교도행정 서비스 등)사업”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운영을 민간에 의해 수행하게 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개량·운영형”)과 공공시설의 운영만을 민간에 의해 수행하게 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단순운영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 다만,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은 기존에도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령을 통해 민간에 의하여 수행되어온 부문이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서비스 PPP의 개념과 유형 제 III 장 서비스 PPP 관련 법제 현황 제 IV 장 서비스 PPP 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 V 장 결론
연구의 배경 및 범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의 관리운영권의 부여를 통해서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역시 민간에 특허함으로써 민간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은 당시의 사회 환경, 국민의식, 국가적 과제 등에 비추어 적절한 대상사업을 정하고 적합한 사업방식을 채택

	<p>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온 바, 주로 새로운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거나 학교나 군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사업에 치중하여 왔다.</p> <p>그러나 최근에는 이미 노후화되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하여 개량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기존의 공공부분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넘겨 보다 효율적인 운영,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나아가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교도행정 서비스 등과 같이 공공부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시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순수 서비스 역시 민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p> <p>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설의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의 개량·운영, 혹은 공공시설의 운영만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료 또는 법령 및 국회입법자료 등 기초 문헌조사를 토대로 국내 민간투자법제 및 공물·공공서비스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외 법제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인프라시설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후화된 인프라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노후화 인프라시설을 원활하게 유지·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진된 단순운영형 사업과 개량·운영형 사업의 실제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 현황 및 사례 조사를 기초로 하여 해외 사례들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문헌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협약(안) 및 민간투자법령 개정(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 민간투자제도에서도 시설건설 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까지도 포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대체로 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후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개념을 의미한다. 서비스 분야 민자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①(시설기반) 단순운영형 민자사업, ②(시설기반)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③비시설기반 민자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p> <p>재정사업으로 이미 건설하여 공공부분이 제공하여 오던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거나 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에게 다시 시설 운영권을 위탁하는 등의 방식을 시설기반 단순운영형 민자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단순운영형</p>

민자사업은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기간 등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야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설기반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기존에 재정 또는 민자를 통해 건설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증설 또는 개량한 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현행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이 가능한데, 다만 관리운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증설 및 개량과 유지 및 보수에 차이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반으로 하는 시설이 없이 단순히 공공서비스 자체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시설기반 민자사업 유형의 경우는 시설기반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현행 민간투자법의 틀 내에서 곧바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타 법률을 근거로 한) 민간위탁제도와 (민간투자법) 하의 민간투자제도 간 관계를 고려하여 본다면, 비시설기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등에 관한 논의는 비시설기반형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분야 민자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광의와 협의로 구별하고, 한편으로는 시설기반서비스와 비시설기반서비스로 구별함으로써 서비스 PPP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영화, 민관협력, 민간위탁 등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서비스 PPP만의 독자적인 성격을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PPP에 관련된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서비스 PPP 사업의 현황 및 사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서비스분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최근 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원인 및 시사점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12. ~ 2015. 5.
연구진	- KDI 연구진: 노승범, 김정아, 이지현, 고승정
연구의 목적	-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이슈가 분쟁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최근 민간투자사업 금융소송의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p>제 II 장 북항대교 채무부존재확인소송</p> <p>제 III 장 감독명령 취소소송(1)</p> <p>제 IV 장 감독명령 취소소송(2)</p> <p>제 V 장 결론</p> <p>제 VI 장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이슈가 분쟁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요청한 바 있음.</p> <p>- 연구의 범위가 되는 분석 대상 금융 소송은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대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 수정산터널 감독명령 취소소송 · 백양터널 감독명령 취소소송 · 서울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감독명령 취소소송 ·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감독명령 취소소송 · 우면산터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수정산터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구부산고속도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천안논산 고속도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p>- 대상 소송들을 분석함으로써 소송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하고, 주무관청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무 중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본 연구를 착수함.</p>
<p>연구 (평가) 방법</p>	<p>대상판결문 및 구득 가능한 소송기록을 수집하고, 소송이 제기된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 수행한 검토자료를 분석한다. 필요시 각 소송의 정부측 담당 실무자 자문 및 면담을 통하여 소송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현재 분석 대상 소송 중 일부는 판결 선고 이전이고, 그 외 사안들은 2심, 3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보완 예정</p>

6.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4. 9. ~ 2015. 12.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김강수, 정민웅, 고유은, 박미수 - 외부 연구진: Danang Parikesit, Alma Porciuncula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예산계약으로 인해 인프라 개발 및 공공투자부문에 재정투자가 축소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정투자를 대신하여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민간투자(PPP)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 및 국제금융위기에서 대두 되었던 민간투자사업으로부터 야기된 공공부채는 민간투자사업이 단순 재무적 타당성이 아닌 재정건전성과 연계하여 국가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필요성을 나타냄. -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 중 선진사례로 평가받는 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PPP 제도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재정위험 관리방안, 법률 및 제도장치, 공공투자 및 예산배정과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 위험분담방안,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확정 및 우발채무 처리방안, 투명 및 신뢰성 문제 등 개별항목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조사 및 비교 연구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방법 및 의의 <p>제 II 장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제현황 및 투자전망 - 한국의 민간투자 법률 및 제도, 추진절차, 관련기관, 재정지원 및 재정관리방안, 사업 수행실적 <p>제 III 장 필리핀의 민간투자사업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경제현황 및 투자전망 - 필리핀의 민간투자 법률 및 제도, 추진절차, 관련기관, 재정지원 및 재정관리방안, 사업 수행실적 - 필리핀 제도분석 결론 <p>제 IV 장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사업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 및 투자전망 -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 법률 및 제도, 추진절차, 관련기관, 재정지원 및 재정관리방안, 사업 수행실적 - 인도네시아 제도분석 결론
----	--

	<p>제 V 장 제도분석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의 제도 분석 - 결론
<p>연구의 배경 및 범위</p>	<p>한국은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이후 20여년 동안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매년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수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민간투자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종 평가와 집행과정에 대한 지침 개발과 표준화 작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p> <p>이러한 가운데,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PPP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선진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p> <p>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민간투자제도를 정비하며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 제도체계, 추진절차, 기관역할 분담, 사업의 관리방안, 사업추진현황, 관련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내제도와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국내외 문헌조사, 현황자료 조사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례에서는 현지 교수 및 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통해 각 나라별 최근의 경제현황 및 투자전망, 민간투자사업 법률 및 제도, 추진방식, 추진절차, 민간투자관리방안, 수행실적을 분석 요청하였다. 각 국가별 상이한 제도를 최대한 병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질의 template가 제공되었으며, 이를 답변·서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한국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간투자제도 및 규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 개혁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재원부족으로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과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양국 정부는 인프라 확충방법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히 교통, 에너지, 통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태이다. 교통분야는 차량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로와 교량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르지 못하여 물자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에너지분야도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송전도 비효율적인 상황이다.</p>

	<p>필리핀은 BOT법에,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방식, 추진절차, 정부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두 국가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뒷받침되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크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다.</p>
--	--

7. 산업단지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4. ~ 2015. 3.
연구진	- KDI 연구진: 김형태, 김석영, 백승한, 정동호
연구의 목적	- 설문조사, 비용과 수요/편익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 - 기존 산업단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부문사업의 문제점 및 주요 개선사항을 도출

2) 연구결과

목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 I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 I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 IV 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 V 장 수요 추정 제 VI 장 편익 추정 제 VII 장 경제성 분석 제 VIII 장 정책성 분석 제 IX 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 X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범위	- 연구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업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지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특히 ‘예타사무처리 관련 감사원 지적(‘12.11월)’에 제시된 산업단지 관련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 연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 정립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기존 조사 사례의 유형별 조사, 기술적 검토 및 규모 검토, 비용 추정 근거 및 세부 원단위 제시 여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 산정 범위 및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추정) 입주수요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론 개선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편익 추정) 적정 편익 항목 검토 및 방법론 제시
<p>연구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기 수행 사업의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기술검토, 설문조사 방법론 및 편익산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을 위한 방법론 정립 및 적정성 검토
<p>연구내용 및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방식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신규투자비율 산정 기준),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한 유효표본 확보 방안 등 - 비용 산정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항목, 참고 자료 및 산정 원단위 등 기준 제시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제시 - 편익항목 산정 방법론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형(신규, 이전, 철회,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방법론 제시 · 신규투자기업의 부가가치편익 산정 절차 및 방법론 제시

8. 예비타당성조사 사후 타당성 검증 연구(교통량 예측 오차를 중심으로)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 10. ~ 2015. 2.
연구진	- KDI 연구진: 김강수, 백승한, 박용덕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도로 및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후 평가를 목적으로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봄. ·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전의 편향적인 교통량 과다 예측 경향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은 제고되었는지를 검토함. ·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타당성평가 결과의 핵심 판단요소인 교통량 예측 오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 론</p> <p>제 I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적 및 성과</p> <p>제 III 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효과</p> <p>제 IV 장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p> <p>제 V 장 결 론</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본 연구는 도로 및 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후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판단지표인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전의 편향적인 교통량 과다 예측 경향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은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타당성평가 결과의 핵심 판단요소인 교통량 예측 오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우선, 도로 및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및 타당성 확보 현황,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절감된 재정지출의 규모를 살펴보았다.</p> <p>다음으로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교통량 과다 예측의 문제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을 통해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타당성평가의 신뢰성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은 제고되었는지를 교통량 예측 오차에 대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p> <p>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량 예측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적 요인, 심리적 요인, 정치·경제적인 제도적 요인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분석을 통해 교통량 예측 오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 요인이 교통량 과다 및 과소 예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p> <p>마지막으로 이들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교통량 예측 오차의 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도로 및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에 따른 성과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9~2014년간 수행된 도로 및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정절감액은 총 89조 5,188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효과를 살펴본 결과, 타당성평가의 객관성 제고, 즉 타당성평가 결과의 왜곡과 편향성이 보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p> <p>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교통량 예측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며, 이들 요인이 교통량 과다 및 과소 예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개발계획의 불확실성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도로사업의 교통량 예측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교통량 예측 책임자의 전공분야와 연구책임자의 경력과 같은 연구진의 능력, 정치적 경륜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국회의원 당선 횟수도 교통량 예측 오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p> <p>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교통량 예측 오차의 원인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관련 개발계획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부 관점을 통한 검증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통량 예측 오차 완화를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보다 객관적이며 직관적인 사업평가의 능력도 연구진에게 요구된다.</p>

9. 문화·관광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1) 조사 개요 및 추진경위

연구기간	2013.12~2015.12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연구진: 이종연, 이현정, 박미수, 김진경 - 외부 연구진: 성기택(문박 DMP 실장), 최홍빈(문박 DMP 대리),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최효연(고려대학교 연구원), 변태근(알투 코리아 실장), 정세리(알투코리아 대리)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부문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은 2008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에서 기타사업으로 일부 다루어졌으나, 해당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지침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표준지침 연구는 문화·관광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임.

2) 연구결과

목차	<p>제 I 장 서 론</p> <p>[1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p> <p>제 II 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p> <p>제 III 장 비용 추정</p> <p>제 IV 장 수요 추정</p> <p>제 V 장 편익 추정</p> <p>[2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p> <p>제 VI 장 문화·관광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분석</p> <p>제 VII 장 중력모형의 이론적 고찰</p> <p>제 VIII 장 여행비용 평가법의 이론적 고찰</p>
연구의 배경 및 범위	<p>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 및 수정·보완 연구와 부문별 표준지침 개발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침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화·관광부문 사업은 2014년 말 기준 총 51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08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의 내용 중 기타사업으로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해당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문의 지침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p>

	<p>이에 본 표준지침 연구는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관광 부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점검하여, 향후 실시될 문화·관광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가급적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였다.</p>
<p>연구 (평가) 방법</p>	<p>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문화 관광시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존사례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비용, 수요, 편익항목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관광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p>
<p>연구내용 및 결론</p>	<p>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제1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연구와 제2부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로 나눌 수 있다.</p> <p>제1부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유의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 관광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검토해야 하는 기술적 검토사항 및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방법,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성되는 비용 추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문화 관광시설의 수요추정의 주요 쟁점사항, 수요추정 기법, 수요 예측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편익추정의 쟁점사항 및 편익추정 방법론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p> <p>제2부에서는 문화·관광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선행과제에서 적용한 비용, 수요추정 및 편익산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시설 수요추정시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중력모형 적용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여행비용 평가법의 이론고찰 및 적용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p>

<간 자>

제IV장

2015년도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간 자>

1. 방글라데시 공무원 교육

기간	2015. 4. 6 ~ 1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회의실 - 방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신항, 거가대교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측 발표자)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혜영 법률팀장, 노승범 민자제도팀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고유은 전문연구원, 이정엽 신용보증기금 차장, 주성진 삼성물산 부장, 이정상 대우건설 차장, 김대근 산업은행 팀장 - (교육참석자) O. N. Siddiqua Khanam, Additional Secretary of Planning Division, Ministry of Planning 외 방글라데시 민자 관련 중간급 이상 공무원 및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 9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은행의 World Bank funding project인 IPFF(Investment Promotion and Financing Facility)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방글라데시 공무원 민자 교육을 요청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공무원 capacity building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어, 본 교육을 수행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소개 및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요업무 및 정책방향 소개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법·제도, 추진방식 및 절차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및 재정위험 관리 방안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및 신용보증 - 부산신항만과 거가대교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프로그램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Session - Korean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 Roles and functions of PIMAC KDI - Introduction and mission of MOSF in PPPs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nd policy direction - PPP system and fiscal management in Bangladesh - Government Visit: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 Government Vis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investment and the role of PPPs- Legal Framework of Korean PPP- Korean PPP Implementation Procedure- PPP Project Value-for-Money Test- Managing Fisk Risk of PPP <p><Day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duction of SOC Credit Guarantee System- Case Study: Busan New Port- Case Study: Busan-Geoje Fixed Link- Financing of PPP Projects <p><Day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te Visit: Busan New Port- Site Visit: Busan-Geoje Fixed Link <p><Day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untry Presentation and Roundtable Discuss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of Bangladesh- Closing Session
--

2.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샵

기간	2015. 8. 14 ~ 16
장소	- 미얀마 네피도 캠프스키 호텔
참석대상	- 한국측 발표자: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한성민 부연구위원,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 교육참석자: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관련 공무원(50명)
목적	- 2012년 5월 한국-미얀마 정상회의 중 떼인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은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을 요청함. 동 해 10월 떼인세인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 MDI 설립 관련 MOU를 체결함 - MDI 설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얀마 공공투자관리 현지워크샵’ 개최를 통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한국의 SOE 관련 사례를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상호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내용	- 본 워크샵은 한국의 인프라 개발정책, 민관협력사업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사례소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하여 미얀마 공공투자 정책담당자의 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함.
기타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 PPP development in Korea - Governance reform and managing efficiency issues of SOEs in Korea - Basic concepts and Practices: PFS, TPCM, RSF - Unified PIM, international practices - The role of PIMAC and PIM in Korea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legal framework and government supports in Korea - Performance evaluation of SOEs in Korea - The role of PPP Unit and PPP Project management - Value for Money Test - Public disclosure of integrated information in managing SOES - PFS on SOE project: A case of hydropower Project in Pakistan - VfM on PPP Project: A case of New Bundang Line - Roundtable Discussion <p><Day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tioners Consultative Workshop

3.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공무원 교육

기간	2015. 9. 8 ~ 1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미나실 - KDI 국제정책대학원 캠퍼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측 발표자: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혜영 사업지원팀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고유은 전문연구원, 김희산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대근 산업은행 팀장, 이정엽 신용보증기금 차장 - 교육참석자: Pen Thirong 캄보디아 예산총괄국(GDB)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외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공무원 7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재정경제부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GDLN(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프로그램 통해 자국 공무원의 민자 교육을 요청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공무원 capacity building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어, 본 교육을 수행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소개 - 기획재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업무 및 정책방향 소개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법·제도, 추진방식 및 절차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및 재정위험 관리 방안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금융구조 및 신용보증
프로그램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Korean PPP and Roles and functions of PIMAC KDI - Introduction and mission of MOSF in PPPs /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nd policy direction - Korean PPP framework - Korean PPP implementation procedure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Project Value-for-Money Test - Managing Fiscal Risk of PPP <p><Day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Financing - SOC Credit Guarantee System - Funding Structure of Korean PPPs - Roundtable Discussion and Closing

4. 브루나이 재정투자사업평가 현지워크샵

기간	2015. 11. 17 ~ 19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 만다르스리브가완 - 경제기획발전부 회의실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측 발표자: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 교육참석자: 브루나이 공무원(27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 경제기획발전부의 국가개발계획 사무국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정사업 평가 교육을 자국 공무원을 위해 브루나이에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그간 재정 및 민자 제도 관련 경험과 지식을 해외에 전수하는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사업에 다수 참여한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 국가사업 계획 중 도로사업을 샘플로 활용하여 도로 등 정형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재정관리 방안, 기타 비정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브루나이측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함.
기타	<p><Day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of PIMAC and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in Korea - Project Selection: Basic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CBA) <p><Day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e Study I : Hospital Project - CBA for Transportation Project - Case Study II: Transportation Project - Case Study III: Cultural Facilities <p><Day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ercise 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 Basic Principle of Value for Money (VFM) - Exercise II: VFM - Q&A and Discussion: Strategies to improve project evaluation system in Brunei

5.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방원회의

기간	2015.2.15(목)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 (PIMAC)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 (에티오피아) Kokeb Misrak 재무경제개발부(MOFED) 양자국장 외 에티오피아 정책실무자 8명
목적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소개
내용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에티오피아 민자제도 및 사업추진 전략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 민관협력(PPP)을 통한 정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함
기타	- 2014년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6. 몽골 국회의원 대상 PPP 연수

기간	2015. 2. 26 ~ 27
장소	- JW Marriott 호텔, 서울 9호선 운영(주), 상현고등학교
참석대상	- (PIMAC)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김혜영 법률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 (몽골) Batsuuri Jamiyansuren MP(국회의원) 외 몽골 국회의원 및 PPP 관련 공무원 8명
목적	- 몽골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PPP 제도 및 민간투자법에 대한 이해력 제고
내용	-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및 PPP 제도 소개를 통해 몽골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투자관리방안을 모색 · 서울9호선운영(BTO)과 상현고등학교(BTL) 시설 방문을 통해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의 주요 성공요인 학습

7.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실무자 방원회의

기간	2015. 3. 19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 (인도네시아) Bastary Pandji Indra PPP개발기획부 국장(사절단장) 외 PPP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2명
목적	- 인도네시아 KSP 민관협력(PPP) 역량강화연수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PPP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PPP 정책수립 및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임.
내용	- 한국 PPP사업의 성공사례 - 한국의 PPP자금 조달 방식 - 한국의 PPP사업 동향 및 역사

8. 인도네시아 IIGF 사절단 PPP 교육

기간	2015. 4. 11
장소	- Millennium Seoul Hilton
참석대상	- (한국측 발표자)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박수진 공공투자정책팀장, 김수정 전문연구원, 이정엽 신용보증기금 차장, - (인도네시아) Mr. Hadiyanto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장 외 인도네시아 인프라보증펀드(IIGF) 직원 5명
목적	- 인도네시아 인프라보증펀드(IIGF)는 재무부 국장 및 IIGF 고위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친 스터디를 목적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 교육을 요청함. · 특히 PPP 사업추진에서 한국의 정부지원정책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내용	- Government Support for PPP - Role of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in PPP - Evolution of Korean PPPs

9. 방글라데시 고위공무원 대상 PPP 교육

기간	2015. 6. 18
장소	- KDI 중회의실
참석대상	- Suranjit Sengupta Member of Parliament and Chairman,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의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등 고위급 공무원 및 PPP 전문가 9인
목적	-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자국 국회의원 및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 한 한국 인프라 개발 정책 및 PPP 방식 적용 방안에 대한 스터디를 목적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방원교육을 요청함.
내용	- Introduction to Korean PPP

10. 몽골 공무원 방원회의

기간	2015. 11. 5
장소	- KDI 회의실
참석대상	- KDI 참석: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호준 민간투자지원실장, 고유은 전문연구원 - 몽골측 참석: Batbayar Tseveenregzen 몽골 투자청 실장, Bolormaa Chimednamjil GGGI 컨설턴트, 이승연 GGGI 매니저
목적	- 몽골 PPP 사업 관련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방원회의를 요청함.
내용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 한국 PPP 제도 소개

참고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2010.
- 기획예산처,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2.
-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2.
- 기획재정부, 『2015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4.11
-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2013.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2012.11.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4.
-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백서』, 2012.
- 한국개발연구원,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3.
- 한국개발연구원, 『20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4.
- 한국개발연구원, 『201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5.
-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 2007.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 한국개발연구원, 『총괄백서 :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나?』, 1999.
-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